

경기도 5개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청소년 문화, 노인 일자리, 농업인력육성, 공공근로,
청년실업 정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이 은 아 (본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김 영 혜 (본원 연구위원)

이 해 진 (본원 위촉연구원)

유 정 미 (본원 위촉연구원)

발 간 사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된 이후 각국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 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통합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의 수혜가 남녀 모두에게 양성평등하게 미치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3년 3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과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훨씬 더 구체적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원은 지난 5월 개원 이후 기본연구과제의 하나로 경기도 주요 5개 정책(청소년문화, 노인일자리, 농업인력육성, 공공근로, 청년실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2004년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기반 조성 연구’를 용역과제로 수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범위와 내용 면에서 좀 더 깊이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0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경기도의 성 인지적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연구결과가 후속 정책수립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귀한 자문을 제공해 주신 한국여성개발원 김양희 선임연구위원, 박수미 연구위원, 김은경 전문연구원, 상지대 신정아 연구교수와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자료 협조와 도움을 주신 경기도 공무원분들과 관련기관 실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원 장 박 속 자

요 약

연구 개요

□ 서 론

- 성평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성 주류화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05년 중앙과 지방 총 57개 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되는 단계에서 경기도는 2004년부터 자체적으로 도정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수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차적인 행정조직체계로서, 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와 양성평등 지역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정책 가운데 5개 정책 영역, 즉, 청소년 문화, 노인 복지, 농업인력 육성, 공공근로, 청년실업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의 입안 및 기획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에서의 성 인지성을 분석함. 각각의 단계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는지, 동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성 인지적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정책 및 사업의 성 차별성을 제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경기도 정책의 성 주류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구체적 사례 개발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 지침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청소년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대상으로

-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연령 범주에 따라 단일하고 동질적인 사회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음.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담론은 청소년 정책과 함께 변화하여 왔는데, ‘보호와 육

성'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집단을 단일한 범주로 간주하고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음.

- 지역별 청소년 인구 추이를 보면, 시·도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인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전체 청소년 인구 비율 중 경기도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5%로 서울 21.9% 다음으로 높음.
-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함. 청소년 관련법과 기본계획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거나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은 거의 없음. 청소년 관련 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와 경기도차세대위원회가 있으며, 청소년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33.3%(위촉직 기준 41.7%)이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의 여성비율은 56.7%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5년 목표율 36%를 상회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이용하기 좋은 지역적·문화적·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설 및 기관 등을 Net working하여 놀이 체험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5일제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육성,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음.
- 문화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314명), 동아리 활동에서 여학생은 문화 예술과 사회봉사 관련 활동에,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존 프로그램 참여 내용을 보면, 여학생은 문화·공연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61.3%)이 가장 높고, 스포츠 활동(36.6%), 공예 활동(31.2%), 그리고 과학 활동과 상담 및 기타(7.5%)가 가장 적었음. 반면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82.6%)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공연 활동(37.6%), 공예활동(18.0%), 과학 활동(10.7%) 순으로 나타남. 여학생은 주로 문화·공연활동 프로그램에,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차이를 고려한 문화존 프로그램이 필요함.

○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청소년 문화 관련 각종 법, 계획 - 사업 계획서 - 성별분리 통계 수집 및 활용 ※ 공무원 조사 결과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 청소년 문화존 사업 계획에 성별 관련성을 파악하는 부분은 없음. - 공무원 조사 결과 56.3%가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차이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청소년 문화 관련 법, 계획	- 청소년 문화 관련 법과 계획에서 양성평등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예는 없음.
3. 양성평등한 정책 결정과정 참여	- 청소년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공무원 조사 결과	- 청소년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은 위촉직 기준 (41.7%)으로 할 때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5년 목표를 36%를 상회하고 있으나 문화존 사업 관련 운영 위원은 여성 비율이 30%미만인 곳이 더 많음. - 공무원 직급별로 보면 여성은 하위직급비율이 높음.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문화존 사업 선정 기준 - 문화존 사업 심사 항목 - 문화존 사업 계획서	- 문화존 사업의 선정기준, 심사항목, 사업계획서 사업이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5. 성 인지적 예산	- 문화존 사업 예산 - 기관별 사업 예산 ※ 공무원 조사 결과	- 문화존 사업 예산과 기관별 운영사업 운영 예산에서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적 예산 항목은 없음. - 공무원 조사 결과 80.0%가 성 인지 예산을 책정한 적이 없다고 응답.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 홍보 방법 ※ 수혜자 조사 결과	-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정보 접근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나타나지 않으나 실질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홍보 전략 필요. - 수혜자 조사 결과 정보접근의 차이가 나타남.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기관별 /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 수혜자 조사 결과	- 결과 보고 시 참여인원의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 양성평등한 정책 수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수혜자 조사 결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성별에 따라 참여 정도와 내용이 다르고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계속)

〈표 1〉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프로그램 - 사업 결과 보고	-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을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혜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9.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결과 보고에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내년 사업에 본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소결 및 제언

- 여자 청소년을 위한 체육/과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자/남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역할 모델 제공
- 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존 사업의 홍보
- 문화존 운영위원 여성 비율 확대
- 청소년 문화존 사업 운영기관 실무자 성 인지 교육
-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시 성별분리통계 활용

□ 노인복지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본 연구는 노인복지사업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성 중립적으로 여겨지는 노인의 성별 차이와 요구를 분석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통해서 성 인지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경기도 노인인구는 2004년 현재 6.8%로 타 지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25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의 노인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또한 가

파르게 증가할 것임.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개인소득수준과 용돈수준이 현저하게 낮으며, 근로 사업소득과 공적연금 수준은 낮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친인척보조금은 높게 나타나서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수준을 짐작할 수 있음. 그 결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경제생활 만족도가 낮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인 경우가 더 많음.
-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노인취업자 비율은 전국의 경우 남성(3.0%)이 여성(2.5%)보다 높고, 경기도 또한 남성(2.0%)이 여성(1.4%)보다 높음. 그리고 경기도 노인취업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노인 일자리 관련법과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및 ‘경기비전 2006’ 등 노인 일자리 관련 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양성평등 정책 목표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의 세부정책과제에 ‘노인의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여성친화적 서비스개발’의 기본방향 중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첨부하도록 하여 여성노인에 대한 민감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 즉,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취업직종개발 및 보급, 취업훈련 및 알선 프로그램 개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44명(여성 126명, 남성 118명)을 대상으로 수혜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65-74세(68.0%)가 가장 많고 혼인상태로는 유배우(68.6%) 비율이 가장 높음.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유형을 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공익형과 복지형 일자리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고, 교육형 및 자립지원형에 참가하는 비율은 낮음. 또한 여성은 단순노동과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은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교육형과 직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형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

○ 일하는 이유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돈을 벌고 싶어서’ 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 ,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 가 많고, 남성은 여성보다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욕구와 아울러 사회활동 욕구를 파악할 수 있음. 여성노인의 가사노동 참여는 ‘집안 수리’ 를 제외하고 모든 가사노동 영역에서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달리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은 다음 <표 II>와 같음.

<표 II>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노인 일자리사업의 계획 ※ 공무원 조사 결과	-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과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에 성별 이슈와 관련성을 파악하는 부분은 없음. - 공무원 조사 결과 57.6%가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차이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응답.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노인 일자리 관련 법, 계획	-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계획에서 양성평등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예시는 없음. -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에서는 여성 친화적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	- 노인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공무원 조사 결과	-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42.9%(위촉직 기준)로 위원회의 경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5년 목표율 36% 상회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운영 위원회는 내년에 생길 예정이며 향후 위원회의 성별 비율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공무원 조사 결과 54.4%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고려하였다고 응답함. - 노인관련 부서의 공무원 직급별로 보면 여성은 하위직급 비율이 높음.

(계속)

〈표 II〉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노인일자리 사업 선정 기준 - 노인일자리 사업 개인선발 기준 ※ 공무원 조사 결과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선정 기준표와 사업계획서에 사업이 여성 노인과 남성노인에게 미칠 영향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에서 단독세대주보다 노인부부세대에게 더 많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독가구 비율이 높은 여성에게 차별을 가져올 수 있음. - '2길로그램 미만 택배사업' 은 성별 영향을 예측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5. 성 인지적 예산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 공무원 조사 결과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적 예산 항목은 없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84.1%가 성 인지 예산을 책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70%는 필요하다고 응답함.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 홍보 방법 ※ 공무원 조사 결과 ※ 수혜자 조사 결과	- 정보 접근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질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수혜자 조사 결과에서 정보접근의 차이가 나타남. 여성은 직접 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은 주변 사람의 소개(농촌 지역 이장 등)로 정보를 접하는 비율이 높음. - 공무원 조사 결과 59.3%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충분한 홍보·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사업 참여자 현황 ※ 수혜자 조사 결과	- 수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노인의 수혜도가 더 높으나 여성노인 비율이 높고 유배우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성평등성은 단지 수혜자의 성비로만 평가할 수 없음. - 수혜자 조사 결과 여성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프로그램 - 사업 결과 보고	-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을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여성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생활에 도움이 됨.
9.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공무원 조사 결과	- 결과 보고에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내년 사업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82.9%가 사업수혜 정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날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사업에 반영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결 및 제언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 재조정
- 여성노인 친화적인 사업아이템 개발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 인지적 홍보 강화
-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예, 사회복지사) 대상 성 인지 교육
- 노인일자리 사업의 여성의원 비율 확보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대상으로

-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남성으로 여겨져 왔으며, 여성들은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보조자, 농가주부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 이처럼 여성들이 전문 농업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에 문화적, 제도적 장애요인이 있음. 정책 기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화적, 제도적 장애요인은 여성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2004년 경기도 농가인구는 남성 238,570명(50.1%), 여성 237,571명(49.9%)로 남녀의 수가 비슷하며, 60대 이상 인구가 30.7%로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특히 노령인구의 여성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전체 농가에서 여성 경영주의 비율은 16.7%이며, 60세 이상에서는 22.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업인력육성정책은 경기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추진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력육성사업(창업농, 신규후계농),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후견인제, 농가경영컨설팅,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있음.
-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법령에서 농업인력육성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촌진흥법」 및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있음. 이 중 「농업농촌기본법」과 「여성농업인육성법」은 성별 이슈를 고려하

여 여성농업인육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경기도 농업관련 조례에서는 여성농업인력 육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농림부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 계획(2001-2005)’ ,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 ‘제1차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2004-2008)’ 이 있음. 위 계획들은 여성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로, 농정심의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2005년 현재 위촉직 기준 44.4%(당연직 포함 30%)이며,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 계획’ 의 2005년 목표율 37%를 상회하고 있음.
- 2002~2005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99명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 신청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서류작성의 복잡함’ 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서류작성의 복잡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음. 교육과정에서는 남녀 모두 농사일과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주요하게 지적하였으며, 여성은 가사일 및 육아와의 병행이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음. 대출과정에서 역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가장 많았음.
- 응답자 중에서 부부 모두 후계자인 경우는 4명에 불과하였으며, 부인이 후계자가 아닌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남성들은 ‘본인이 농업경영주이기 때문에’ , ‘부부 모두 신청가능한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여성이 후계자가 되는데 가부장적 문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우대제도에 대한 인지는 응답자 중 여성 56.0%, 남성 13.5% 알고 있었으며, 관련 정보는 공무원, 농업관련기관 담당자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여성이 후계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여성들은 ‘남편이 이미 후계농이어서’ 와 ‘농촌이 가부장적이라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역시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농업인력육성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2005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등록하고 있는 366명 중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 동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농정보획득이 가장 많았고,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남성은 현 농사짓고 있는 주작목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여성은 앞으로 시도하고 싶은 작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지원 정보는 남성은 주로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여성은 가족과 공무원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었음. 응답자들은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었다고 응답해서 정보접근성이 개선될 필요성을 보여줌. 특히 여성우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여성 30.2%, 남성 20.6%), 여성우대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지침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내용은 다음 <표 Ⅲ>과 같음.

<표 Ⅲ>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농림사업시행지침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사운영 계획 - 성별분리통계 수집 및 활용 - 결과보고 서식 ※ 공무원 조사 결과	- 농림사업시행지침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사운영계획의 사업목표에 성별이슈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후계농의 경우 정책방향에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를 포함하고 있음. - 후계농의 성별분리통계 수집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 성별분리통계 수집, 활용이 미흡함.
2. 양성평등목표와 정책수단	- 농업인력육성 관련 법, 계획	-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제2차 여성정책기본 계획,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에 여성농업인력육성 목표와 여성후계농양성에 대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어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음. -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계획에서 2005년도 성과목표는 여성후계농 20%확보임.

(계속)

〈표 Ⅲ〉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	- 농업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공무원 성별비율 ※ 공무원 조사 결과	- 농정심의회의 여성 비율은 2005년 현재 30%이며 위 축직 기준 44.4%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2005년 목표율 36%를 상회하고 있음. - 농정담당 공무원의 성별구성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은 낮고, 여성은 하위 직급에 배치되어 있음. - 공무원 조사에도 여성응답자가 낮으며, 수적 형평성 자체가 양성평등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한 기반의 하나라는 점이 인지될 필요가 있음.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심사 항목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 ※ 공무원 조사 결과 ※ 수혜자 조사 결과	- 후계농업경영인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여성우대 제도를 두고 있어서 정책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후계농 사업에서 부부후계농 제한 규정과 연령 제한규정은 문화적 요인으로 여성이 후계농 사업의 수혜를 받기 어렵게 함.
5. 성 인지적 예산	- 사업 예산 - 선정결과 성별 예산비율 ※ 공무원 조사 결과	- 후계농,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은 없음. -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 성 인지적 예산 용어 인지도가 낮고, 87.7%가 성 인지 예산 책정 경험에 없다고 응답함.
6. 성 인지적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 홍보 단계 및 방법 ※ 수혜자 조사 결과	- 정보 전달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수혜자 조사 결과 정보접근의 차이가 나타남.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2004, 2005 사업결과 ※ 수혜자 조사 결과	- 수혜율의 성별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2005년 후계 농업경영인의 경우 여성 5.8%,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 17.2% 임. - 수혜자 조사결과 수혜만족도에서는 성별차이가 거의 없음.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프로그램 - 사업 결과 보고	- 후계농업경영인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농촌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역할고정관념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수혜율이 너무 낮은 한계가 있음.
9. 성별영향 평가결과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결과보고에 성별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년 사업에 금번 평가의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여성발전5개년 계획의 농업분야 목표 및 성과 지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소결 및 제언

- 여성우대제도의 실행력 강화
- 부부 중 여성 후계농업인 지원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고려한 전공 개설
- 성 인지적 정책 홍보
- 성별분리통계의 수집 및 활용 및 공무원 성 인지 교육 확대
-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 의 농정분야 계획 반영
- 여성농업인 정책협의체 구성

□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 공공근로사업은 남성 실업자가 많이 참여하였던 실행초기와 달리,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여성 중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는 공공근로사업의 여성 중심화 현상에 주목하고, 참가자들의 성별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여 성 인지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경기도 2004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2%, 실업율은 3.5%이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로 전국 평균 49.8%보다 약간 낮음.
- 경기도는 2008년까지 ‘경기고용5개년계획’ 을 통해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뉴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채용박람회, 신용회복지원,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장기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이며, 경기 침체기 동안 한시적 시행이 가능하고 공공생산성 효과와 실업자의 근로능력 유지 기능을 가짐.
- 공공근로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됨. 2005년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42,209백만 원, 참가자는 여성이 64.3%를 차지함. 현재 4개 분야 91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 참여 유형은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행정정보화 사업, 환경정화사업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수 이북과 이남을 구분하여 각각 의정부시와 수원시에서 수혜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278명), 여성(69.8%)이 남성(30.2%) 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40대(28.8%), 50대 이상(29.5%)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공공근로 참여내용을 보면, 참여횟수는 여성(3.9회)이 남성(2.8회)보다 많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참여 이유는 여성(39.0%)과 남성(25.6%) 모두 ‘생계가 어려워져서’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공공근로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여성은 주변 사람 소개(53.1%), 남성은 관공서(67.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근로 참여 전 직업이 있는 경우가 남성(67.9%)이 여성(49.7%) 보다 많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직업이 있었던 경우, 여성은 사무직-판매 서비스직, 남성은 생산직-일용직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직종 차이를 보여줌. 공공근로 참여로 가장 도움이 된 점은 여성(58.4%)과 남성(41.0%) 모두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특히 공공근로가 여성의 생계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재취업 시 원하는 일로는 여성(66.7%)과 남성(57.9%) 모두 공공근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여성(49.7%)과 남성(46.4%)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교육훈련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교육훈련 의사가 없는 경우 고령과 시간부족, 수업료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의 분석 내용은 다음 <표 IV>와 같음.

〈표 IV〉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사업 계획서 - 성별분리통계 활용 ※ 공무원 조사 결과	- 여성 참여자 수가 많음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여성 친화적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성별분리통계 활용경험은 24.1%에 불과함.

(계속)

〈표 IV〉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공공근로사업 관련 법, 계획	-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근거인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 과정 참여	-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 고용관련 공무원 여성 비율 및 직급 ※ 공무원 조사 결과	- 경기도고용심의위원회 여성비율은 40%에 달하나, 31개 시·군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여성비율은 매우 낮아 31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여성비율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정책과 공무원 구성에서 남성은 주로 고위직급 비율이 높고, 여성은 하위직급 비율이 높음.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공공근로 참가자 선정 기준	- 참가자 선발 시 여성세대주에게 가중치 부여하여 성별 관련성을 예측함.
5. 성 인지적 예산	- 공공근로사업 예산 ※ 공무원 조사 결과	-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적 예산 항목은 없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88.8%가 성 인지 예산 업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 홍보 방법 ※ 수혜자 조사 결과	-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정보 접근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수혜자 조사 결과 여성은 주로 주변사람 소개로, 남성은 관공서를 통해 참여하고 있어 정보접근의 차이가 나타나 여성에 대한 공적 정보접근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기관별 /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 수혜자 조사 결과	- 여성의 참여가 64.4%로 남성 35.7%보다 더 높으나 노동시장의 차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학력 고연령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 여성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음. -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단지 수혜자 성비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의 성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성을 평가하여야 함.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결과 보고	- 여성의 참여가 많고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여성들이 공공근로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
9. 성별 영향 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결과 보고서 여성과 취약계층의 참가 비중이 높아 이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됨. - 여성의 공공근로참여가 장기화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됨.

○ 소결 및 제언

- 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모델 강화 : 여성 친화적 일자리 개발
-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방식 조정 및 기간 연장 방안 모색
- 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공무원 및 실무자의 성 인지 교육 기회 확대
-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활용
- 관련위원회 여성위원의 수 확보

□ 청년실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경기청년뉴딜사업을 대상으로

- 최근 여성 인력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실업문제가 심각함.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 실업 정책 가운데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고자 함.
- 경기청년뉴딜사업은 경기도가 청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임. 청년뉴딜사업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1단계 개인별 밀착상담, 2단계 직업훈련 또는 직장체험, 3단계 직장집중알선 및 사후관리로 이루어짐.
- 2004년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7.6%로 전국 8.3%로 약간 낮지만 수도권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취업자의 수가 많은 편임.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 증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전히 낮으며,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현재 경기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36명), 여성(57.4%)이 남성(42.6%)보다 더 많고, 현재 구직자 밀착상담(10.4%), 직장 체험(49.6%), 교육훈련(15.6%), 직장집중알선(24.4%) 가운데 직장 체험은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 비율

이 더 높음. 청년뉴딜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3.6, 남성 3.8로 남성이 조금 더 높음.

○ 사업 참여 내용은 여성(17.6%)보다 남성(50.0%)이 더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형태 또한 여성(45.0%)보다 남성(70.3%)의 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아 여성의 고용상태가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내용은 다음 <표 V>와 같음.

<표 V>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사업 계획서 - 성별분리통계 활용	- 실업과 관련한 성별분리통계는 있으나 실업에서의 성별 차이나 고학력 여성의 실업 문제 등 성별 이슈가 사업 계획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청년실업해소 관련법 및 계획	-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시행 근거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는 사업 대상을 ‘청년실업자’로 동질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목표와 계획에 성 인지도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3. 양성평등한 정책 결정과정 참여	-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 고용관련 공무원 여성 비율 및 직급 ※ 공무원 조사 결과	- 청년뉴딜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뉴딜사업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단 6명 가운데 여성은 1명으로 16.7%임. - 고용정책과 공무원 구성에서 남성은 주로 고위직급 비율이 높고, 여성은 하위직급에 많이 있음.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은 4-5급 비율이 23.3%이나 여성은 2.9%에 불과하고 8-9급 남성 비율은 12.3%이고 여성은 58.8%에 달해 여성은 주로 하위직급에 몰려 있음.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사업 참가자 선정 기준	- 참가자 선발 시 성별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
5. 성 인지적 예산	- 경기청년 뉴딜 사업 예산	- 경기청년뉴딜사업 예산에서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적 예산 항목은 없었음.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 홍보 방법 ※ 수혜자 조사 결과	- 구직자 각자의 인적자본 특성에 맞추어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서비스 전달에서 매우 긍정적임 -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정보 접근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나타나지 않았음. - work-net에 구직 등록된 사람 각각에게 개인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발송·사업을 홍보하여 정보접근성에 성별격차는 없음. 개인별 홍보를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계속)

〈표 V〉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사업 참여자 현황 ※ 수혜자 조사 결과	- 여성 참여 비율(57.7%)이 남성(42.3%) 보다 더 높으나 수혜자 조사 결과 취업정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 조사 결과 만족도의 정도는 높으나 여성이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약간 낮음. 그 이유는 취업정도가 남성에 비해 낮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중이 높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결과 보고	- 여성의 참여가 많고 여성의 취업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주류화에 기여하는 점이 높음.
9.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금년 처음 시작되는 시범사업으로 아직 결과보고가 되지 않음. 향후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사업기획에 반영되기 기대함.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를 고려한 기획마련이 필요함.

○ 소결 및 제언

-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여성참가자 대상 프로그램 마련
- 성별통계의 구축 및 실업 관련 성 인지 통계 활용
- 공무원 및 실무자의 성 인지성 강화
- 관련위원회 여성위원 수 확대

□ 결론 및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 단기 과제

-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공무원 성 인지 훈련 확대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전문 과정 개발
- (가칭)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장기 과제

-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담당관 지정
- 여성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 여성정책부서의 성별영향평가 지원 기능 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지정
-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 인지적인 지역 통계 개발
- 성별영향평가 방법 및 지침 보완
-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및 내용	5
3. 연구 방법	7
4. 기대 효과	8
제2장 성 인지적 지역정책과 성별영향평가	9
1.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여성발전’ 에서 ‘젠더관계 변화’ 로	11
2. 지역정책과 성별영향평가	14
3.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15
제3장 공무원 조사 결과	21
1. 조사 개요	23
가. 조사 방법 및 대상	23
나. 조사 내용	23
2. 조사 응답자의 특성	24
3. 조사 결과 분석	28
가.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28
나. 성별영향평가의 기반과 여건	31
다. 업무 경험에 대한 성 인지성 : 기획, 집행, 평가 단계	35
라. 성 인지적 업무의 필요성	38
마. 성 인지적 사업/프로그램의 가능성	40
바. 성 인지 교육 경험	40
사. 성역할 태도 및 의식	42

제4장 청소년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4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7
2. 경기도 청소년 현황 및 여가·문화 활동	49
가. 경기도 청소년 인구 현황	49
나.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49
다. 청소년 수련 활동	52
3. 청소년 문화 정책 관련 제도 및 기반의 성 인지성 분석	54
가. 청소년 문화 정책 관련 법·제도의 성 인지성 분석	54
나. 청소년 문화 정책 기반의 성 인지성 분석	58
다. 청소년 문화 사업의 성 인지성 분석	59
라. 청소년 문화존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61
4.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수혜자 조사	66
가. 조사 개요	66
나.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6
다. 조사 결과 분석	69
5.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74
가. 입안 및 기획 단계	74
나. 집행 단계	81
다. 평가 단계	82
라. 소결 :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86
6. 요약 및 제언	87
가. 사회문화적 성별 차이를 고려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8
나. 청소년 문화 사업의 성 인지적 기반 강화	89
 제5장 노인복지정책의 성별영향평가	 9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3
2.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의 경제생활	94

가. 노인인구 현황	94
나. 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97
3.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제도의 성인지성 분석	101
가.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계획	101
나. 경기도 노인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	105
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와 추진체계	106
4.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혜자 조사	110
가. 조사 개요	110
나.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1
다. 조사 결과 분석	113
5.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120
가. 입안 및 기획 단계	120
나. 집행 단계	126
다. 평가 단계	127
라. 소결: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130
6. 요약 및 제언	132
가. 노인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노인 일자리 사업 모색	132
나. 노인복지정책의 성 인지적 수행 여건 강화	133
 제6장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1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7
2. 경기도 농업현황 및 농업인력육성정책	138
가. 경기도 농업 및 농업인 현황	138
나. 농업인력육성정책 현황	140
3. 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제도 및 기반의 성인지성 분석	144
가. 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법	144
나. 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계획	145

다. 농업인력육성정책 추진체계	146
4. 농업인력육성정책 수혜자 조사	147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수혜자 조사	147
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혜자 조사	156
5. 농업인력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165
가. 입안 및 기획 단계	165
나. 집행 단계	172
다. 평가 단계	174
라. 소결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176
6. 요약 및 제언	176
가. 여성농업인력육성 강화 및 대표성 제고	179
나.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 인지적 정책 기반 강화	180

제7장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18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5
2. 경기도 경제활동 현황	186
3. 공공근로 사업 시행 및 추진배경	191
가. 공공근로 사업 배경 및 목적	191
나. 경기도 공공근로 사업	194
4. 공공근로사업 수혜자 조사	205
가. 조사 개요	205
나.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7
다. 조사 결과 분석	209
5.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215
가. 입안 및 기획 단계	216
나. 집행 단계	220
다. 평가 단계	221

라. 소결 :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223
6. 요약 및 제언	225
가. 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모델 강화	226
나. 성 인지적인 실업 정책 수행 기반 강화	227
 제8장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22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1
2. 청년실업실태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232
가. 청년실업현황	232
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235
3. 경기도 청년실업실태와 청년뉴딜사업	239
가. 경기도 청년실업 실태와 고용현황	239
나. 경기청년뉴딜사업	243
4. 경기청년뉴딜사업 수혜자 조사	251
가. 조사 개요	251
나.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52
다. 조사 결과 분석	254
5.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261
가. 입안 및 기획 단계	261
나. 집행 단계	265
다. 평가 단계	267
라. 소결 :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269
6. 요약 및 제언	271
가. 노동시장 성차별에 따른 여성 실업자 지원 방안 모색	271
나. 성 인지적 정책 수행 여건 강화	272

제9장 결론 및 제언	275
1. 단기 과제	277
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277
나. 공무원 성 인지 훈련 확대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 과정 개발	278
다. (가칭)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279
2. 장기 과제	280
가. 추진 체계 강화	280
나.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 인지적인 지역 통계 개발	282
다. 성별영향평가 방법 및 지침 보완	283
라.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	284

표 차례

〈표 1-1〉 분석 대상 및 범위	6
〈표 2-1〉 2004년 여성부 성별영향분석 평가 10개 시범연구	13
〈표 2-2〉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틀(2004)	17
〈표 2-3〉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표(2005)	18
〈표 2-4〉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19
〈표 3-1〉 설문 조사 내용	24
〈표 3-2〉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5
〈표 3-3〉 조사 응답자의 성별 특성	26
〈표 3-4〉 부서별 특성	27
〈표 3-5〉 성 인지 정책 용어 인지 : ‘알고 있는 경우’	29
〈표 3-6〉 양성평등 관련 국내외, 경기도 법·계획 등 인지 : ‘알고 있는 경우’	31
〈표 3-7〉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항 인지 : ‘알고 있는 경우’	33
〈표 3-8〉 성 인지적 업무 경험	36
〈표 3-9〉 성 인지 업무 경험 : 있는 경우	37
〈표 3-10〉 성 인지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39
〈표 3-11〉 부서 내에서 성차를 고려할 프로그램 유무	41
〈표 3-12〉 성 인지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41
〈표 3-13〉 공무원 성역할 태도	43
〈표 4-1〉 경기도 청소년 인구수(9-24세)	49
〈표 4-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2004)	50
〈표 4-3〉 청소년의 여가활동(2004)	51
〈표 4-4〉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2003)	51
〈표 4-5〉 수련시설 현황	53
〈표 4-6〉 지난 일년간 경기도 청소년 수련관 이용경험(2003)	53

〈표 4-7〉 2005년 경기도 청소년 육성 시행 계획	56
〈표 4-8〉 2005년 경기도 청소년 정책 사업 계획	60
〈표 4-9〉 2005년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 계획	63
〈표 4-10〉 2005년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65
〈표 4-11〉 조사 내용	67
〈표 4-12〉 응답자의 성별 특성	68
〈표 4-13〉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복수 응답)	69
〈표 4-14〉 휴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과 장소	70
〈표 4-15〉 동아리 활동 내용	71
〈표 4-16〉 수련시설 이용 내용(복수 응답)	71
〈표 4-17〉 프로그램 참여 내용(복수 응답)	72
〈표 4-18〉 프로그램 참여 장소	73
〈표 4-19〉 프로그램 만족도	73
〈표 4-20〉 청소년 관련 위원회 성별 현황	77
〈표 4-21〉 2005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선정기준(경기도)	78
〈표 4-22〉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심사 항목	79
〈표 4-23〉 2004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추진 실적 보고	84
〈표 4-24〉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86
〈표 5-1〉 경기도 지역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96
〈표 5-2〉 노인의 개인소득 수준	97
〈표 5-3〉 노인의 월평균 용돈	97
〈표 5-4〉 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2002)	98
〈표 5-5〉 전체취업자 중 65세 이상 노인취업자(경기도)	99
〈표 5-6〉 노인인력활성화 방안계획	102
〈표 5-7〉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과 여성 친화적 서비스 개발의 연도별 추진계획	104
〈표 5-8〉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107
〈표 5-9〉 사업유형별 예산 지원기준(2005)	108

〈표 5-10〉 조사표 내용	111
〈표 5-11〉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2
〈표 5-12〉 일자리 사업 참여 경로	115
〈표 5-13〉 일하는 이유	115
〈표 5-14〉 일자리 수입의 지출처	116
〈표 5-15〉 일에 만족하는 이유	118
〈표 5-16〉 일에 불만족하는 이유	118
〈표 5-17〉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118
〈표 5-18〉 노인들의 가사노동 정도	119
〈표 5-19〉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2005년 6월 1일 현재)	122
〈표 5-20〉 사업선정기	124
〈표 5-21〉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125
〈표 5-22〉 시군별 노인일자리 수혜자 현황(2005년 7월말 현재)	128
〈표 5-23〉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130
〈표 6-1〉 기간별 농가 수 및 경지면적 현황과 증가율	138
〈표 6-2〉 전국 농업경영주 성별 구조	140
〈표 6-3〉 경기도 농업인력육성정책	140
〈표 6-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주요 운영내용	141
〈표 6-5〉 경기도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 및 선정 현황(2004, 2005)	142
〈표 6-6〉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운영현황(2005)	143
〈표 6-7〉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선정자 수 및 선정율(2004, 2005)	143
〈표 6-8〉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시행계획(2004-2008)농업분야	145
〈표 6-9〉 2005년도 경기도 농정심의회 구성	147
〈표 6-10〉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조사 내용	148
〈표 6-11〉 후계농업경영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9
〈표 6-12〉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정에서의 어려움(복수 응답)	150
〈표 6-13〉 후계농업교육인 교육 과정의 어려움(복수 응답)	151

〈표 6-14〉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대출 과정의 어려움(복수 응답)	152
〈표 6-15〉 남편/부인은 후계농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	153
〈표 6-16〉 여성우대제도 관련 정보 획득 경로	154
〈표 6-17〉 여성이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여성만 응답)	155
〈표 6-18〉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56
〈표 6-19〉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조사 내용	156
〈표 6-20〉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58
〈표 6-21〉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지원한 이유	159
〈표 6-22〉 전공을 선택한 이유	159
〈표 6-23〉 지원 정보를 얻은 경로	160
〈표 6-2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청에서 어려움	160
〈표 6-25〉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참여의 어려움(5점 척도)	161
〈표 6-26〉 배우자의 과정 등록 여부	162
〈표 6-27〉 남편/부인은 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	163
〈표 6-28〉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164
〈표 6-29〉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2005 선정결과 및 2006 대상자 신청현황	166
〈표 6-30〉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평가기준	170
〈표 6-31〉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확정 기준	171
〈표 6-32〉 농업인력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표	177
〈표 7-1〉 경제활동 참가율(전국 및 경기도)	187
〈표 7-2〉 실업률 현황(전국 및 경기도)	188
〈표 7-3〉 산업별 취업자 수(경기도)	189
〈표 7-4〉 2004년 경기도 연령별 취업자 수	190
〈표 7-5〉 종사상 지위(경기도)	190
〈표 7-6〉 가중치 예	197
〈표 7-7〉 공공근로 예산현황	199
〈표 7-8〉 참가자 성별 구성	200

〈표 7-9〉 선발율	201
〈표 7-10〉 연령별 참가자 수	202
〈표 7-11〉 학력별 참가자 수	203
〈표 7-12〉 전직별 참가자 수	203
〈표 7-13〉 시행사업	204
〈표 7-14〉 조사내용	206
〈표 7-15〉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8
〈표 7-16〉 공공근로 참여 횟수	209
〈표 7-17〉 공공근로 참여 이유	210
〈표 7-18〉 공공근로 정보 습득 방법	210
〈표 7-19〉 참여 전 직업 유무	211
〈표 7-20〉 참여 전 직종(있는 경우)	212
〈표 7-21〉 공공근로를 통해 도움 된 점	212
〈표 7-22〉 공공근로 만족도(5점 척도)	213
〈표 7-23〉 앞으로 일할 의향	214
〈표 7-24〉 하고 싶은 일	214
〈표 7-25〉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사	214
〈표 7-26〉 2005년도 시·군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18
〈표 7-27〉 선발 기준	219
〈표 7-28〉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223
〈표 8-1〉 실업률	233
〈표 8-2〉 경제활동참가율	235
〈표 8-3〉 학력에 따른 고용격차	237
〈표 8-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238
〈표 8-5〉 교육정도별 실업률(2004)	238
〈표 8-6〉 교육정도별 취업자 수(2004)	239
〈표 8-7〉 경기도 경제활동참가율	240

〈표 8-8〉 경기도 실업률	241
〈표 8-9〉 청년실업률(15-29세)	241
〈표 8-10〉 교육수준별 취업정도(2004)	242
〈표 8-11〉 경기 청년뉴딜사업의 성과(2005. 9월말 현재)	244
〈표 8-12〉 경기청년뉴딜 소요예산	245
〈표 8-13〉 경기청년뉴딜 사업개시일	245
〈표 8-14〉 경기청년뉴딜 3단계 지원내용	247
〈표 8-15〉 권역별 구성 및 담당업체	248
〈표 8-16〉 참가자 성별 구성	250
〈표 8-17〉 참가자 교육수준	250
〈표 8-18〉 구직자의 성별 전공계열	251
〈표 8-19〉 조사내용	252
〈표 8-20〉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53
〈표 8-21〉 참여 기수	254
〈표 8-22〉 청년 뉴딜 사업에 관한 정보 습득 방법	255
〈표 8-23〉 청년뉴딜사업 참여 과정	255
〈표 8-24〉 청년뉴딜사업이 도움이 된 점(복수 응답)	256
〈표 8-25〉 청년뉴딜사업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257
〈표 8-26〉 청년뉴딜사업 참가 이전 취업 경험	257
〈표 8-27〉 직장을 그만 둔 이유	258
〈표 8-28〉 구직 시 어려운 점	259
〈표 8-29〉 취업 중인 경우 취업형태	260
〈표 8-30〉 업무 만족도(5점 척도)	261
〈표 8-31〉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269

그림 차례

〈그림 3-1〉 성 인지 정책 용어 인지(4점 척도)	28
〈그림 3-2〉 양성평등 관련 법·계획 인지(4점 척도)	30
〈그림 3-3〉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항 인지 정도(4점 척도)	32
〈그림 3-4〉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조건 구비 정도(4점 척도)	34
〈그림 3-5〉 성 인지적 업무의 필요성(4점 척도)	38
〈그림 3-6〉 교육 및 훈련이 업무에 도움 된 정도	42
〈그림 5-1〉 경기도 지역 노인인구 구성비	95
〈그림 5-2〉 참가 일자리 유형	114
〈그림 5-3〉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	116
〈그림 6-1〉 경기도 농업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조	139
〈그림 6-2〉 2005년도 전공별 여성비율	174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4.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된 이후, 주요 국가들은 정책 영역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성 주류화를 실현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취해왔다.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성 주류화를 ‘체계적인 절차와 메카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 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시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유엔이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은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했던 ‘젠더 중심의 접근’에 대한 추진성과를 중간 점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성 주류화 전략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성 주류화 전략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균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혜택과 부담을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정책결정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성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김엘림 외, 1999). 즉,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성 주류화의 궁극적 목적인데, 이 때 성 인지적 관점을 정책 시행 이후에 부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목표와 전략과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초기 기획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여성부, 2004).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이 필요하다.¹⁾ 성 분석 또는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1) 성 분석(gender analysis)은 성별 분석, 성별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분석 또는 평가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김양희 외(2004)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반구축』(경기도) 연구에서는 ‘분석’과 ‘평가’라는 중복적인 단어를 포함하여 혼돈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에서 이를 제도화할 때 ‘성별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여성가족부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평가’ 단어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분석’이라고 사용하기도 하며,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에서 평가 주체에 따라 분석과 평가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4 경기도 5개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하도록 하는 도구이다(여성부, 2005).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목적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특정 성(性)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Corner, 1999).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 대상 집단, 특히 가장 대표적인 집단인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이다(조진우, 2005).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기타 사회 제 부분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대하면서 여성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전통적 차별이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박재규 외, 2004).

지난 10여 년간 국제 기구와 주요 국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도해 왔는데, 그 중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가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가차원에서 성 분석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캐나다는 부처별로 성 분석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여성 지위청의 자문과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부서별로 성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몰성적(gender-blind)일 수 있다(여성부, 2005).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책의 시혜가 결과적으로 한쪽 성(性)에게 더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많지 않다.²⁾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은 시민생활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성 주류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서울시가 2003년 『서울시 성 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경기도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성 인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기반 구축 연구에 이어 올해 성별영향평가 시범 연구를 실시하게 됨으로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대하고, 향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과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도입 단계에서 광범위한 사례 발굴과 보급은 성별영향평가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 및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책 및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 평가할 때 젠더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자원이 어떻게 특정 집단에게 배분되는지, 정책 및 사업이 젠더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는지 등에 관한 물음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성별영향평가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정책 및 사업 선정은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지침(2005)에 따르면 사업 선정기준은 먼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성별에 따라 수혜도 편차가 큰(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책(단, 정책은 법령,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제외), 양성평등 관련 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예를 들면 여성권한척도(GEM), 남녀평등지수(GDI)의 평가 기준인 국회의원 및 관리자 성비, 성별 소득편차 등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그리고 기타 기관장이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 매뉴얼(2004)에 제시된 분석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장기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정책 대상자(수혜자) 간의 형평성이 사업성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책, 원인이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으나 지표상에 성차가 나타나는 정책, 새로 시행된 정책이라고 되어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경기도 주요 정책 영역을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업 선정 기준은 첫째,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둘째, 성별에 따라

수해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셋째, 성별에 따른 차이와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 넷째,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실업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활동 및 고용부문, 그리고 복지와 문화 부문을 선정하였다. 경제활동 및 고용 부문에서는 청년실업정책과 공공근로정책, 농업인 육성정책, 그리고 복지 부문에서 노인 복지 정책과 청소년 문화 정책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별영향평가 연구는 구체적인 사업 단위 보다는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성 주류화 기반을 평가하는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 그렇지만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사례 발굴 및 지침 활용 가능성 등을 탐색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영역별로 구체적인 사업 1-2개를 선정·분석하였다.

복지·문화 영역에서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인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최근 주5일제 수업 등과 더불어 청년 문화 공간 부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 일자리에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영역에서는 청년실업정책 중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뉴딜사업과 97년부터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농업인력육성정책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분석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분석 대상 및 범위

정책 영역	분석 대상	분석 범위
청소년 문화정책	청소년 문화존 사업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 집행 결과
노인복지 정책	노인 일자리 사업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 집행 결과
농업인력육성정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 집행 결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공공근로 사업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 집행 결과
청년실업정책	청년 뉴딜 사업	2005년 상반기 집행 결과

3) 가족여성부는 성별영향평가 지침(2005)에서 평가 대상 정책의 규모, 범위, 유형에 제한은 없으며, 평가 내용의 질적 수준과 평가 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대상 정책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예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논하고, 성별영향평가 지침과 방법을 검토하였다.
- 둘째,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위하여 주요 선정 기준에 따라 경기도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선정,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 셋째,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의 여건과 기반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 부서 공무원(경기도 및 31개 시·군 고용, 청소년, 노인, 농업 관련 부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 넷째, 각 사업의 수혜자 조사 분석을 통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성 인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다섯째, 향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 성별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
 - 성별영향평가 기반 분석
- 주요 사업의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공무원 설문조사
 -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청소년, 고용, 농업, 노인 관련 부서)
 - 공무원의 성 인지 이해 및 업무 경험 설문 조사 분석
- 공무원(실무자) 심층 면접 및 사업장 참여 관찰
- 주요 사업 수혜자 조사
 - 청소년 문화존 사업 수혜자 조사
 - 노인 일자리 사업 수혜자 조사

8 경기도 5개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수혜자 조사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혜자 조사
- 공공근로사업 수혜자 조사
- 청년뉴딜 사업 수혜자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원내 자문회의
 -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 원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보고회 및 결과물 제출
 - 중간 보고회
 - 최종 보고회

4. 기대 효과

첫째, 경기도 정책 및 사업 가운데 주요 영역별로 사업을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경기도 정책 및 사업의 성 차별성을 제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경기도 정책의 성 주류화에 기여한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도입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 주류화 기반을 강화한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연구 진행 과정은 공무원과 정책 및 사업 담당자들의 성 인지력을 제고하고, 성 인지 정책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

넷째, 성별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개발함과 동시에 영역별로 성별영향평가 지침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를 보급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제 2 장

성 인지적 지역정책과 성별영향평가

1.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여성 발전’ 에서 ‘젠더관계 변화’ 로
2. 지역정책과 성별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1.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여성발전’ 에서 ‘젠더관계 변화’ 로

여성정책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과 남녀동권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 조명하면서 성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대안적 가치체계를 법, 제도, 정치과정에서 실현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장필화, 1990). 이러한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을 발전 대상으로 간주하는 ‘여성 중심’ 접근에서 젠더 관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젠더 중심’ 접근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젠더 중심’ 접근을 보다 더 잘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여성정책이 독립적인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47년 UN여성지위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가 창설되면서부터이다. UN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해를 ‘세계여성의 해’ 로 정하였다. 그리고 각 국 정부의 여성 대표가 모여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여성발전 전략으로 ‘여성 중심’ (Women in Development, WID) 접근을 채택하였다. ‘여성 중심’ 접근은 경제·사회 발전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 여성은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으며 발전의 혜택이 여성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처럼 여성은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발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성별 불평등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배제와 기회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자유주의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 중심’ 접근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김양희 외, 2004). 그러나 여성 중심 접근은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별불평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공사 영역에서 성별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을 뿐, 전통적인 성역할과 성별분업, 그리고 사회적 성별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엔여성10년’ (1975-1985)을 마무리하기 위해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

계여성대회는 ‘여성 중심’ 접근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 전략으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젠더 중심’ 접근이 대두되었다. ‘젠더중심’ 접근(Gender and Development, GAD)은 기존의 ‘여성 중심’ 접근이 “남성은 발전과정의 행위자”로, “여성은 발전 과정의 수혜자”로 참가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역할 변화를 통해 젠더 관계의 변화가 가능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10년 후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젠더 중심’ 접근을 보다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젠더 관점을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성별과 무관해 보이는 모든 영역에 젠더 관점을 포함하기 위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채택된 것이다.

성 주류화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여성의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강조한다. 둘째,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고, 입안 및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은 이를 통해 남성 중심적인 사회와 조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 주류화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잠정적 우대조치’ 도입을 명시하여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부터 정부 산하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참여목표율을 30%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1998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주요 기조로 채택하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였다.

2001년 여성문제가 모든 국가 정책 영역에서 핵심 분야로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위하여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

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에서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하고,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였다.

2004년 7월 초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 하반기부터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노동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정책효과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004년에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의 시범연구는 다음 <표 2-1>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에 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성별영향평가 적용 기관을 4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시·도로 확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토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⁴⁾

<표 2-1> 2004년 여성부 성별영향분석 평가 10개 시범연구

1	수형자 직업훈련	법무부	6	암 관리 정책	보건복지부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법무부	7	재직자 직업훈련	노동부
3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부	8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시
4	농업인력 육성	농림부	9	충북 장애인 정책	충청북도
5	문화기반시설·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부	10	전북 노인 정책	전라북도

4) 여성가족부 지침(2005)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성별영향평가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평가’ 와 여성가족부가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구 과제로 추진하는 ‘심층 평가’ 로 이원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본 연구는 ‘심층 연구’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기초와 범위도 많이 달라졌다. 종전의 여성정책이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여성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시혜적이며 잔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는 일반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강조하는 제도적 복지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문미경·김혜영, 2003).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효율적인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 그리고 의식과 관습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이 보완되면서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김양희 외, 2004).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대표성은 극히 제한적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업 또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결정과정에서,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여성은 여전히 중심에 다가서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김원홍 외, 2004).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IULA,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도 1998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문’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통치 단위로서의 역량,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고용주로서 남녀평등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고 전 세계 여성의 지위와 남녀평등의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10조)고 선언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적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헌법적이고 법적으로 재정적인 자율성을 부여한다(제27조)(서울특별시, 2000). 이처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1기에 전국 최초로 도지사 직속의 여성정책실을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1996년도에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 ‘경기여성발전중장기실천계획(1998-2004)’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경기2020: 비전과 전략’ (1997년 수립, 2002년 수정)에서 ‘여성의 제도적, 결과적 평등 실현’을 부문별 발전 구상 중 하나로 정하고, 예산과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성 분석을 제도화하고 여성정책 예산을 확충해 나갈 것을 과제로 명시하였다.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여성부문과 연계하여 2003년에 수립된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 (2004-2008)은 성 분리 통계 구축 및 경기도 일반정책에 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2004년 성별영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도 계속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전체를 아울러 거시적 정책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중앙 정부 정책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수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차적인 행정조직체로서 주민과 행정이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성 평등 목표를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성 평등한 관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및 사업이 성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부정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서 성 주류화 지침과 성 분석 지침을 개발·활용해 왔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의 성 주류화 및 성 분석을 위한 지침을 보면, 유엔의 성 주류화 핸드북(Gender Mainstreaming in Practice: A Handbook, 2001)은 정책 결정 과정에 젠더를 통합하기 위하여 10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누가 정책 결정자인가, 2단계는 젠더 아젠다를 주류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이 이슈인가, 3단계는 젠더 평등을 향해서 무엇이 목적인가, 4단

계는 상황 맵핑, 즉,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가?, 5단계는 이슈를 정교화하고 조사 및 분석, 6단계는 젠더 관점으로 정책 및 프로젝트 개입을 공식화하기, 7단계는 사례를 논하는데 있어 젠더를 문제화, 8단계는 모니터링하고, 성 인지적 시각으로 주시하기, 9단계는 평가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10단계는 의소소통을 젠더화 하기이다(UN, 2001).

캐나다의 성 분석 지침은 모두 8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 이슈 확인은 정책분석이란 일반적 문제의 확인으로부터 시작하며, 이슈의 성질, 범위, 중요성을 결정하고 이를 정책 안건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는 정책에서 기대하는 목적과 예상되는 성과를 제안하고, 성과지표, 모니터링 과정, 성과를 확인하는 대상, 성과에 대한 책임이 고려된다. 조사 연구 부문에 속하는 3단계는 필요한 지식, 관련 데이터 자원, 자문 위원 등을 확인하고, 4단계에서 연구 계획과 분석의 유형을 명료하게 밝힌다. 분석의 역할과 방법, 데이터 접근 방식이 논의된다.

뉴질랜드의 성 분석 모형은 모두 6단계로 1단계 바람직한 성과 파악, 2단계 문제와 이슈 확인, 3단계 대안 개발, 4단계 대안 분석과 건의, 5단계 결정 수행, 6단계 모니터, 평가로 구분되어 있다(김양희 외, 2004). 영국의 ‘여성 & 평등과’는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틀을 모두 5단계, 즉, 1단계는 이슈와 목적을 설정하고 2단계 자료 수집과 대안 개발, 3단계는 의사소통, 4단계는 전달, 그리고 5단계는 모니터와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외국의 주요 성 분석 모형은 성 주류화 지침과 성 분석 지침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성 주류화 지침 안에 성 분석 모형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 분석 모형의 단계는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나 대체로 문제와 이슈를 인식하고 정보와 자문을 구하며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성 분석 모형을 보면 김재인 외(2004)의 성 분석 모형은 모두 4단계 14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정책 의제 설정단계 - 여성관련 문제 파악, 여성의 요구 파악, 여성의 자문 참여, 여성에 대한 영향 예측, 2단계: 정책 결정 단계 - 여성관련 목표 수립, 성 인지적 정책 결정, 3단계: 정책집행 단계 - 여성 정책 대상 집단 선정, 성 인지적 예산편성, 담당자의 성 인식성, 여성에 대한 정책 전달, 성 인지적 정책의 협조 체계, 4단계: 여성관련 목표의 달성, 여성에 대한 영향 평가, 평가 결과의 성 인지적 활용이다. 그리고 4점 척도로 성 분석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어 직접 스스로 평가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4년에 경기도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분석 지침을 다음 <표 2-2>와 같이 마련한 바 있다.

<표 2-2>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틀(2004)

단계	주요 항목(8개)	세부 항목(16개)
〈1단계〉 정책 입안 · 결정	1. 정책문제관련 성별 이슈	1-1. 정책문제 관련 여성과 남성의 이슈 1-2. 정책 관련 성별분리통계
	2. 정책결정 참여	2-1. 정책 문제 관련 주요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2-2. 해당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무원의 성별 비율
	3.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3-1. 양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여부 3-2. 정책수단의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 가능성
〈2단계〉 정책 집행	4. 정책 서비스 전달	4-1. 서비스 방식이 성별 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 4-2. 정책홍보방식이 성별 정보접근성을 반영하는지 여부
	5. 예산 편성	5-1. 정책 집행을 위한 성별 예산 편성 여부 5-2. 성별 정책수혜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성을 위한 별도 예산 책정 여부
	6. 담당자의 성 인지력	6-1. 정책 담당자의 성 인지력 훈련 계획 여부 6-2. 성 인지력 훈련 참여 경험
〈3단계〉 정책 평가	7. 정책 집행결과의 성별영향분석	7-1. 여성관련 성과목표의 달성도 및 달성성 원인 7-2.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 증진에 미친 영향
	8. 분석결과의 환류, 정책개선	8-1. 성평등 증진하는 방향의 정책대안 마련 여부 8-2. 관련 부서에 개선방안 환류 및 반영 위한 장치 여부

자료 : 김양희 외, 「경기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지침」, 2004.

여성가족부는 2004년에 이어 2005년 보완된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성별영향평가 지침은 3가지 단계, 즉 정책 입안 및 기획 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단계별로 2-3개의 항목 또는 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분석틀은 <표 2-3>과 같다.

〈표 2-3〉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표(2005)

단계	주요 항목(9개)	세부 항목(16개)
〈1단계〉 정책 입안 · 결정	1.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별 관련성 파악	1-1. 정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확인하고 기획안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1-2. 정책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수집·사용하고 있는가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 확인	2-1. 정책의 목적 및 수단이 정부의 양성평등 계획 및 방향과 부합하는가
	3. 정책입안과정의 양성 평등 참여	3-1. 정책의 자문과 심의의결과정에 양성 평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4. 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4-1.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였는가 4-2. 정책의 성별 영향에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는가
〈2단계〉 정책 집행	5. 성 인지적 예산 편성	5-1. 정책수혜의 성별 편차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6-1. 서비스 전달 방식이 성별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가 6-2. 정책 홍보 방식이 성별 정보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가
〈3단계〉 정책 평가	7.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7-1. 정책의 수혜도가 성별로 형평하게 나타나는가 7-2. 정책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7-3. 수혜도 및 만족도에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였는가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8-1. 정책의 집행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하는가 8-2. 정책이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에 기여하는가
	9. 성별영향평가결과의 환류	9-1. 정책 효과에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였는가 9-2. 정책결과보고서에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자료: 여성가족부, 「2005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05.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시된 성별영향평가 지침 가운데, 2005년 여성가족부 지침과 2004년 경기도 지침을 참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표 2-4〉 참조). 크게 정책 및 사업 단계를 기획 및 입안 단계, 집행 단계, 결정 단계로 구분하고, 분석틀을 활용·보완하여 사업별로 주요 항목을 각각 설정·분석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사업 단위에 적용, 분석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4〉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단계	주요 항목(9개)	세부 항목(17개)
〈1단계〉 정책 입안 · 기획	1. 정책 문제 관련 성별 이슈 파악	1-1. 정책문제 관련 성별 이슈 확인 1-2. 성별분리통계 활용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2-1. 양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여부 2-2. 정책수단의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 가능성
	3. 양성평등한 정책 결정 과정 참여	3-1. 정책 문제 관련 주요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3-2. 해당 업무 참여 공무원 비율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4-1.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4-2. 성별 영향에 격차가 존재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
〈2단계〉 정책 집행	5. 성 인지 예산 편성	5-1. 정책 집행을 위한 성별 예산 편성 여부 5-2. 성별 정책수혜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편차가 큰 집단을 위한 별도 예산 책정 여부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6-1. 정책홍보방식이 성별 정보접근성을 반영하는지 여부
〈3단계〉 정책 평가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7-1. 수혜도가 성별에 따라 형평한지 여부 7-2.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동등한지 여부 7-3. 수혜도 및 만족도에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 파악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8-1. 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
	9.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9-1. 결과 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 포함하는지 여부 9-2. 개선방안 환류 및 반영 가능성

공무원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응답자의 특성
3. 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방법 및 대상

성별영향평가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성 인지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자 도구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궁극적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과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성 인지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성 인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정책 성별영향평가의 기반 및 여건 분석을 위하여 4개 부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용어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성 인지적인 업무 경험과 필요성, 그리고 성역할 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 결과는 현재 경기도 정책의 여건을 분석하고 성 주류화 기반 강화를 위해 향후 요구되는 조건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는 2005년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4개 부서 관련 공무원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하였다.⁵⁾ 경기도(본청, 2청) 및 31개 시·군 4개 부서 공무원 720명(노인복지 관련 부서 161명, 청소년 관련 부서 182명, 고용 관련 부서 171명, 농업 관련 부서 206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488부로 회수율은 67.8%이다.⁶⁾ 설문조사 결과는 SPSS ver. 13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평균,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⁷⁾

나. 조사 내용

설문 문항은 2004년 『정책의 성 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공무원 조사에서 사용된 일부 문항과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한 문항, 그리고 성역할 태도 문항

5) 2004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공무원 조사는 경기도 제1청사 실국별 공무원을 대상으로 1,07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584개 응답을 얻어 회수율은 54.3%였다. 본 연구는 우편 조사 실시를 위하여 각 시·군 해당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3~4회의 전화 작업을 거쳐 설문지를 추가 발송하기도 하였다.

6) 31개 시·군 : 본청·2청,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군포,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산, 하남, 의왕, 오산, 여주, 양평, 과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7)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노인복지와 청소년 업무, 농업과 고용관련 업무가 같은 과 혹은 국 소관인 경우가 많아 업무별 분석 시 중복되는 국·과장은 별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각각 개별 분석과정에 포함하였다.

을 사용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문항 중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 조사 내용

	조사내용
I.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성 인지 정책 용어에 대한 이해(6문항) 양성평등 정책관련 국내외, 경기도 법 계획 등 인지 정도(6문항)
II. 성별영향평가의 여건 및 기반	성별영향평가 관련 진행 사항 인지 정도(3문항)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조건 구비 정도(10문항)
III. 업무 경험에 대한 성 인지성	성 인지 관점을 고려한 업무 경험 유무(10문항) 성 인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10문항) 여성과 남성의 차이 고려 프로그램 유무(2문항) 성 인지적인 고용 정책의 필요성(2문항)
IV. 성 인지 관련 교육 경험 및 여성관련 부서 근무 경험	성 인지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1문항) 성 인지 교육 및 훈련이 업무에 도움이 된 정도(1문항)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1문항)
V. 성 역할 의식	성역할 의식 및 태도(15문항)

2. 조사 응답자의 특성

조사 응답자는 모두 488명이며, 농업 관련 부서 160명, 노인 복지 부서 107명, 청소년 관련 부서 81명, 고용 관련 부서 113명, 청소년과 노인 복지 부서에 모두 포함되는 국·과장급 24명, 농업과 고용 관련 부서에 모두 포함되는 국과장급 3명이 포함되었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3-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66.6%로 많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4.9%로 가장 많다.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이 47.4%로 절반에 달하며, 직급은 6-7급 공무원이 60.0%로 가장 많다. 성 인지 교육 경험은 없는 경우가 64.9%이며, 여성관련 부서 재임 경험도 없는 경우가 78.8%로 있는 경우보다 더 많다.

〈표 3-2〉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 체	
		사례수	비율
성별	여성	160	33.4
	남성	319	66.6
	계	479	100.0
연령	30대 이하	160	34.4
	40대	209	44.9
	50대	96	20.6
	계	465	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21	26.1
	2년제 대학	93	20.0
	4년제 대학	220	47.4
	대학원 이상	30	6.5
	계	464	100.0
직급	4-5급	79	17.6
	6-7급	269	60.0
	8-9급	100	22.3
	계	448	100.0
성 인지 교육 경험	있음	169	35.1
	없음	312	64.9
	계	481	100.0
여성 관련 부서 경험	있음	97	21.2
	없음	360	78.8
	계	457	100.0

응답자의 성별 특성은 <표 3-3>과 같다. 남성은 40대 비율(51.0%)이 높고 여성은 30대 비율(59.0%)이 높다. 교육수준은 남성과 여성 모두 4년제 대학 비율이 높으며 남성(43.5%)보다 여성(55.5%)이 약간 더 높다. 남성과 여성 모두 6-7급 비율(64.7%, 50.7%)이 높고, 특히 8-9급 비율은 여성(44.1%)이 남성(11.2%)보다 더 높다. 성 인지 교육 경험은 남성(68.2%)과 여성(57.5%) 모두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다. 여성 관련 부서 재임 경험은 여성(31.1%)이 남성(16.4%)보다 약간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조사 응답자의 성별 특성

(단위: 명, %)

구 분		여성		남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연령	30대 이하	92	59.0	68	22.1
	40대	51	32.7	157	51.0
	50대	13	8.3	83	26.9
	계	156	100.0	308	100.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6	16.8	94	30.5
	2년제 대학	29	18.7	64	20.8
	4년제 대학	86	55.5	134	43.5
	대학원 이상	14	9.0	16	5.2
	계	155	100.0	308	100.0
직급	4-5급	8	5.3	71	24.1
	6-7급	77	50.7	191	64.7
	8-9급	67	44.1	33	11.2
	계	152	100.0	295	100.0
성 인지 교육경험	있음	68	42.5	100	31.8
	없음	92	57.5	214	68.2
	계	160	100.0	314	100.0
여성관련 부서경험	있음	47	31.1	50	16.4
	없음	104	68.9	255	83.6
	계	151	100.0	305	100.0

다음 <표 3-4>는 청소년, 고용, 농업, 노인 업무 관련 부서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다. 4개 관련 부서 모두 남성 비율이 높으나, 특히 농업 관련 부서에 남성 비율(81.9%)이 높고 청소년 부서에 비교적 여성 비율(38.1%)이 높다. 30대 이하 비율도 청소년(34.3%)과 고용 부서(38.6%)가 농업(29.0%) 및 노인(30.3%) 부서에 비해 높고, 8-9급 비율은 농업 관련 부서(13.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 인지 교육경험은 청소년(42.9%)과 노인 부서(43.3%)에서 더 많았다. 특히 여성 관련 부서 재임 경험은 청소년 부서(38.4%)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부서와 여성 정책 관련 부서가 같은 국 소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3-4> 부서별 특성

(단위: 명, %)

구분		청소년	고용	농업	노인
성별	여성	38.1	32.5	18.1	44.1
	남성	61.9	67.5	81.9	55.9
	계	100.0	100.0	100.0	100.0
연령	30대 이하	34.3	38.6	29.0	30.3
	40대	39.2	46.5	43.2	46.2
	50대	26.5	14.9	27.7	23.5
	계	100.0	100.0	100.0	100.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5.5	27.0	29.5	25.6
	2년제 대학	22.5	18.9	21.8	16.5
	4년제 대학 이상	52.0	54.1	48.7	57.9
	계	100.0	100.0	100.0	100.0
직급	4-5급	30.7	16.7	16.2	26.0
	6-7급	46.5	56.5	70.4	50.4
	8-9급	22.8	26.9	13.4	23.6
	계	100.0	100.0	100.0	100.0
성 인지 교육 경험	있음	42.9	23.9	33.1	43.3
	없음	57.1	76.1	66.9	26.7
	계	100.0	100.0	100.0	100.0
여성 관련 부서 경험	있음	38.4	12.8	11.8	29.8
	없음	61.6	87.2	88.2	70.2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05	116	163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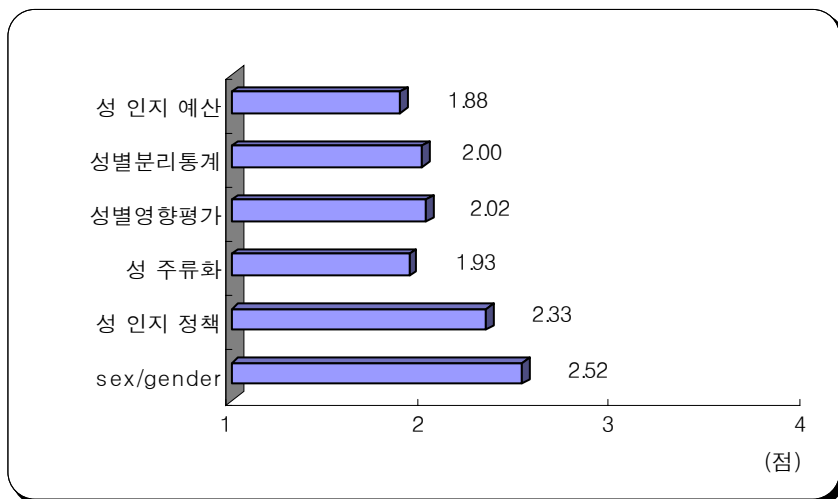
3. 조사 결과 분석

가.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먼저 성 인지 정책 관련 용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6개 용어 가운데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2.52로 가장 높았으며, 성 주류화와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1.93과 1.88로 낮게 나타났다.

성 주류화는 여성정책의 주요 전략이며 동시에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아직도 성 주류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성별분리통계는 성 인지 정책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실제 성별분리통계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1〉 성 인지 정책 용어 인지(4점 척도)



다음 <표 3-5>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표 3-5>의 값은 4점 척도 중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의 합으로 ‘알고 있는 경우’ 를 말한다. 대체로 성 인지 정책 용어 인지 정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직급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그리고 성 인지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여성 부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서별로 보면, 청소년과 노인 관련 부서에서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성 인지 교육 경험과 여성 관련 부서 경험 유무, 그리고 업무 부서에 따라 인지도의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교육과 업무를 통해 관련 용어를 인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성 인지 정책 용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 인지 교육과 여성 관련 부서 재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3-5> 성 인지 정책 용어 인지 : ‘알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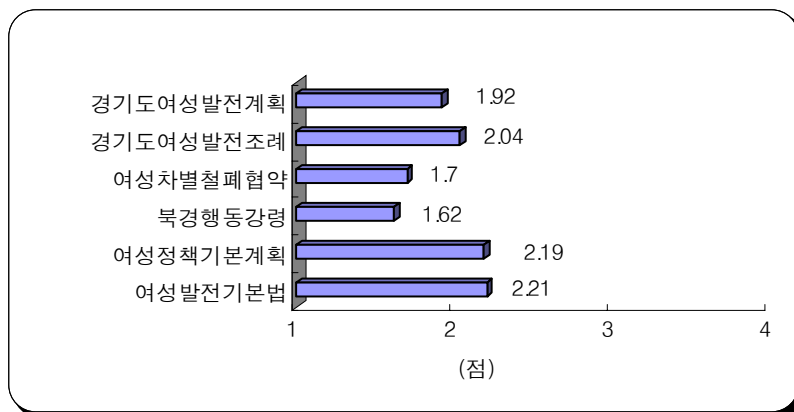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gender와 sex	성인지 정책	성 주류화	성별영향 평가	성별분리 통계	성인지 예산
성별	여성	65.0	48.7	34.2	33.1	34.2	30.6
	남성	45.8	43.1	22.1	26.7	24.5	23.7
	계	52.2	45.0	26.1	28.8	27.8	25.9
직급	4-5급	63.3	62.0	34.2	39.2	35.9	39.2
	6-7급	49.8	48.5	29.9	32.2	30.9	27.4
	8-9급	48.0	27.6	13.4	16.3	13.3	13.3
	계	51.8	46.3	27.0	30.0	27.9	26.4
교육 경험	있음	68.6	66.5	49.1	46.7	47.9	44.9
	없음	42.9	33.1	12.9	19.0	16.9	15.5
	계	52.0	44.8	25.6	28.7	27.8	25.8
여성 부서 경험	있음	70.1	65.6	46.9	52.1	47.9	49.0
	없음	47.5	39.7	19.3	23.0	22.0	19.1
	계	52.3	45.2	25.2	29.1	27.6	25.4
주요 부서	청소년	65.7	58.1	41.0	47.6	41.9	47.6
	노인	67.4	58.7	45.2	49.6	42.4	42.1
	고용	47.4	38.8	14.7	15.5	19.8	16.5
	농업	38.7	34.4	14.1	15.3	16.9	12.3

주: 4점 척도 중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의 합.

양성평등과 관련한 국내외 법과 계획에 대한 인지 정도를 보면, 다음 <그림 3-2>과 같다. 대체로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2.21과 2.19로 높은 반면 UN 여성차별철폐협약, UN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는 1.70과 1.62로 낮게 나타났다. 즉, 중앙 기본법과 계획 → 경기도 법과 계획 → 국제 협약 및 강령 순으로 인지하고 있어, 국제 협약이나 강령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경기도 여성관련 법과 계획(2.04, 1.92) 인지도도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여 여성관련 법과 계획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3-2> 양성평등 관련 법·계획 인지(4점 척도)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법·계획에 대한 인지 정도의 차이를 보면 다음 <표 3-6>과 같다. 성 인지 정책 용어와 마찬가지로 여성, 높은 직급, 성 인지 교육 경험과 여성부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노인복지 업무와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법·계획의 경우 4-5급과 성 인지 교육 경험 또는 여성부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 업무 부서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국내법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법·계획에서는 4-5급보다 성 인지 교육경험과 여성 부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성 인지 교육과 업무 관련 부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6〉 양성평등 관련 국내·외, 경기도 법·계획 등 인지 : ‘알고 있는 경우’

(단위: %)

구 분		여성발전 기본법	여성정책 기본계획	북경세계 여성대회 행동강령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경기도 여성발전 조례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성별	여성	36.9	35.0	10.1	13.4	27.2	24.4
	남성	30.4	30.4	9.4	12.3	24.1	21.0
	계	32.6	31.9	9.6	12.7	25.2	22.1
직급	4-5급	49.4	46.8	16.5	19.0	39.2	34.2
	6-7급	36.8	35.3	9.3	13.2	26.5	24.5
	8-9급	14.0	16.0	4.0	7.1	12.1	9.0
	계	33.9	33.0	9.4	12.9	25.6	22.8
교육 경험	있음	47.9	47.9	16.1	19.3	44.0	39.6
	없음	20.4	22.4	6.1	9.0	15.1	12.5
	계	32.4	31.4	9.6	12.6	25.3	22.0
여성 부서 경험	있음	53.6	45.5	19.6	22.3	43.2	40.2
	없음	27.2	27.2	6.7	9.5	19.7	16.4
	계	32.8	31.9	9.4	12.2	24.6	21.4
주요 업무	청소년	41.9	41.9	16.3	15.4	40.4	35.2
	노인	56.6	53.5	12.4	18.0	41.9	35.7
	고용	24.1	22.4	3.4	7.0	10.4	11.2
	농업	20.2	20.2	8.6	11.8	17.2	14.1

주: 4점 척도 중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

나. 성별영향평가의 기반과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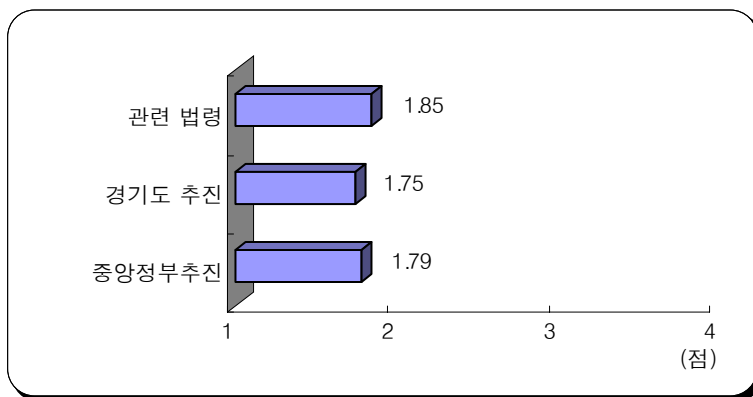
중앙정부는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 57개 기관(4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시·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04년 성별영향평가 기반구축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성별영향평가 시범 연구를 추진 중이

다. 성별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기반과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⁸⁾.

다음 <그림 3-3>을 보면 중앙 정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세 문항 모두 평균값이 2점 미만으로 나타나 대체로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황에 대한 인지도 문항의 평균값이 1.75로 가장 낮게 나타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홍보 작업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낮은 직급보다는 높은 직급일 경우에 알고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그리고 성 인지 교육 경험과 여성 부서 경험 유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항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모든 부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농업 관련 부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10% 내외에 머물고 있어, 고용이나 농업 등 지금까지 성별과 무관하다고 간주되어온 부서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3-3>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항 인지 정도(4점 척도)



8) 1번 문항 :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4년 10개 주요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번 문항 :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일반정책에 대한 성 분석(성별영향평가, gender analysis)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3번 문항 : 『여성발전기본법』과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본5개년시행계획』에 따라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되기 위해서 성별분리통계,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gender training)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책 및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고 성 인지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정책 수행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 인지적 정책 수행의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조건 구비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3-7〉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항 인지 : ‘알고 있는 경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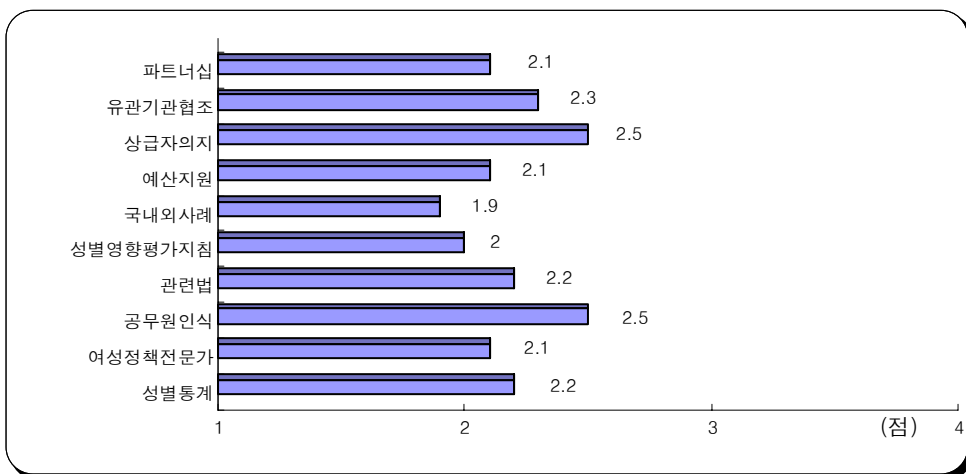
구 분		중앙정부 추진상황	경기도 추진상황	관련 법령
성별	여성	25.2	22.6	26.6
	남성	17.0	18.6	21.5
	계	19.7	19.9	23.2
직급	4-5급	29.1	31.6	39.1
	6-7급	23.1	22.0	23.9
	8-9급	8.1	9.1	12.2
	계	20.9	20.9	24.0
교육 경험	있음	35.1	37.5	41.1
	없음	10.6	9.3	12.6
	계	19.2	19.2	22.6
여성 부서 경험	있음	45.4	41.2	48.5
	없음	12.8	14.0	16.3
	계	19.8	19.8	23.2
주요 업무	청소년	29.5	31.4	33.3
	노인	33.6	34.4	40.2
	고용	9.5	7.8	12.1
	농업	11.7	12.3	14.9

주: 4점 척도 중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의 합.

먼저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10가지 자원과 조건을 간략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3-4>와 같다. 전체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 인지 정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인식(2.5)과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2.5) 평균 문항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스스로 공무원 집단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인식이나 의지 측면보다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별분리통계(2.2)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가 왜 필요하고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또 다른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자문 가능한 여성정책 전문가(2.1)의 평균값도 다른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성 인지적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성별영향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지침(2.0) 평균값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4>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조건 구비 정도(4점 척도)



다. 업무 경험에 대한 성 인지성 : 기획, 집행, 평가 단계

실제 업무에서 성 인지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8>과 같다. 기획 단계에서 보면, ‘업무를 기획·수행·평가할 때 관련위원회나 자문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고려’ 한 적이 있는 경우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래 전부터 여성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⁹⁾ 반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한 경우는 23.7%로 낮게 나타나, 사업을 기획할 때 성별에 따른 요구의 차이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행 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라 사업 수혜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 한 적이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하여 성 인지 예산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예산은 일반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여성 또는 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그리고 ‘사업 내용을 수혜자인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충분히 홍보·전달’ 문항에서는 비교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46.3%)가 많게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정책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 단계에서 성 인지적인 업무 경험이 특히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 결과를 평가할 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 수혜를 받았는지 평가’ 문항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

9)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에 따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사업을 위하여 연도별 목표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도별 목표율(위촉직 기준)은 2003년 32%, 2004년 34%, 2005년 36%, 2006년 38%, 2007년 40%이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도 제8조(도정참여의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일반적으로 성 인지 예산은 성 특정적 지출과 성 형평적 지출, 그리고 주류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 특정적 지출은 특정한 성별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과 정책에 할당된 예산을 말한다. 성 형평적 지출은 공공 지출 내에서 성평등을 추진하는 지출을 말하며 적극적 조치와 같은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예산이다. 필리핀의 경우 정부 예산의 5%를 성 형평적 예산으로 정한 바 있다. 그리고 주류 예산은 위 두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에 해당한다. 성 인지 예산 분석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 분석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별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주요 도구 중 하나이다.

우가 85.6%로 대부분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업 결과를 작성, 보고할 때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작성’ 한 적이 있는 경우가 20%에 불과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 수혜를 받았는지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추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공무원 면접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수혜자를 구분하는 것’을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도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결과 보고 시 성별분리통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3-8〉 성 인지적 업무 경험

(단위: 명, %)

단계	문항	사례수	업무 경험		
			있음	없음	계
기획 입안 단계	업무를 계획하거나 수립할 때,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차이를 고려함.	449	30.7	69.3	100.0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함.	438	23.7	76.3	100.0
	업무를 계획하거나 수립할 때,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활용함.	438	25.6	74.4	100.0
	업무를 기획수행평가할 때, 관련 위원회나 자문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고려함.	438	45.0	55.0	100.0
집행 단계	성별에 따라 사업 수혜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함.	438	13.5	86.5	100.0
	사업 내용을 수혜자인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충분히 홍보·전달함.	438	46.8	53.2	100.0
평가 단계	사업 결과를 작성·보고할 때,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작성함.	437	20.4	79.6	100.0
	사업 결과를 평가할 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 수혜를 받았는지를 평가함.	438	14.4	85.6	100.0
	사업 수혜 정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날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함.	434	15.7	84.3	100.0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업무 경험의 차이를 보면, 다음 <표 3-9>와 같다. 기획 단계의 성별분리통계 활용과 결과 단계의 성별분리통계 결과 보고 시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23.8%, 18.1%)보다 여성(28.2%, 24.3%)이 더 많았으며, 나머지 문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3-9〉 성 인지 업무 경험 : 있는 경우

(단위: %)

구분		기획·입안				집행		평가		
		성차 고려	대안 마련	성별 통계	동등 참여	성별 예산	홍보	성별 보고	성차 평가	추후 반영
성별	여성	26.7	15.0	28.2	43.5	12.0	44.6	24.3	9.5	11.5
	남성	33.6	28.2	23.8	45.8	14.2	48.1	18.1	16.6	17.9
	계	31.2	23.7	25.3	45.0	13.5	46.9	20.2	14.2	15.7
직급	4-5급	58.6	41.8	34.8	65.2	25.4	65.2	23.1	31.8	31.3
	6-7급	28.8	22.2	25.7	47.2	11.1	47.3	21.1	12.7	14.4
	8-9급	20.0	12.6	20.2	26.9	8.5	36.2	17.0	5.3	9.6
	계	31.8	23.2	25.9	45.4	12.8	47.7	20.5	14.1	16.0
교육 경험	있음	45.0	34.9	33.6	53.7	21.8	53.4	26.9	19.2	23.4
	없음	23.6	18.1	21.2	40.1	9.1	43.1	17.0	11.8	11.2
	계	30.8	23.7	25.3	44.7	13.4	46.5	20.3	14.3	15.3
여성 부서 경험	있음	48.9	31.0	44.2	59.3	21.3	62.4	32.6	24.7	29.1
	없음	26.5	21.1	19.8	40.9	10.8	43.5	17.4	11.2	12.3
	계	31.1	23.2	24.9	44.7	13.0	47.3	20.6	14.0	15.9
업무 부서	청소년	43.8	26.6	32.3	54.3	20.0	56.4	21.3	20.2	21.5
	노인	39.7	25.7	36.3	54.4	15.9	59.3	25.7	14.2	17.1
	고용	30.9	23.1	24.1	43.5	11.2	42.1	25.2	15.0	18.9
	농업	22.7	24.7	17.8	36.6	12.3	37.4	13.0	13.6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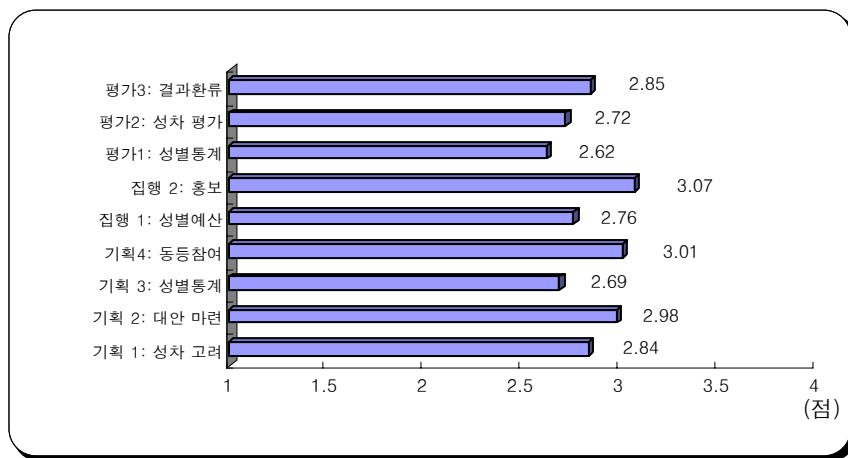
주: 있다고 응답한 비율.

직급별로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성 인지적인 업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성 인지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모든 직급에서 성 인지성이 요구되지만 특히 높은 직급을 중심으로 성 인지성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며, 부서 내 업무에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 인지 교육 경험과 여성부서 경험이 있을 때 성 인지적 업무 경험이 더 많았는데, 이는 성 인지 교육과 여성관련 부서 경험이 성 인지 정책 및 제도를 인지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도 성 인지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해서 먼저 성 인지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및 확대, 그리고 공무원 경력 단계에서 여성 부서를 경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성 인지적 업무의 필요성

다음 <그림 3-5>는 성 인지적 업무가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대체로 기획 및 집행 단계보다 평가 단계에서 성 인지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3-5> 성 인지적 업무의 필요성(4점 척도)



공무원 면접에서 결과 보고 시 성별로 분리되어 보고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도 대부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및 프로그램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사업 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러므로 실적 중심의 양적 평가를 넘어서서 양성평등한 수혜 정도를 평가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 지표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0〉 성 인지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구분		기획 및 입안				집행		평가		
		성차 고려	대안 마련	성별 통계	동등 참여	성별 예산	홍보	성별 보고	성차 평가	결과 환류
성별	여성	79.7	83.8	70.9	83.6	76.5	86.6	70.5	76.4	79.1
	남성	79.7	73.5	56.7	70.8	57.8	70.0	50.0	54.7	60.9
	계	70.7	76.9	61.4	75.1	64.1	75.6	56.9	61.9	67.0
직급	4-5급	85.5	85.9	67.1	85.9	69.7	81.8	61.8	71.1	73.7
	6-7급	66.8	75.1	59.0	70.4	59.3	71.4	54.8	56.3	63.7
	8-9급	74.2	74.7	66.7	78.7	74.2	81.7	55.9	67.7	69.9
	계	71.9	77.0	62.2	75.1	64.6	75.6	56.4	61.5	66.9
교육 경험	있음	80.5	83.2	69.0	81.5	66.9	77.8	63.9	70.6	74.0
	없음	65.2	74.1	57.1	71.9	62.6	74.3	53.2	57.5	63.6
	계	70.5	77.3	61.2	75.2	64.1	75.5	56.9	62.0	67.2
여성 부서 경험	있음	81.5	88.3	73.1	79.8	75.8	83.2	69.9	75.5	81.7
	없음	68.6	73.7	57.9	73.5	61.0	74.5	53.0	57.8	63.1
	계	71.4	76.9	61.2	74.8	64.2	76.4	56.7	61.7	67.2
업무 내용	청소년	82.5	87.9	73.5	82.5	75.3	85.7	63.3	74.2	80.4
	노인	81.0	84.2	71.3	84.6	70.0	89.3	69.9	74.0	76.0
	고용	67.3	76.9	60.6	73.4	64.8	66.7	49.5	56.9	63.2
	농업	60.9	68.4	49.3	67.1	55.6	67.5	52.0	52.7	58.9

주: 4점 척도 중 '약간 필요하다' 와 '매우 필요하다' 비율의 합.

위 <표 3-10>는 업무의 성 인지성을 묻는 4점 척도 문항에서 ‘약간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성 인지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를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성 인지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다.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성 인지적 업무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 인지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여성 부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 관련 업무 부서에서 성 인지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고용이나 농업 등 성별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부서에서 성 인지적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부서에 대한 다양한 교육 경험이나 관련 사례 제시, 지침 활용 등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성 인지적 사업/프로그램의 가능성

업무에서 성차를 고려할 사업/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15%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 인지적 사업/프로그램의 집행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표 3-11> 참조). 성 인지적 관점을 고려할 만한 사업/프로그램이 없다기보다는 이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업무 내용별로 보면, 노인 및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성차를 고려할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용 및 농업 관련 부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용어 및 관련 법령 인지도가 높고, 성 인지적인 업무 경험이 많고, 성 인지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 성 인지적인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바. 성 인지 교육 경험

성 인지 교육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4-5급, 여성부서 경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 부서와 노인 부서에서 성 인지 교육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특히 경기도는 2002년부터 공무원 양성평등의식을 위해 성 인지력 향상 교육

〈표 3-11〉 부서 내에서 성차를 고려할 프로그램 유무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계
성별	여성	17.4	82.6	100.0
	남성	14.1	85.9	100.0
	계	15.2	84.8	100.0
직급	4-5급	22.4	77.6	100.0
	6-7급	15.2	84.8	100.0
	8-9급	9.1	90.9	100.0
	계	15.1	84.9	100.0
교육 경험	있음	27.1	72.9	100.0
	없음	8.3	91.7	100.0
	계	15.0	85.0	100.0
여성 부서 경험	있음	27.4	72.6	100.0
	없음	11.4	88.6	100.0
	계	14.8	85.2	100.0
업무 부서	농 업	10.7	88.7	100.0
	노 인	24.4	75.6	100.0
	청소년	24.2	75.8	100.0
	고 용	7.8	9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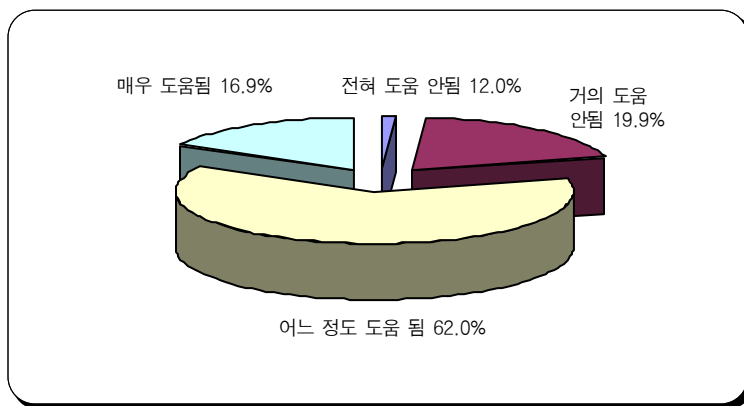
〈표 3-12〉 성 인지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계
성별	여성	42.5	57.5	100.0
	남성	31.8	68.2	100.0
	계	35.4	64.6	100.0
직급	4-5급	40.5	59.5	100.0
	6-7급	41.1	58.9	100.0
	8-9급	20.0	80.0	100.0
	계	36.3	63.7	100.0
여성 부서 경험	있음	53.2	46.8	100.0
	없음	29.5	70.5	100.0
	계	34.4	65.6	100.0
업무 부서	청소년	42.9	57.1	100.0
	노 인	43.3	56.7	100.0
	고 용	23.9	76.1	100.0
	농 업	33.1	66.9	100.0

을 실시해 왔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의 성 인지 교육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및 훈련이 업무에 도움이 된 정도를 살펴보면 7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성 인지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 인지 교육 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업무에 반영할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13명)가 가장 많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와 ‘기존 업무가 바빠서’ (각 7명), ‘업무에 교육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와 ‘업무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각 6명) 순이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교육 및 훈련이 업무에 도움 된 정도



사. 성역할 태도 및 의식

성 인지적 정책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성 인지 훈련은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성 인지적인 정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성 인지적 정책의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있어 공무원의 성역할 태도와 의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성역할 태도 척도는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문항 중 15개 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¹¹⁾ 총 성역할태도 점수는 15점에서 6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평등

11) 총 성역할 태도 점수는 2, 6, 8, 10, 12, 13, 14, 15번 문항의 값을 역부화한 후 15문항 값의 합을 사용하였다.

한 성역할 태도로 간주한다(〈부록: ‘경기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설문조사’ 설문지〉 참조). 15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척도 검사 결과 $\alpha = 0.814$ 로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이다. 다음 〈표 3-13〉을 보면, 여성이 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과 직급은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부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평등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성 인지 훈련은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역할 태도가 약간 더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공무원 성역할 태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명)	성역할 태도		F값
			평균값	표준편차	
성별	여성	157	48.1	5.17	244.15***
	남성	310	40.0	5.39	
	계	467	42.7	6.56	
연령	30대 이하	157	44.8	6.72	12.85***
	40대	203	42.2	6.41	
	50대	94	40.9	5.27	
	계	454	42.8	6.47	
교육 수준	고등학교	120	42.0	6.1	1.92
	2년제 대학	89	42.1	6.2	
	4년제 대학 이상	244	43.3	6.9	
	계	453	42.7	6.6	
직급	4-5급	77	40.8	4.74	16.23***
	6-7급	261	42.3	6.34	
	8-9급	98	45.9	7.06	
	계	436	42.9	6.48	
성 인지 훈련경험	있음	167	43.2	6.73	.97
	없음	302	42.5	6.50	
	계	469	42.8	6.58	
여성 부서경험	있음	96	44.3	6.79	6.68**
	없음	349	42.3	6.36	
	계	445	42.8	6.49	

** $p < .01$, *** $p < .001$

1-2회 교육을 통해 성역할 태도가 갑자기 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업무 경험은 성역할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 부서 재임 경험에 따라 성역할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업무 내용과 환경에 따라 성역할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도정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모든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 인지 향상 교육과 여성 부서를 경로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경기도 청소년 현황 및 여가·문화활동
3.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수혜자 조사
4. 청소년 문화 정책 관련 제도 및 기반의 성 인지성 분석
5.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6.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생애주기 구분에 따라 연령별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청소년은 성인과 구분되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시기로, 연령 범주에 따라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담론은 청소년 정책과 함께 변화하여 왔는데, 청소년 정책이 규제·보호·선도의 논리였던 1970년대, 육성의 논리로 전환했던 1980년대, 그리고 보호와 복지의 논리가 동시에 존재했던 1990년대로 진행되어 왔다(이무용 외, 2004).

그러나 청소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살고 있으며, 청소년 집단의 내적 차이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수동적인 단일 집단이 아니라 내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능동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청소년 문화 정책 논의들은 청소년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까지 훈육의 대상이던 수동적인 집단에서 창조적인 능동적 주체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청소년 집단 내 성별, 지역, 연령 등과 같은 다양한 차이가 청소년 문화 정책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1년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같은 해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부터 청소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1993년 ‘제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제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청소년 정책이 체육 청소년 부에서 시작된 것처럼 초기 청소년 문화 정책은 많은 부분 체육 및 수련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청소년 문화 정책의 시작은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부터 라고 할 수 있다(홍은광, 2000).

‘제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2003-2007)의 수립 배경은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다양해지고 증대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고 주5일 근무(수업)제 본격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육성정책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주5일제를 대비하여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할 것을 선정하였으며, 세부추진 과제로 청소년활동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를 채택하였다.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공간을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존’을 지정하고, 청소년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문화정책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와 더불어 주5일제 근무(수업)에 대비하여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화된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며 실천하는 다양한 성역할과 경험은 미래의 삶을 기획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화 안에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는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기대와 역할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이를 학습한다. 문화는 종종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기반으로 한 ‘현 상태’를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UNESCO, 2003). 따라서 문화 속에 내재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다양한 차이와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문화 정책은 계속해서 성별화된 사회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별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갖는다. 또한 가족, 학교,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범주와 교차하는 다층적 집단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정책은 성별에 따른 이해와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자원과 권력의 공정한 재분배를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 시설 이용이나 활동 영역에서도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은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정책에 고려하는지 여부는 정책의 수혜 뿐 아니라 자원과 권력의 분배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 정책은 청소년을 성 중립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수혜의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문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집단의 성별 욕구 차이를 드러내고,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성 인지적인 청소년 문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경기도 청소년 현황 및 여가·문화 활동

가. 경기도 청소년 인구 현황¹²⁾

지역별 청소년 인구 추이를 보면, 대체로 시·도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인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서울의 청소년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인구는 1970-2000년 사이에 3.5% 증가하였는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청소년 인구는 60.3%에 증가하였다. 경기도 전체 인구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 10,462천명이며, 이 가운데 청소년 인구는 2,398천명이다. 청소년 인구는 경기도 인구의 22.9%이며, 청소년 인구 중에서 여성 1,159천명, 남성 1,238천명으로 남자 청소년 비율이 51.6%이다. 경기도 청소년 인구수는 <표 4-1>과 같다.

〈표 4-1〉 경기도 청소년 인구수(9-24세)

(단위: 명)

구분	전체 인구			청소년 인구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체	10,462,920	5,185,600	5,277,320	2,398,354	1,159,684	1,238,670
본청	7,835,481	3,876,889	3,958,592	1,812,399	876,597	935,802
2청	2,627,439	1,308,711	1,318,728	585,955	283,087	302,868

2004. 12. 31 현재

자료 :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05.

나.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보면, 2004년 현재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가 77.6%, 20-24세는 80.5%로 20-24세가 15-19세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15-19세 여자 청소년은 음악(31.6%), 연극(18.6%) 등 공연장을 찾는 비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은 전시장에서 박물관(79.7%)을 찾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12)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관련 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0-18세까지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 관람에서는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9.1%)보다 남자 청소년(21.8%)의 관람 비율이 더 높았다.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에서 여자 청소년은 일반 공연 문화에, 그리고 남자 청소년은 스포츠 쪽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별로는 15-19세, 20-24세 모두 영화 관람율이 93.5%,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박물관 미술관, 음악공연 순이었다(〈표 4-2〉 참조).

청소년의 주말 및 휴일 여가 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 〈표 4-3〉과 같다. 성별로 보면 15-19세 여자 청소년은 TV 시청(28.3%), 컴퓨터 게임/PC 통신(23.9%), 사교 관련 활동(15.3%) 순이었으며, 15-19세 남자 청소년은 컴퓨터 게임/PC 통신(37.0%), TV 시청(17.8%), 사교 관련 활동(11.9%) 순이었다. 여자 청소년은 TV 시청 비율과 문화예술관람 비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남자 청소년은 컴퓨터 게임/PC 통신과 스포츠 참여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2004)

(단위 : %)

구분	관람률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 관람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15세 이상	51.0	22.8	20.8	2.4	90.1	77.6	54.3	19.5
남성	51.0	18.9	16.5	1.8	91.2	80.5	49.5	28.5
여성	51.0	26.2	24.4	2.9	89.1	75.5	57.9	10.9
15~19세	77.6	27.1	15.5	2.7	93.5	76.4	61.0	15.2
남성	71.9	21.9	12.0	1.6	92.3	79.7	54.4	21.8
여성	83.7	31.6	18.6	3.6	93.9	74.2	65.6	9.1
20~24세	80.5	18.1	17.6	1.8	97.1	66.7	65.7	16.8
남성	73.7	13.7	10.5	1.4	96.6	72.9	62.0	26.0
여성	58.7	20.8	22.0	2.1	97.4	64.0	67.2	10.8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경기도 청소년의 여가 문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200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2003년 전국 대도시/중소도시/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16,2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 경기도 청소년의 여가 문화 활동을 보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3> 청소년의 여가활동(2004)

(단위 : %)

구분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컴퓨터 게임, PC통신	자기 계발	사교 관련	가족과 함께	가사일	휴식, 수면	기타
15세이상인구	26.1	5.2	2.3	4.3	6.9	1.8	11.4	9.3	12.1	16.1	4.4
남 성	26.5	7.0	1.7	7.1	4.0	1.7	11.9	9.9	19.8	14.2	5.6
여 성	25.7	3.4	3.0	1.7	9.9	1.7	11.9	9.9	19.8	14.2	4.9
15~19세	22.9	0.5	3.6	3.8	29.7	8.2	13.5	1.6	0.9	12.2	3.2
남 성	17.8	0.6	2.4	6.8	37.0	7.2	11.9	1.3	0.6	11.4	3.1
여 성	28.3	0.5	4.8	0.5	23.9	9.3	15.3	2.0	1.2	3.0	3.2
20~24세	21.5	3.2	8.1	3.5	17.0	3.3	22.2	2.0	2.5	12.8	4.1
남 성	19.2	3.6	4.4	6.7	26.6	3.2	18.7	0.9	0.7	12.5	3.7
여 성	23.4	2.8	10.9	1.0	9.7	3.4	24.8	2.7	3.9	13.1	5.2

자료 : 통계청, 「청소년 통계」, 2005.

<표 4-4>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2003)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계	집	PC방	공원/ 놀이터	학교	길거리	오락실	노래방	공공 장소
전국 전체	8,140	100.0	78.4	21.5	15.0	10.8	9.5	8.2	8.2	6.6
도 전체	1,116	100.0	77.9	20.2	15.8	10.9	11.5	5.8	7.9	7.0
남성	573	100.0	72.6	33.9	15.1	11.1	9.0	8.1	6.3	7.0
여성	543	100.0	83.5	5.8	16.5	10.7	14.1	3.3	9.6	6.9
구분	사례수	계	극장	서점	친구집	만화가게	교회/ 절 등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다방	편의점
전국 전체	8,140	100.0	4.7	4.3	4.3	2.7	2.4	2.0	2.0	1.3
도 전체	1,116	100.0	6.5	3.9	4.7	2.2	3.2	2.0	1.8	1.4
남성	573	100.0	5.4	2.9	4.3	2.4	2.4	1.3	0.7	1.5
여성	543	100.0	7.8	4.9	5.1	2.0	4.1	2.8	3.0	1.2

자료: 김순홍 외, 「청소년생활통계연보: 경기」, 2004.

성별로 보면, 집에서 보내는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83.5%로 남자 청소년 72.6%보다 높다. PC 방에서 보내는 비율은 남자 청소년 33.9%, 여자 청소년 5.8%, 오락실은 남자 청소년 8.1%, 여자 청소년 3.3%로 PC방과 오락실 등에서 보내는 비율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더 높다. 반면 여자 청소년은 길거리에서 보내는 비율이 14.1%로 남자 청소년 9.0%보다 높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소년 수련 활동

청소년 수련 시설 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 현재 전국 수련시설은 687개소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지역별로 보면 2004년 12월 현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123개로 가장 많으며, 경북 74개, 경남 72개, 강원 61개, 전북 56개 순이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관은 14개, 문화의 집은 25개, 청소년수련원은 47개, 야영장은 15개,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22개다(〈표 4-5〉 참조). 경기도는 청소년 인구 수가 많고 한수 이북과 한수 이남으로 나뉘어져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수련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경기도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38.9%로 전국 46.3%보다 낮으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2.7%로 전국 9.6%보다 높다.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 40.9%, 여자 청소년 36.8%가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적이 있어 남자 청소년의 이용 경험률이 여자 청소년보다 조금 더 많다. 특히 남자 중학생은 43.3%가 이용한 적이 있는 반면, 여자 중학생은 35.8%만이 이용한 적이 있어 중학교에서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청소년 인구 가운데 경기도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도 지역은 도시와 농촌 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경기도 청소년 정책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여가 및 문화 활동에서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나 불만족 이유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화 활동 내용에서도 남자 청소년은 주로 스포츠 활동과 컴퓨터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시·도	구 분	총 계	생 활 권			자 연 권			유스 호스텔
			계	수련관	문화의집	계	수련원	야영장	
전국	계	687	287	127	160	319	186	133	81
	공공	464	272	122	150	188	79	109	10
	공공(시도)	323	261	111	150	58	41	17	10
	공공(교육청)	141	11	11	0	130	38	92	0
	민간	217	15	5	10	131	107	24	71
경기	계	123	39	14	25	62	47	15	22
	공공	62	38	14	24	23	15	8	1
	공공(시도)	48	38	14	24	9	8	1	1
	공공(교육청)	14	0	0	0	14	7	7	0
	민간	61	1	0	1	39	32	7	21

2004.12.31 기준

자료: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2004.

〈표 4-6〉 지난 일년간 경기도 청소년 수련관 이용경험(2003)

(단위: 명, %)

	사례수	계	있다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무응답
전국 전체	5,115	100.0	46.3	43.8	9.6	0.4
도 전체	666	100.0	38.9	47.8	12.7	0.7
남성	338	100.0	40.9	43.1	14.7	1.3
여성	328	100.0	36.8	52.6	10.6	0
고등학교	301	100.0	38	48.1	13.6	0.3
남성	153	100.0	38.1	47.4	13.9	0.6
여성	148	100.0	37.9	48.8	13.2	0
중학교	365	100.0	39.6	47.5	11.9	0.9
남성	185	100.0	43.3	39.6	15.3	1.9
여성	180	100.0	35.8	55.7	8.5	0

자료: 김순홍 외, 『청소년생활통계연보:경기』, 2004.

일반적으로 스포츠나 과학 관련 남성적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왔으며, 여성들의 체육 활동이나 과학 활동은 매우 저조하다. 스포츠 경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공격성, 폭력, 경쟁성, 승리 추구 등은 남성성의 영역표출로 인식되어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낙인이 찍힘으로써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왔다. 그 결과 여성들이 스포츠 영역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여성은 다른 영역을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정성숙 외, 2004). 이처럼 성별고정관념과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문화활동에서의 성별 차이를 가져오는지 혹은 재생산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화 정책은 성별고정관념을 개선하고 평등한 청소년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성 인지적인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3. 청소년 문화 정책 관련 제도 및 기반의 성 인지성 분석

가. 청소년 문화 정책 관련 법·제도의 성 인지성 분석¹³⁾

1) 청소년 관련법

2003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¹⁴⁾ 즉,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 참여 보장 규정 등을 명시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13) 청소년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14) 경기도 청소년 관련 조례로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 경기도청소년상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장학금지원조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주5일 수업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수련활동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 활동을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정책적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였다.

특히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포함한다. 동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 문화와 관련한 주요법에 나타난 성 인지성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주요 법에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하거나 양성평등과 관련한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없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관련 조례도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등 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청소년은 연령별 특성에 따라 동질적인 사회 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소년 집단 내 성별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차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청소년 관련 계획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 및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제1차 청소년

1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며,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2003-2007)의 수립 배경은 첫째, 열악한 청소년 인권 상황, 둘째, 주5일 근무(수업)제 시대의 도래, 셋째, 정보화의 가속화, 넷째,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다섯째, 청소년 실업과 불안한 고용 전망, 여섯째,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경기도 「2005 청소년 육성 시행계획」을 보면 <표 4-7>과 같다.

〈표 4-7〉 2005년 경기도 청소년 육성 시행 계획

정책 비전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
추진 방향	○ 새로운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어려운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중점 추진 4대 과제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 ○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 증대 ○ 청소년비행탈선예방을 위한 선도보호 강화 ○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추진전략	○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 : 청소년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국가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 지역화(localization) 전략 : 중앙정부중심의 청소년정책 개발과 시행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 및 역량을 강화 ○ 차별화(differentiating) 전략 : 정책 대상을 연령별, 집단별, 성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의 정책과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 파트너십(partnership) 전략 :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파트너십,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자원간의 파트너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파트너십 형성

청소년육성시행계획 외에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인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서도 “건강하고 자율적인 청소년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경기청소년의 주요 지표와 5대 추진 과제를 정하였다. 경기 청소년 정책의 주요 지표를 보면, 2010년에 차세대위원회 32개로 확대하고 차세대위원 680명, 청소년 수련시설 2010년 200개, 2020년 300개, 그리고 청소년육성조직을 (도) 1과 5담당 25명, (시·군) 50만 명 이상 시 1과 3담당 15명, 그리고 청소년 예산을 1인당 2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선정한 5가지 과제는 첫째, 자긍심과 인권 함양, 그리고 자율참여를 위한 지원체계구축, 수련활동체계 구축,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및 환경 개선, 가정·학교·지역사회 지원망 강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경기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청소년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희망이 반영된 생활권 수련시설 등을 확대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 단체의 자율화·특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관련 기본 계획에서는 성별을 고려하거나 성별 차이를 반영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관련 계획은 청소년 일반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나 청소년 집단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고려하는 내용은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관련법과 계획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청소년 부서에서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차이를 반영하고 성별고정관념을 개선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해야 할 제도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청소년 관련 계획은 청소년들의 동등한 참여와 더불어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 청소년 문화 정책 기반의 성 인지성 분석

1) 추진 체계

청소년 업무 전담 조직은 1988년 당시 체육부 청소년 국이 독립된 부서로 처음 설치된 이

후,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바뀌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에 문화체육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에서 담당하였는데, 2005년 정부혁신위의 가족 청소년 기능 개편과 관련하여 청소년 조직이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었다(2005. 6. 24).

경기도 청소년 관련 부서는 현재 가족여성정책국 보육청소년과 소관이며, 관련 부서는 청소년육성담당과 청소년시설담당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2청은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족여성정책국 전체 정원은 현재 38명이며, 본청 보육청소년과 정원은 19명이다. 청소년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9명이며 이중 여성은 2명으로 모두 6급 이하이다.

2) 관련 위원회

청소년 관련 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와 경기도차세대위원회가 있다.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육성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관리 및 지원의 기능을 갖는다. 경기도 청소년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이 3명이다. 당연직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위촉직 가운데 여성 1명이 부위원장이다. 전체 위원 구성은 당연직을 포함한 전체 15명 중 5명이 여성이며, 여성 비율은 33.3%(위촉직 기준 41.7%)이다.¹⁶⁾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는 2000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도지사 및 도내의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자문과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차세대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기능을 갖는다. 차세대 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04년에는 31명 가운데 남 15, 여 16명이었으며 모두 위

16)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에 따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사업을 위하여 연도별 목표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도별 목표율(위촉직 기준)은 2003년 32%, 2004년 34%, 2005년 36%, 2006년 38%, 2007년 40%이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도 제8조(도정참여의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적으로 여성 참여 비율은 51.6%였다. 2005년에는 전체 60명 가운데 34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56.7%로 약간 증가하였다.

다. 청소년 문화 사업의 성 인지성 분석

1) 추진 사업

경기도는 2004-2005년도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중점 추진 4대 과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정책 추진, 청소년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 증대,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보호 강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선정하였다.

2005년 청소년 사업은 모두 39개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정책 추진 사업 14개, 청소년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 증대 사업 12개, 청소년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보호 강화 사업 5개,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사업 8개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육성정책이 강화되면서 청소년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보호 강화 사업이 2004년 19개에서 2005년 5개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요구와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04년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비행청소년 개입전략연구, 그리고 문화존 사업 평가 연구 등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문화존 사업 참여 청소년 욕구 조사가 있다.

2004-2005년 경기도 청소년 사업 가운데 청소년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은 없으며, 또한 각각의 사업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도록 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수혜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 청소년의 성별 차이와 수혜의 형평성은 사업 계획에서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는 청소년은 기성세대와 달리 이미 양성평등할 뿐 아니라 여학생의 능력이 남학생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할 때 성별을 구분하거나 여학생 또는 남학생만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평등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데, 형식적인 동등 기회를 곧 실질적 평등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청소년 세대가 기성세대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청소년은 현 사회의 사회적 성역할과 성별고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사업은 수혜의 차이를 예측, 고려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성별고정관념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8〉 2005년 경기도 청소년 정책 사업 계획

	2005년도 사업구분	
I.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 시책 추진	1.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 2. 청소년연극제 개최 3. 청소년의 달 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5. 청소년문화존 사업 추진 6.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7. 수련 프로그램 운영	8. 국제평화기원 청소년 해양캠프 9.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0. 차세대 위원회 운영 활성화 11. 모범청소년 선진문화 답사 12.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시상 13. 청소년대토론회 개최 14. 청소년 지역 토론회 개최
II.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증대	1.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다양화 2. 청소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3. 청소년장학생 선발지원 4. 청소년공부방 운영 5. 청소년공부방 교육(영어)지원 6. 청소년쉼터 운영 7. 청소년증 발급	8.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지원 9.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개최 10. 비정규학교 지원 11.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 12.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봉사
III. 청소년 비행 탈선예방을 위한 선도보호 강화	1. 청소년상담실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및 지도위원 연찬회	4.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활성화 5.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관리
IV.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 청소년수련관 건립 2.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조성) 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4.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 청소년수련시설 안정성 확보 6.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운영 7.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 8. 도립 마정 청소년 수련원 건립(제2청)

2) 예산

2005년 청소년 육성 사업 예산을 보면 전체 40,344,608천원(국비 1,202,718, 군특회계 3,509,000, 도비 5,738,424, 시·군비 25,104,729, 도청소년육성기금 4,789,737)이다. 사업주체별로 보면 국가 지원사업이 28,403,010천원, 도 자체사업이 11,941,598천원이다. 기금별로는 중앙기금 1,202,718천원, 도 기금 4,789,737천원이다. 2005년 시·군별 주요 청소년육성정책 사업은 전체 536건이며, 전체 예산 81,998,587천원(국·도·비 14,273,930천원 + 시·군비 67,536,492 + 자부담 188,165)이다.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집행되는데,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업 또는 수혜의 차이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사업 예산 등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3) 사업 실적

2005년 청소년육성시행계획에 제시된 2004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별로 기간, 장소, 참가인원, 사업비 등으로 보고되어 있다. 거의 모든 사업의 추진 실적이 사업 기간과 참가 인원 ○○○ 명 중심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성별로 분리된 경우는 차세대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남 16, 여 15)과 청소년공부방(본청 128개소 : 남 587,773, 여 601,709, 2청 37개소 : 남 137,122, 여 127,255명) 뿐이다. 대체로 성별보다는 학령별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청소년 안에서 성별보다는 연령별 차이가 더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청소년 문화존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1) 추진 배경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전용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1999년 인천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문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인천광역시가 문화관광부에 동 사업의 추진을 제안

하였고, 그 결과 문화관광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국적 사업으로 확장하게 된 것이다 (김근홍 외, 2004).

올해 초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를 네트워킹,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창의성 제고 등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체험형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권신장 등 문화 복지의 지방분권화 실현을 목적으로 청소년 문화존 사업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동 사업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이용하기 좋은 지역적·문화적·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설 및 기관 등을 Net working하여 놀이 체험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더불어 주5일제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육성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2004년 전국 사·도로부터 제안과 심사를 거쳐 2004년에는 8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가 선정되었으며, 2005년에도 8개 시·도 30개 권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체 소요예산은 모두 32억원(청소년육성기금 16억원 지원)이며,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이다. 주관은 시·도 관내 청소년 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주관하기로 되어 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시범 사업 예산과 동일하며, 2004년도에 선정된 8개 시·도가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로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 선정된 시·도를 계속 지원하고 사업 정착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2) 사업 개요

경기도는 2004년에 이어 문화관광부 2억 예산과 자체 예산 2억을 확보하여 「2005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기획, 집행하였다. 2005년에는 5개 문화존 지역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문화존에 대하여 2006년 예산의 탄력지원 및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며, 2006년도는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 추진 중이다.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2005년 사업 개요를 보면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2005년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 계획

주5일제 수업 대비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적·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주말(토·일)을 상설 놀이 공간으로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3월- 2006년 2월

※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중 1회 이상 추진 원칙

○ 장소 : 권역별 거점지역 실내·외 청소년 시설이나 근린공원 활용

○ 대상 : 초·중·고교생 청소년

○ 수행단체 : 각 Zone 별 프로그램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운영방법 : 2005년 문화존 운영계획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역을 권역화하여 문화적 혜택을 제공

○ 문화존 구성(5개존)

지역형	Zone 별	대상 시군	청소년수 (천명)	프로그램
도시형	중서부 문화존	부천, 광명, 과천, 의왕, 안양, 군포	553	도시형 문화프로그램 지향 ○ 복합문화형 ○ 영상문화존 ○ 청소년 문화거리존
	남서부 문화존	성남, 수원, 안산, 시흥	717	도시형 문화 프로그램 지향 ○ 과학 문화존 ○ 예술 체험존 ○ 청소년 문화거리존

(계속)

○ 문화존 구성(5개존)

(계속)

지역형	Zone 별	대상 시군	청소년수 (천명)	프로그램
도농 복합형	북서부 문화존	김포, 파주, 양주, 고양, 의정부	408	도농 복합형 문화프로그램 지향 ○ 통일안보문화존 ○ 생태체험문화존 ○ 레저 스포츠 존
	남 부 문화존	용인, 광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391	도농 복합형 문화프로그램 지향 ○ 역사 문화체험존 ○ 예술 체험존 ○ 영어 체험존
농촌형	북동부 문화존	연천, 가평, 양성, 여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하남	275	농촌형 문화프로그램 지향 ○ 자연생태체험존 ○ 농경문화존 ○ 사이버 체험존

□ 추진일정

- 세부계획수립 : 2005. 2월
- 사업시행 단체 선정 : 2005. 3월
- 문화존 사업 시행 : 05. 4월 - 05년. 12월
- 문화존 평가단 선정 및 평가 : 05. 3월중
- 추진상황 분기보고(매분기) : 05. 4월, 7월, 10월
- 사업진행 실태 점검(연1회) : 05. 6월중
- 중간 평가회 개최 : 05. 9월중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06. 1월

3) 사업 프로그램

2005년도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 기간은 2005. 3 - 12월이며, 2005년 4월 선정 기준에 따라 청소년 문화존 사업 운영 기관이 선정되었다. 위탁단체 선정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 도의원,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5년도 청소년육성

공모사업 심의시 기구성한 심의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2005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평가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각 존별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시·군의 청소년 문화의 거리와 지역사회역의 역사·문화 공간을 이용한 실외 프로그램과 수련관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체제로 운영하고,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된 단체 중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존별로 1개소씩 선정하였다. 2005년도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역과 추진 기관은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2005년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장 소		일 정	시간	프 로 그 램 명
안양	청소년수련관	매주토요일	15:00	○ 풋살 리그전 ○ 단체 줄넘기
	안양중앙공원	매주토요일	15:00	○ 인라인 스쿨 ○ 농구 리그전
성남	분당구청앞 문화거리	매주토요일	10:00	○ 폐품활용 로봇제작 체험 ○ 키트, 모형자동차, 모형헬기, 모바일체험
		격주토요일	10:00	○ 영상체험(음향, 조명, 사진, 연출 등)
		매주토요일	10:00	○ 직업체험(진로관련 프로그램)
	수내동중앙공원	매월마지막토요일	18:00	○ 공연 및 영화
의정부	의정부시 청소년광장	매주일요일	15:00	○ 공연관람(힙합댄스, 락밴드, 마술쇼, 패션쇼, 통기타, 연극 등)
		매월마지막일요일	14:00	○ 벼룩시장(물물교환 등)
		매주일요일	14:00	○ 배움존(인라인스케이트, 농구 등)
			15:00	○ 스포츠(농구, 단체줄넘기)
			14:00	○ 보드게임과 즉석사진 등 이벤트
		매월마지막일요일	14:00	○ 먹거리 문화체험
이천	이천 중앙로 문화의 거리	매주일요일	14:00	○ 청소년거리문화 공연
		매주토요일	14:00	○ 문화배움(방송기획, 영상, 기자과정)
		매주일요일	14:00	○ 도자문화 제작체험
연천	청소년수련관	매주토요일	15:00	○ 실내스포츠(수영, 스킨스쿠버) ○ 실외스포츠(농구, 족구 등)
	야외공연장	매주토요일	16:00	○ 공연(댄스, 락밴드, 마술쇼, 음악 등)
	전곡문화체험장	9.24	1일	○ 문화기행 체험
	관내 군부대	8. 6	1박2일	○ 군부대 병영체험
	수련관 소극장	매주토요일	13:00	○ 영화관람 및 제작

4) 사업 평가

2004년 청소년 문화존 사업 평가는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하여 문화존 사업 자체 평가로 이루어졌다. 2004년 추진 실적 보고에 따르면 5개존에 11개 단체가 참여하여 45종 프로그램이 170회 진행되었으며, 참여인원은 모두 33,874명이다. 그러나 성별 참여 비율, 초·중·고 참여 비율이나 프로그램 별 참여인원의 차이 등은 결과 보고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2005년 9월 ‘청소년 문화존 평가 워크숍’ 이 1회 개최된 바 있으며, 중간 사업 추진 현황 보고는 세부추진계획(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척율(%)로 구성되었다. 사업 추진 실적에는 문화존 별 참여인원이 제시되어 있다. 중간 평가에 따르면 5개존 청소년 문화존 사업 25개 프로그램에 23,974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5개존 중간 평가 보고서에 성별, 학령별, 프로그램 등에 따른 참여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4.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수혜자 조사

가. 조사 개요

경기도 5개 지역, 의정부, 성남, 안양, 이천, 연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혜자 조사를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05년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문화존 프로그램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는 주로 주말에 하였다. 5개 지역에 할당된 설문지는 각각 80부씩이었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모두 322부였다. 이 중 분석이 어려운 8부를 제외한 나머지 314 사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거쳐 SPSS ver. 13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은 <표 4-11>과 같다.

나.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가운데 여학생 32.7%, 남학생 64.3%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

응답자의 성별 특성을 보면 다음 <표 4-12>와 같다. 여학생 평균연령은 16.8세로 17-19세가 56.3%이며, 남학생 평균연령은 16.4세로 여학생보다 약간 낮고 17-19세가 46.2%, 14-16세가 42.2%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고등학생 비율이 높지만 남학생은 중학생 비율도 높은 편이다. 참여지역은 여학생은 의정부와 이천 지역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안양 지역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 있는데, 의정부와 이천은 여학생 참여가 많은 공연, 문화 프로그램이 많고, 안양은 남학생 참여가 많은 체육 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표 4-11> 조사 내용

	조사내용
I. 여가 및 동아리 활동	· 여가 활동(2문항) · 동아리 활동(3문항) · 수련시설 이용경험(2문항)
II. 문화존 프로그램 참여 내용 및 방법	· 프로그램 참여 방법(4문항) · 프로그램 참여 내용(1문항) · 프로그램 참여 장소 및 시간(2문항)
III. 문화존 프로그램 참여 평가	· 문화존 프로그램 참여시 좋은 점(문항) ·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1문항) · 프로그램 만족도(5문항) · 프로그램 개선사항(1문항)
IV. 성별과 문화(체육, 과학) 활동	· 진행자 성별관련 문항(3문항) · 여학생 체육 및 과학 활동 참여 문항(3문항)
V. 성 역할 태도	· 성역할 의식 및 태도(15문항)
VI.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학교, 학교형태, 양성평등교육경험

〈표 4-12〉 응답자의 성별 특성

(단위: 명, %)

구분		여학생		남학생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연령	13세 미만	3	2.7	18	9.0
	14-16세	42	37.5	84	42.2
	17-19세	63	56.3	92	46.2
	20세 이상	4	3.6	5	2.5
	계	112	100.0	199	100.0
학교	초등학교	3	2.7	15	7.5
	중학교	42	37.5	84	42.0
	고등학교	62	55.4	92	46.0
	기타	5	4.5	9	4.5
	계	112	100.0	200	100.0
문화존 참여 지역	의정부	37	33.0	40	19.8
	성 남	15	13.4	30	14.9
	안 양	4	3.6	69	34.2
	이 천	40	35.7	47	23.3
	연 천	16	14.3	16	7.9
	계	112	100.0	202	100.0
양성평등 교육 경험	있음	63	56.3	108	53.7
	없음	49	43.8	93	46.3
	계	112	100.0	201	100.0

다. 조사 결과 분석

1) 여가 및 동아리 활동

청소년의 여가 및 동아리 활동 내용은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가 및 동아리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여가 시간 활동은 2개까지 다중 응답으로 조사하였는데, 여학생은 TV/라디오 시청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3.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친구 만나기 37.5%, 컴퓨터 36.6%, 동아리 활동 19.6%였으며, 남학생은 컴퓨터 47.2%, TV/라디오 시청 등 43.2%, 운동 또는 여행 4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 또는 여행은 여학생의 경우 8.9%만이 응답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4-13>과 같다.

<표 4-13>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복수 응답)

(단위: %, 명)

주로하는 활동	여학생	남학생	전체
TV/라디오 시청 등	63.4	43.2	50.5
컴퓨터	36.6	47.2	43.4
친구만나기	37.5	23.6	28.6
동아리 활동	19.6	6.0	10.9
문화활동	13.4	16.1	15.1
운동 또는 여행	8.9	40.0	28.6
종교 및 사회봉사	8.0	6.5	7.1
기 타	12.5	16.1	14.8
사례수	112	199	311

주: TV / 라디오 시청 : 텔레비전/비디오 시청, 라디오/음악듣기, 만화보기, 신문/잡지 읽기

문화 활동 :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영화/연극 관람

운동 또는 여행 : 운동하기, 운동 경기 관람, 여행, 산책, 등산

종교 및 사회봉사 :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기타 : 특별한 활동 없이 쉼, 기타 취미활동, 기타

휴일(토/일, 공휴일)에 여가 시간을 주로 누구와 어디서 보내느냐는 질문에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친구와 밖에서 보내다’가 각각 39.6%, 50.2%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친구와 밖에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여학생은 ‘가족과 집에서 보내다’가 20.7%, 남학생은 ‘혼자 집에서 보내다’가 14.9%, ‘가족과 집에서 보내다’가 14.4% 순으로 나타났다. 밖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비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다음 <표 4-15>를 보면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문화예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9%로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은 스포츠라고 응답한 경우가 52.1%로 가장 많았다. 여학생은 문화 예술, 사회봉사 관련 동아리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동아리 활동 내용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휴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과 장소

(단위: %, 명)

여가시간 보내기	여학생	남학생	전체
혼자 집에서	11.7	14.9	13.8
혼자 밖에서	0.9	3.5	2.6
가족과 집에서	20.7	14.4	16.7
가족과 밖에서	9.0	3.5	5.4
친구와 집에서	9.9	8.0	8.7
친구와 밖에서	39.6	50.2	46.4
기 타	8.1	5.5	5.4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11	201	312

다음 <표 4-16>을 보면 수련 시설 이용 내용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은 문화관련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7.2%로 가장 높았으며, 체육관련 53.7%, 학습 관련 40.3% 순이었다. 남학생은 체육관련 시설이 116.0%였으며, 과학 기술관련 36.9%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체육관련 시설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복수 응답). 체육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은 댄스 연습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남학생은 농구장이나 실내 축구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 4-15> 동아리 활동 내용

(단위: %, 명)

활동내용	여학생	남학생	전체
문화예술	51.9	28.1	36.7
사회봉사	27.8	9.4	16.0
스포츠	3.7	52.1	34.7
학습관련	5.6	5.2	5.3
종교 및 기타	11.1	5.2	7.3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54	96	150

<표 4-16> 수련시설 이용내용(복수 응답)

(단위: %, 명)

이용내용	여학생	남학생	전체
문화관련 시설	67.2	26.2	38.3
과학기술관련	37.3	36.9	35.4
학습관련	40.3	16.9	23.8
체육관련	53.7	116.9	91.3
상담정보 및 기타	13.4	11.5	11.7
사례수	73	133	206

주: 3개까지 복수 응답

2) 문화존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내용

문화존 프로그램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표 4-17>은 성별에 따라 문화존 프로그램의 참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학생은 문화·공연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61.3%로 가장 많고, 스포츠 활동 36.6%, 공예 활동 31.2%, 그리고 과학 활동과 상담 및 기타가 7.5%로 가장 적었다. 반면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이 82.6%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공연 활동 37.6%, 공예활동 18.0%, 과학 활동 10.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학생은 주로 문화·공연활동 프로그램에,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은 풋살, 축구, 족구, 농구, 배구, 인라인 스케이트, 단체 줄넘기, 수영, 스킨스쿠버가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학생 34명 가운데 인라인 스케이트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147명 가운데 농구 52명, 풋살과 축구가 각각 43명, 그리고 수영 18명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안에서도 여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남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존 프로그램 참여 장소를 질문한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수련시설’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9.6%, 71.9%로 가장

<표 4-17> 프로그램 참여 내용(복수 응답)

(단위: %, 명)

참여내용	여학생	남학생	전체
스포츠 활동	36.6	82.6	66.8
과학 활동	7.5	10.7	9.6
문화공연 활동	61.3	37.6	45.8
공예 활동	31.2	18.0	22.5
상담 및 기타	7.5	9.0	8.5
사례수	93	178	271

주: 스포츠 활동 : 풋살, 축구, 족구, 배구, 인라인 스케이트, 단체 줄넘기, 수영, 스킨스쿠버, 기타
 과학 : 로봇제작, 기타
 문화·공연 : 무화기획기자단, 뮤지컬 배우기, 방송제작 연출, 댄스, 노래 및 연주, 수화, 기타
 공예 : 비즈공예, 풍선아트, 가족책 만들기, 문화지도 만들기, 도자기 제작
 기타 : 직업상담, 기타

높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높았다(〈표 4-18〉 참조). 그 다음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공원 거리’ 라고 각각 30.3%, 17.9%가 응답하였는데, 공원/거리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은 주로 공원/거리에서 진행되며, 남학생들 참여가 많은 스포츠 활동은 주로 수련시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학생의 수련 시설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 프로그램 만족도

문화존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면 다음 〈표 4-19〉와 같다. 대체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내용, 시간, 장소, 강사 만족도 모두 3점 이상으로 문화존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들의 만족도가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8〉 프로그램 참여 장소

(단위: %, 명)

참여장소	여학생	남학생	전체
수련시설	59.6	71.9	67.5
실외 경기장	4.6	8.2	6.9
공원 거리	30.3	17.9	22.3
기타	5.5	2.0	3.3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09	196	305

〈표 4-19〉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점, 명)

만족도	여학생	남학생	전체
전반적인 만족도	3.55	3.48	3.50
내용 만족도	3.47	3.40	3.42
시간 만족도	3.33	3.23	3.27
장소 만족도	3.41	3.39	3.40
강사 만족도	3.50	3.46	3.47
사례수	111	199	310

주: 5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4) 문화존 프로그램의 젠더 이슈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중요한 젠더 이슈는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체육 및 과학 활동에서의 성별 차이는 전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이 갖고 있는 경쟁성, 위계성, 공격성, 활동성, 공개성 등의 특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역할 특성에 부합되는 반면, 여성의 역할 특성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스포츠는 남성 지배영역으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사회적 삶이 다르게 조직되는 성별 체계 속에서 스포츠 활동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사회화한다(김나연, 2003).

따라서 청소년 문화 사업은 성별 차이와 사회적 불평등을 인지하고,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집단의 참여가 낮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학생들이 어느 정도 체육 및 과학 활동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여학생은 62.4%가 약간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은 약간 참여한다고 47.9%,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37.1%라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과학 및 체육활동 참여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만큼 여학생들이 체육 및 과학 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지 못한 결과라 유추할 수 있다. 체육 활동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에 매우 중요한 활동 영역이며, 과학 활동은 전공과 직업 선택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육 및 과학 활동에서 젠더 이슈는 청소년 문화 사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과학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5.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가. 입안 및 기획 단계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기획 단계에 성 인지적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존 사업 계획서와 공무원 조사 결과, 그리고 공무원 및 실무자 면접을 참조하였다. 2005년 문화관광부 청소년 문

화존 사업 계획서와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성별 차이를 고려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책 및 사업이 양성평등을 목표하거나 지향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입안 및 기획단계에서 성 인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별분리통계이다. 문화존 사업 계획서나 사업 배경에 성별분리통계를 수집·활용하거나 성별 차이를 예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 및 실무자 면접 과정에서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거나 참조한 적이 없다고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분리통계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할만한 성별분리통계가 별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성별분리통계는 많지 않다.

이처럼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추진되거나 기획되는 단계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공간 이용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는 문화존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아동이나 노인처럼 성 중립적인 범주로 간주되며, 성별보다는 연령이 더 중요한 차이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이나 청년실업 등 다른 성별영향평가 연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획 집행단계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청소년 범주를 성 중립적인 범주가 아닌,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와 이해를 갖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영역별, 지역별 청소년 성별분리통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정책의 양성평등한 수혜를 위해 사회적 불평등과 자원 재분배 과정에 민감해져야 한다.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청소년 관련법과 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청소년이라는 세대 특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과 관련한 목표나 새로운 청소년 상에 대한 비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의 문화 공간 부족에 대한 정책

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안에서 젠더 이슈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청소년 문화 사업들이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새로운 청소년 상을 만들어나가려면 반드시 청소년 관련법과 계획에 그러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 문화 사업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중요한 사업 방향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 참여

기획 및 입안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 및 공무원 직급별 성별 비율을 통해 양성평등한 정책 결정 참여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위원회는 청소년 위원회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차세대 위원회가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청소년위원회는 행정부 지사가 위원장이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이 3명이다. 당연직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위촉직 가운데 여성 1명이 부위원장이다. 전체 위원 구성은 당연직을 포함한 전체 15명 중 5명이 여성이며, 여성비율은 33.3%(위촉직 기준 41.7%)이다.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는 2000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4년에는 31명 가운데 남 15, 여 16명이었다. 당연직은 없으며 모두 위촉직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 비율은 51.6%였다. 2005년에는 전체 60명 가운데 34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은 56.7%이다. 청소년 위원회와 차세대 위원회 여성비율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5년 연도별 목표율 36%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문화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로는 문화존 운영위원과 청소년 수련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다. 문화존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역에서 교사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문화존 운영위원회 구성은 권고사항이다. 5개 문화존 중 3개 지역에 문화존 운영위원이 있는데,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40.0%이며 가장 낮은 경우는 20.0%이다. 특히 A 지역은 운영 위원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 지역의 여학생 참여도도 가장 낮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5개 기관 모두에서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아 청소년 집단에서는

여학생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위원회에서는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부서의 공무원 성비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여성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여성은 대체로 하위직급 비율이 더 높다. 본청의 경우, 9명 가운데 여성은 2명이며 모두 7급이다.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은 4-5급 비율이 45.2%이고 여성은 7.7%에 불과하여 여성은 주로 하위직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개 문화존 사업 담당자의 성별을 보면, 5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담당자가 남성이고 2명이 여성이다. 그러나 2개 기관의 경우, 상급자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대체로 의사 결정 직급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0〉 청소년 관련 위원회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원	여성 위원	여성위원 비율	비고
경기도	청소년위원회		15	5	33.3	당연직 3명 포함
	제6기 차세대위원회		60	34	56.7	제5기 31명 중 여성16명(51.6%)
주관기관	문화존 운영위원	A	10	2	20.0	
		B	10	4	40.0	
		C	—	—	—	
		D	21	5	23.8	
		E	—	—	—	
	청소년 운영 위원회	A	14	10	71.4	
		B	31	13	41.9	
		C	16	10	62.5	
		D	19	16	84.2	
		E	13	8	61.5	

2005. 10월 현재 기준.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정책 및 사업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입안 및 기획 단계에서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정책 및 사업의 성별 영향에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성별 영향 분석을 위해서 문화존 사업의 사업 선정 기준과 사업 심사 항목, 사업 계획서 양식과 운영 기관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 내용을 참조하였다. 청소년 문화존 추진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통해 성별을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예측하고 반영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21〉 2005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선정기준(경기도)

- 문화거점과 운영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프로그램도 가능
- 미래 지향적이고 청소년육성을 목표로 문화 Zone 사업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학교 특별 활동 및 수련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동일한 프로그램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각 시군에서는 해당되는 존(Zone)의 사업만을 지원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해당되는 당해 존에 소속한 시군의 추천이 없을 경우는 도에서 직접 선정함
- 1개 존에 대한 위탁 사업비는 1단체 당 76,000천원으로 이내 프로그램임

자료: 경기도 내부 자료.

운영 계획에서 사업 및 프로그램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는지 여부는 사업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보다는 청소년들의 호응도 및 인기도, 실내외 프로그램의 균형, 교통 등 접근의 용이성, 차별적인 프로그램 유지 및 홍보가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가는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2004년도 사업 평가와 청소년들의 호응도, 인기도 조사 결과를 감안하는 항목이 있으나 여기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선정 심사 항목은 모두 4가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 중요도에 따라 5-10점이 배분되었다. 사업계획 부분에서 기획성이 중심이 되어 심사 되었으며, 장소 및 네트워크 여부, 그리고 단체 운영 부문과 추진 경험 여부 및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되었다. 이 가운데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지 여부는 심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에 대한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 자체를 위한 것이지 여학생 또는 남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표 4-22〉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심사 항목

심 사 항 목		배점
사업계획부분 (기획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목적과 부합여부)	10
	· 프로그램(프로포잘)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의 추진달성 가능성 (*주별, 월별 추진계획서 심사)	10
	· 신청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10
	· 홍보 및 안전대책 마련여부	10
장소 및 네트워크 여부 (장소의 적절성)	· 문화존 주 활동지역 조사 내용의 적절성	10
	· 지역사회자원 연계노력성 (학교, 가족, 자원봉사자, 각 문화존에 시·군 참여유도 등)	10
단체 운영 부문 (수행능력)	· 단체의 조직 및 전문인력배치면에서의 사업수행 능력성 (진행, 관리능력)	10
	· 자부담 능력 (시군비나 단체의 자부담 비율)	10
	· 단체의 대외 공신력	10
추진 경험 여부 및 평가 결과 (경험성)	· 전년도 문화존 사업 추진 여부 (5 추진, 1 미추진)	5
	· 문화존 사업 평가 결과반영 (5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5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사업선정 기준과 심사 항목에 맞추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공모하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서 양식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계획서 양식과 단체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 계획 시 성별 영향을 고려할 만한 사항이나 조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문화존 지원사업 계획서에는 사업 추진 목적과 방법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의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 설정 배경을 서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추진계획에서 참가 대상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간 추진계획에서는 단위 프로그램 진행 횟수와 인원만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거나 수혜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애초 계획 단계에서 성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여학생과 남학생의 동등한 참여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대 효과 부분에서도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별에 따라 어떤 효과가 다르게 발생할 것인지는 예측하고 있지 않다.

사업 선정 결과 선정된 5개 문화존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보다 분명해진다. 5개 사업 계획서 가운데 성별을 고려하거나 명시한 부분은 A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 중 일부분으로 사업 추진 방법 중 “실물적 서비스 제공” - 남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종목 선정이라고 명시한 것 뿐이다. A 기관은 도시형 중부문화존 선정 기관으로 문화존 사업 프로그램은 주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A 기관은 2004년에도 문화존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운영위원 중 여성위원이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예: 농구, 풋살)이 남학생 위주로 편중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2005년에는 여학생들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단체 줄넘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학급 단위로 참여를 유도하고 시상품 선정에도 여학생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고려하였다고 한다. 또 참가자 이벤트를 마련하여 페널티킥 차기를 마련하고, 그 중 여학생을 위한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실무자 면접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사업 담당자는 여학생이 좋아하는 영화 프로그램

램과 남학생이 좋아하는 영화 프로그램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문화존 사업 수행 기관이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심사 단계에서 그러한 사항을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와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프로그램 진행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나 계획서 양식 등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집행 단계

1)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사업 집행 단계에서 정책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 수혜의 성별 편차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운영 기관에서 작성한 사업 운영 계획서 예산 항목은 홍보나 도구 구입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성 특정적 예산이나 양성평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 형평적 예산은 구분하기 어렵다.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성 인지 예산을 책정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80.0%가 없다고 응답하여 성 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경기도는 청소년 참여를 위한 사전 홍보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역방송과 일간지, 경기넷(인터넷), 시설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경기도 청소년문화존 홈페이지를 활용 및 운영하고 있다.¹⁷⁾ 청소년 참여 대상자는 평일 특별활동시간 및 토요일 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문화 Zon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교육청을 통해 협조 요청을

17)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홈페이지는 <http://www.kgyouth.net>이며, 안양 청소년 문화존 홈페이지는 <http://spark.ayc.or.kr>이다. 경기도 문화존 사업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문화존 5개 지역이 지도로 표기되어 있고,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그리고 5개 존별 월별 진행상황이 있다. 각 존을 클릭하면 5개 존별로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일정, 장소 등이 공지되어 있고, 문화존 프로그램 진행 사진도 담겨 있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였으며, 휴일은 개별적 또는 동아리별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업 홍보는 단순히 사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및 사업의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E 지역 문화존 사업 담당자는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홍보가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E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진행되는 기관이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불편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방과 후나 여가시간에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돕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딸에게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기대하는 경우가 더 많고 아들에게는 대를 이을 것이므로 공부나 다른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 부모는 자녀가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사업 담당자는 마을 유지나 어른들을 만나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비율은 적지만 청소년 문화 공간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갖는 의미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크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존 프로그램에 여학생보다 남학생 참여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학생들의 참여는 매우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 특히 여학생의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이해가 필요하며,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홍보가 필요하다.

B 지역 문화존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재능 있는 여학생이 과학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으나 여학생 부모가 딸이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한다. 부모나 기성세대의 성별고정관념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등하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 인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여학생의 문화 및 과학 활동 참여의 필요성 등 여학생 부모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평가 단계

1)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수혜도의 형평성은 여러 가지 지표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의 문화 여가 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수혜자 성비와 프로그램 참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⁸⁾

2004년도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추진실적 내부 자료를 보면, 사업 수행기관은 도내 11개 수련관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였으며, 진행된 프로그램 수는 모두 45개다. 그리고 참여 학생 수는 33,874명이며, 성별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 인원 중 성별 통계를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성별로 구분하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성별 분리 결과 보고는 성평등한 수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이거나 결과 보고서에서 성별은 별로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문화존 사업의 결과 보고 시 반드시 성별 분리된 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기관별로 문화존 사업 중간보고와 청소년문화존 평가 워크숍이 1회 진행되었다. 중간보고는 사업 추진 현황과 참가자 인원, 그리고 각 존에 대한 기관별 자체 평가가 포함되었다. 2004년 사업 평가와 2005년 중간 평가 과정에서 먼저 성별로 분리된 통계나 결과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성별에 미친 영향은 파악하기 어렵다. 평가 사항에서도 성별에 따른 동등한 수혜 정도는 평가 지표로 고려되지 않았다.

스포츠 프로그램 중심으로 문화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 지역의 경우, 3대 3 농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남학생이었으며 풋살은 단 한 팀만이 여학생 팀이었다. 여학생은 주로 문화 공연, 공예 프로그램 참여가 많고 남학생은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가 많기 때문에 문화존 프로그램이 스포츠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여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결국 성별에 따라 수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또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과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18) 문화존 사업은 2004년도에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사업에 대한 일차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먼저 문화관광광부에서 제시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특성을 보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5개존으로 나눠 11개 단체에서 45종의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나 의정부 예술의 전달 야외 특설 무대에서 마련된 청소년 문화존 페스티벌 축제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축제 형식의 일회성 행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 의뢰 등 사업 추진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종합적 홍보 및 종합 마스터 플랜 부족과 시군별 사업비 안배에 치중한 느낌이라고 되어 있다. 다른 7개 지역에 대한 특성도 이와 비슷하며, 여기에서 사업 진행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주 일반 여학생과 남학생의 요구나 편중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4-23〉 2004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추진 실적 보고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합계 (5개존)		11개 단체 45종 프로그램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170회, 33,874명
복합문화 체험운영	5월-9월(4회)	○ 테크노 스포츠 활동(4종)	5-9월(4회)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4회, 4,200명
	5-12월	○ 종합문화마당(9종)	5-12월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32회, 966명
	5월-11월	○ 종합문화마당 (5종)	5-11월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19회, 1,632명
심신수련 체험운영	5-9월(8회)	○ 자연체험 및 심신수련마당 (2종)	5-9월 (8회)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8회, 844명
	5-11월(3회)	○ 자연체험(캠프 체험1종)	5-11월 (3회)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3회, 330명
안보·생태 체험운영	7월(연속 4일간)	○ 청소년문화존 페스티벌 축 제(1종)	7월 (연속4일간)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4회, 4,490명
	5-10월	○ 역사체험 및 안보생태마당 (2종)	5-10월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8회, 1,467명
민속(과학)· 관광체험 운영	5-12월	○ 과학체험 마당(2종)	5-12월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50회, 2,400명
	4-11월	○ 전통문화 체험마당(5종)	4-11월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25회, 9,531명
역사문화 체험운영	6-11월	○ 청소년종합문화 마당(8종)	6-11월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9회, 6,500명
	6월-' 05. 1월	○ 국제교류 마당(6종)	6월-05.1월	○ 개최횟수 및 참가인원 : 8회, 1,514명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이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양적 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평가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학생 참여가 저조한 스포츠 및 과학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성별고정관념에 따라 여학생은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낮고, 남학생은 문화 활동 참여가 낮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청소년에게 양성평등한 사회상을 제공하고,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혜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수혜가 낮은 집단에 대한 고려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당해 사업에 환류되기 위해서 정책 결과 보고서에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4년도 평가 보고서와 2005년도 중간 평가 결과 보고를 보면,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 개선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5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기관별로 문화존 사업 중간보고와 청소년문화존 평가 워크숍이 1회 진행되었다. 중간보고는 사업 추진 현황과 참가자 인원, 그리고 각 존에 대한 기관별 자체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 수혜에 있어서 양성평등한 정도는 대부분의 사업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로 고려되지 않았다.

향후 결과 보고서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별분리통계 결과 보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도 문화존 사업 운영 계획서에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과 방법을 명시하고, 사업 선정 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수혜성의 차이를 고려하고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4-24>와 같다.

<표 4-24>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청소년 문화 관련 각종 법, 계획 - 사업 계획서 - 성별분리 통계 수집 및 활용 ※ 공무원 조사 결과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 청소년 문화존 사업 계획에 성별 관련성을 파악하는 부분은 없음. - 공무원 조사 결과 56.3%가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 게 미칠 영향의 차이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응답.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청소년 문화 관련 법, 계획	- 청소년 문화 관련 법과 계획에서 양성평등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예는 없음.
3. 양성평등한 정책 결정과정 참여	- 청소년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공무원 조사 결과	- 청소년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은 위촉직 기준 (41.7%)으로 할 때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5년 목표율 36%를 상회하고 있으나 문화존 사업관련 운영 위원은 여성 비율이 30%미만인 곳이 더 많음. - 공무원 직급별로 여성은 하위직급비율이 높음.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문화존 사업 선정 기준 - 문화존 사업 심사 항목 - 문화존 사업 계획서	- 문화존 사업의 선정기준, 심사항목, 사업계획서 사업이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5. 성 인지적 예산	- 문화존 사업 예산 - 기관별 사업 예산 ※ 공무원 조사 결과	- 문화존 사업 예산과 기관별 운영사업 운영 예산에서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적 예산 항목은 없음. - 공무원 조사 결과 80.0%가 성 인지 예산을 책정한 적이 없다고 응답.

(계속)

〈표 4-24〉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 홍보 방법 ※ 수혜자 조사 결과	-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정보 접근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나타나지 않으나 실질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수혜자 조사 결과 정보접근의 차이가 나타남.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기관별 /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 수혜자 조사 결과	- 결과 보고서 참여인원의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 양성평등한 정책 수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수혜자 조사 결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이 참여 정도가 다르고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프로그램 - 사업 결과 보고	-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을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혜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9.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결과 보고에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내년 사업에 본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6. 요약 및 제언

청소년 정책은 사회적 성별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기존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회적 성별 불평등과 성별고정관념을 재생산함으로써 차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법이나 계획에 성 인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이 집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에도

성별 차이는 중요한 지표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수혜자 조사 결과에서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여가 문화활동 차이 뿐 아니라 문화존 사업 프로그램 참여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반드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영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사회문화적 성별 차이를 고려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여자 청소년을 위한 체육/과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문화 정책 및 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자원의 균등한 분배, 동등한 교육 훈련 기회 접근, 동등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학생의 체육 및 과학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낮는데, 체육과 과학은 전통적으로 남성적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여학생에 대한 체육 및 과학 활동 기대가 낮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체육 및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성별을 이유로 한쪽 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과학 프로그램도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 활동의 경우도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비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운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별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전략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을 위한 역할 모델 제공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수혜가 낮은 영역에서 적극적인 동기 부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여자 스포츠 선수를 문화존 사업 홍보대사로 선정하거나 홍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여자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모습을 담은 등,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

역 여학생들이 수영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유는 수영복 착용 때문이라고 한다. 여자 체육 선수들의 역할 모델을 통해 여학생이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감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혜가 낮은 집단을 위한 다양한 역할 모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부모를 위한 문화존 사업의 홍보

수혜의 차이가 나타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 참여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호주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한다. 여학생 부모가 자녀들이 체육 및 과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자 청소년들이 체육 및 과학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에게도 기존 사회의 성역할과 성별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소년들에게 대안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딸에게 더 많은 집안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들이 문화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욕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특히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여학생의 체육 및 과학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소년 문화 사업의 성 인지적 기반 강화

1) 문화존 운영위원 여성 비율 고려

문화존 사업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문화존 운영위원의 여성비율 또한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기본시행계획’의 연도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지 위원회 성비를 고려한다고 해서 성 인지적인 문화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젠더 이슈를 고려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영 위원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때 성별 차이와 요구를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청소년 문화존 사업 운영기관 실무자 성 인지 교육

실무자 면접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사 등 사업 담당자가 성 인지 교육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성 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 용어마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직자 또는 청소년 수련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성 인지 교육 기회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문화존 사업 담당자를 위한 성 인지 향상 워크숍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성별분리통계 활용

성별분리통계는 성별에 따른 요구와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 및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일선에서 성별분리통계 활용의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용 가능한 성별분리통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고, 특히 청소년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진 실적 보고서나 결과 보고서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여 향후 당해 정책 및 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의 성별영향평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의 경제생활
3.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제도의 성 인지성 분석
4.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혜자 조사
5.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6.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됴에 따라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의 노인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노인 관련 연구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노인정책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노인보건복지 분야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경우 이미 ‘경기도노인보건복지5개년계획’ (1999-2003)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인문제를 연구하거나 노인정책을 수립할 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노인이 특정 연령 범주로 묶여진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오해가 가능한 것은 아마도 노인이 각종 법령이나 규칙에 특정 연령으로 범주화되기 때문일 것이다.¹⁹⁾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그 내부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연령·계층·거주지역·건강상태 등이 이질성의 다양한 기준이다.

가장 알려진 성별 차이의 예는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보다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고, 따라서 같은 연령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층 내부에서도 고연령 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2004년 12월말 현재 한국의 85세 이상의 초고령층의 성비²⁰⁾는 33.3에 그치고 있다(통계청, 2005). 또한 여성노인들의 유병율은 남성노인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노년기에 각종 질환과 장애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같은 연령의 노년기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은 더 길지만 ‘건강여명’²¹⁾은 오히려 더 짧다고 한다(박경숙, 2003)²²⁾.

이와 같은 차이와 더불어 노인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보다 중요한 성별차이는 경제적 수

19) 각종 법령에서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특정 연령범주로 구분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상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이면서 5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즉, 노인)로 규정한다.

20) 성비(sex ratio)란 인구의 성별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자 100명당 남자 수를 말한다.

21) 최근 기대수명에 대한 질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건강여명이다. 이는 총기대수명 중 얼마나 많은 기간동안 질환이나 그에 따른 장애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냐에 관한 개념이다.

22) 이러한 결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인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건강·보건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준의 차이이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전국단위 노인생활 실태조사에서도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익기 외, 1999; 정경희 외, 1998; 정경희 외, 2005).

물론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경제적 차이가 노년기에 나타난 우발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전 생애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김정석, 2003; 박기남, 2004; 남정림, 1992). 사회구조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²³⁾, 노년기 여성의 취약성은 전 생애주기상의 특징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 아니라 이전의 생애주기단계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심화된 결과이다(김정석, 2003). 그러므로 여성노인이야말로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이중 위험(double jeopardy)에 빠져있는 집단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통해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차이를 밝히고, 성 인지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성별과 무관한, 혹은 성 중립적으로 간주되는 정책 및 사업에 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해야 하는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의 경제생활

가. 노인인구 현황

1) 노인 인구의 변화 추이

최근 들어, 매스컴을 통해 가장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말 중 한 가지는 ‘고령화 사회’나 ‘고령사회’ 등 증가하는 노인 인구로 인해 생겨난 신조어일 것이다.²⁴⁾ 이제 우리 사회도 머지않아 일본이나 유럽사회와 같이 인구의 많은 부분이 노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

23) 여성의 취약성은 노동시장의 성 분리 구조나 경제생활·교육영역 등에서의 성차별, 가족관계 내에서의 위치, 사회복지 제도 수급상의 종속성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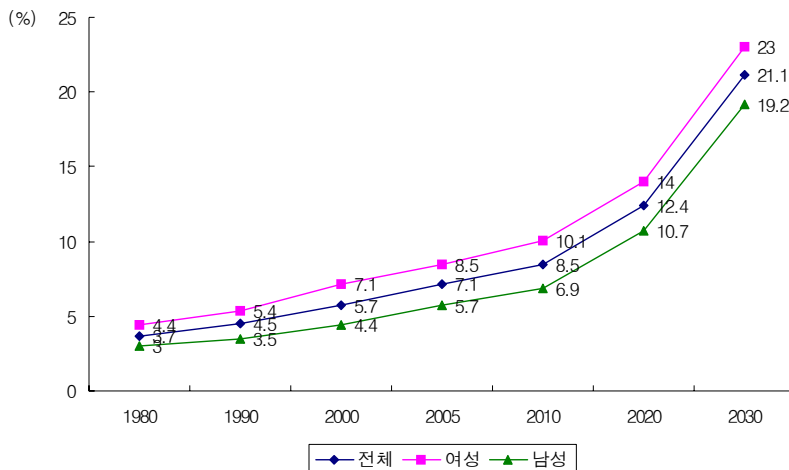
24) UN에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 20%미만인 사회이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 국가는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노인인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속속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전체 인구의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5.1%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7.2%를 초과함에 따라 이른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2) 경기도 지역의 노인 인구

노인인구의 증가 경향은 경기도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 지역도 지난 25년 동안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지역이다. 전남지역의 노인인구가 14.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충남지역으로 13.1%이다. 그 뒤로 경북 12.9%, 전북 12.5%, 강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경기도 지역 노인인구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그러나 경기도 지역의 노인인구가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기도 지역의 노인 인구는 198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980년 총인구의 3.7%에 불과하던 경기도 지역의 노인인구는 1990년 4.5%, 2000년 5.7%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7.1%에 도달하게 되어 경기도는 지금 이른바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왔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단위에서 나타났던 바와 마찬가지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 지역의 여성노인 비율은 1980년 4.4%로 시작하여, 1990년, 2000년, 2005년에 각각 5.4%, 7.1%, 8.5%였으며, 2010년, 2020년, 2030년에 각각 10.1%, 14.0%, 2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노인의 경우만 보면, 2000년에 이미 7%대를 넘어섰고, 앞으로 15년 후면 ‘고령사회’라 하는 14%대에 도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경기도 지역의 남성노인 비중은 여성노인과 비교하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노인인구 증가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노인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노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표 5-1〉 경기도 지역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단위: %)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노년부양비	5.8	6.5	8.1	9.9	11.5	16.8	31.7
노령화지수	11.3	16.6	23.7	33.1	46.8	88.7	172.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주 :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이상 인구)

나. 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1) 노인의 성별 경제생활 실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지만(김영혜, 2004; 박경숙, 2003),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를 빼놓고 노인의 삶의 질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인의 경제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개인소득수준을 알아보았다(〈표 5-2〉 참조). 노인의 평균개인소득수준(조사대상의 0.4%인 전혀 개인소득이 없는 노인은 제외하고 산출함)은 여성 29.9만원, 남성 78.9만원으로 나타나 성별 소득수준의 차이가 매우 컸다.

〈표 5-2〉 노인의 개인소득수준

(단위: %, 만원)

구분	2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
전체	33.3	32.0	12.1	6.8	3.6	12.3	48.6
여성	42.1	37.1	11.3	4.7	1.5	3.3	29.9
남성	19.3	23.9	13.3	10.0	6.9	26.6	78.9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표 5-3〉 노인의 월평균 용돈

(단위: %, 만원)

구분	10만원 미만	10-20 만원미만	20-30 만원미만	30-50 만원미만	50만원 이상	월평균 용돈
전체	44.8	31.5	10.9	8.6	4.7	13.3
여성	55.7	29.2	8.4	5.0	1.6	10.0
남성	27.4	35.1	14.9	14.2	8.4	18.6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월평균 용돈 수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월평균 용돈은 여성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과반수가 넘는 55.7%, 10-20만원 29.2%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평균 용돈은 10만원이었다. 남성은 10-20만원이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만원 미만(27.4%)으로 평균용돈은 18.6만원이었다. 용돈 수준이 50만원 이상인 노인 은 여성 1.6%, 남성 8.4%로 남성의 경우가 5배 이상 많았다.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노인들 경제상태의 성별차이를 짐작하게 한다. <표 5-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상태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여성의 17.0%, 남성의 23.6%로 여성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거나 매우 만족하지 못하는 편인 경우는 여성 51.8%, 남성 43.3%로 여성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4〉 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2002)

(단위: %)

구분	매우만족	만족 스러운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못하는편	매우 만족하지 못하는편
전체	1.5	18.1	31.8	34.0	14.6
여성	1.2	15.8	31.1	36.6	15.2
남성	1.9	21.7	33.0	29.8	13.5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 경기도 노인의 취업욕구

경기도의 전체취업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표 5-5> 참조). 최근 5년 동안 65세 이상 여성노인은 전체 취업자의 1%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0년 1.0%, 2001년 1.3%, 2002년 1.0%, 2003년 1.1%, 그리고 2004년 1.4%로, 지난 5년간 추이를 보면 등락을 거듭했지만 소폭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 취업자 비율도 1%후반대로 전체 취업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도 지역의 노인취업자비율은 전

국보다 낮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2000년 1.5%였고, 2001년 1.8%, 2002년과 2003년 1.8%, 2004년 2.0%로 남성노인의 취업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 지역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어떠한가? 경기도는 2003년 ‘노인 취업욕구 및 기업체 고용선호도’를 조사한 바 있다. 이는 도 내 노인들의 취업요구 및 기업체들의 노인고용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노인취업 정책 운용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74세의 노인 400명으로, 이들은 14개 시·군²⁵⁾에서 추출되었다.²⁶⁾ 조사내용은 직장생활경험, 정년관련, 재취업관련, 그리고 노인취업활성화의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관련한 질문을 했다.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재취업 장애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재취업을 통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인 89.5%가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는데,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후에도 재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5-5〉 전체취업자 중 65세 이상 노인취업자(경기도)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여성	취업자수	60	76	82	81.4	96.8
	비율	(1.0)	(1.3)	(1.0)	(1.1)	(1.4)
남성	취업자수	41	44	47	50.6	66.6
	비율	(1.5)	(1.8)	(1.8)	(1.8)	(2.0)
전체 취업자수		4,058	4,239	4,485	4,621.7	4,87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해당년도.

25)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안성, 양주, 여주를 말한다.

26) 유감스럽게도, 노인조사 결과를 성별로 구분한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한편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취업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일하고 싶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52.5%, ‘싫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나타났다.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능력이 충분하다’ 51.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노인대상 조사에서 주로 경제적인 면을 노후 취업의 첫 사유로 꼽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생활비 때문’ (19.5%)이나, ‘무로해서’ (19.5%) 라는 응답보다 ‘능력이 충분하다’ 고 일의 사유를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일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노후의 일을 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건강상태와 관련한 것들이었는데, ‘나이 들어 힘이 없어’ (74.2%), ‘건강이 나빠서’ (10.5%) 와 같은 답이 나왔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노인의 재취업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노력 여부를 알아본 결과, ‘노력 한다’ 는 28.6%에 그치고 있고 ‘포기했다’ 71.4%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재취업을 포기했다고 응답하였다. 재취업이 바람직하고 재취업 하고자 하는 기대도 크지만, 현실에서 재취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는 다음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기간을 물어본 결과 ‘2년 미만’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1.6%였고, ‘5년 이상’ 인 경우도 18.3%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기대와는 달리 노인의 재취업은 왜 쉽지 않은 것일까? 노인들의 재취업이 어려웠던 이유로는 ‘노인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라고 대다수인 83.3%의 노인이 응답하였다. 노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대다수의 노인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재취업을 한다면 희망분야는 ‘단순노무’ 가 7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생산기능직 12.3%, 일반사무 7.8%였다. 그리고 재취업 희망고용형태는 정규직 36.2%, 임시계약직 34.4%, 일용직 17.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희망하는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가장 많았고 평균 6시간 50분이었다. 또한 희망 월급수준은 61-80만원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1-60만원(23.5%)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노인취업활성화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노인들에게 질문했다. 먼저, 정부의 각종 노인취업 지원시책이 노인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

과 ‘도움이 된다’ 는 응답이 전체의 61.8%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의 노인은 노인취업 지원 시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각종 시책이 ‘도움이 안 된다’ 는 응답은 38.2%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분야 취업확대’ 를 가장 많은 노인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47.0%). 아울러 ‘재취업 직업교육’ 과 ‘정년연장’ (각각 15.3%)대한 바람도 있었다. 경기도 지역 노인들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내용면에서는 공공분야의 취업확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3. 노인 일자리 관련법과 제도의 성 인지성 분석

가. 노인 일자리 관련법과 계획

1)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이 법은 노인일자리 사업 뿐 아니라 노인복지정책 전반을 담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제 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 「노인복지법」 23조는 성별영향에 대해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2)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들어서서 ‘제1차 사회보장5개년계획’ (1999-2003)에 이어 ‘참여복지5개년계획’ 을 제시하였다. ‘참여복지5개년계획’ 의 노인복지서비스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이 계획이 시행되는 시기는 고령화 사회의 특징이 점차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노인보건 복지정책 정책비전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을 확대·강화하며, 둘째,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한다.

이와 같은 비전과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분야로는 크게 ①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②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③ 사회참여의 확대를 제시한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정책분야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은 노인 일자리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경로 연금제도를 비롯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분야이다.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은 기존의 노후건강보장으로 명명되던 정책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제시한 것이다. 셋째 ‘사회참여의 확대’에서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을 사회의 인력으로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일 것이다.²⁷⁾

‘참여복지5개년계획’에서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취업알선센터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그 규모와 기능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노인인력운영센터의 건립 및 거점센터 16개소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초지역거점의 일자리사업을 전담케 하고 중앙 및 시도거점단위의 구심조직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노인인력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표 5-6〉 노인인력활성화 방안계획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인인력운영센터	본부센터	지역 센터 16개	—	—	—
일자리지원	2만개	8만개	10만개	10만개	—
시니어클럽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27) 이와 같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과 행정조직 등의 정비를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 기화단’에서 2004년에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부처간에 산재된 고령사회대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계획함은 이러한 정책추진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복지5개년계획’의 노인일자리 부분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비록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여성노인의 관점이나 욕구를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비전 제시 및 목표 설정 부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방향’에서 ‘노인여성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여성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한 셈이 된다.

3)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경기도는 장기발전계획인 ‘경기비전 2020: 비전과 전략’을 통해 21세기 경기도정의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제3장 ‘삶의 질 제고와 사회복지 구현’에 제시되고 있다. ‘노인복지 추진전략’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의료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노인의 생활안정 조성지원’ 및 ‘교육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성화’로 구성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있는 영역은 ‘교육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성화’로 이는 ‘노인교육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 및 노인문화를 정립’하고자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 중 ‘취업알선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의 활성화로 노인 일자리 제공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노인복지 추진전략 속에는 다른 노인복지 영역과 더불어 노인의 일자리 제공의 확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욕구와 상황을 반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명시는 찾을 수 없다. 경제적 영역에 있어 노년기의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의 정책추진에 있어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이 차지하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성 인지적 관점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4)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2004-2008)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은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인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여성부문과 연계하여, 장기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다. 9개 분야 23개 정책과제 중 하나가 ‘여성의 건강과 취약여성 복지 향상’이고 세부 정책과제에 ‘노인의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여성 친화적 서비스개발’이 있다.

‘노인의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여성 친화적 서비스개발’의 기본방향 중 한 가지는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첨부하도록 하여 여성노인에 대한 민감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취업직종개발 및 보급, 취업훈련 및 알선 프로그램 개발,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기본방향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성 인지성을 도입하고 성별 통계를 산출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여성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대비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각 노인복지서비스의 성 인지적 분석으로 여성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불평등이 인지될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각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실태분석 또는 자료 구축 시 여성노인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성별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표 5-7〉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과 여성 친화적 서비스 개발의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노인보건 복지연계체계 평가 및 확산		1회		1회	
여성친화적인 노인복지서비스 개발	1회	1회	1회	1회	1회
노인복지서비스의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과 분석	통계구축 1회	분석 1회	통계 및 분석 1회	통계 및 분석 1회	통계 및 분석 1회

이와 같이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에서는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보급, 취업 훈련, 알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의 성 인지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 인지성 제고에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경기비전 2006

경기도는 민선3기 경기도정의 청사진이자 역점사업의 실행계획인 ‘경기비전 2006’을 통해 10대 분야 63개 역점사업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 관련 사항은 ‘10.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책 전개’에 있는데, 63개 역점사업 중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노인 일자리 보급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5천개 발굴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비전 2006’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치매·와상노인 보호시설 확충’을 명시한다. 2006년까지 1개의 시·군·당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1개소 설립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말하는 정책목표가 노인 일자리에 관련한 것으로, ‘노인 사회참여 촉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취업활성화에 대해 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방향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성별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찾을 수 없다.

나. 경기도 노인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관련 주요사업(경기도, 2005년 노인복지사업 계획)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관련 사업 중 생계지원 사업에는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비(수당) 지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할린 영구귀국 노인 생계비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 동난방비 지원 등이 있고, 건강지원사업은 노인건강진단 실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 및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운영이 있으며, 그리고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및 경기 가정도우미 운영이 있으며, 주거생활 지원에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정비 및 확충,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재가 노인복지사업 실시, 재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종교시설 활용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노인 일시보호소 지정 운영사업이 있다. 그 밖의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어버이날 노인초청 위안행사 개최, 노인회 도연합회 사업지원 및 도 노인복지상담실 운영이 있다.

2) 경기도 노인정책의 추진체계

경기도청의 노인복지 업무는 보건복지국 소속 4 개과 중 하나인 노인복지과에서 이루어진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장 아래 노인정책담당, 노인시설담당 및 장묘문화담당이 있다. 경기도청 노인복지과는 총 15명의 직원 중 5명만이 여성이고 남성이 10명으로 구성되어 남성이 여성보다 2배나 많았다. 여성 공무원이 수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직급 분포는 비교적 고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공무원이 적게 분포된 상황은 노인시설담당과 장묘문화담당인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노인시설담당에는 여성이 1명에 불과했고, 장묘문화담당인 경우는 여성 직원이 한 명도 없다.

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와 추진체계

1) 노인일자리 사업 개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유지,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보장 제공 등 노인복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사업의 수행은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노인 적합

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분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²⁸⁾의 일종으로써, 일부 시장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립형 일자리가 포함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2004년 20,000개, 2005년 25,000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07년까지 30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2004년은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으로 계획되었고, 2005년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교육복지형은 교육형과 복지형으로 다시 세분되고, 자립지원형은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으로 나누어진다.

각 사업의 편성 비율은 전체 100% 중 2004년은 공공참여형 80%, 사회참여형 11%, 그리고 시장참여형 9%였고, 2005년은 공익형 65%, 교육형 15%, 복지형 5%, 인력파견형 10%, 그리고 시장형 5%로 정하고 있다. 2005년도 추진방향은 단순일자리(공익형) 비율을 축소하고 택배사업, 간병인 등 자립지원형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다.

〈표 5-8〉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2004년	2005년		일자리 예시
공공참여형	공익형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불법주차단속 등
사회참여형	교육복지형	교육형	숲생태 및 문화재 해설사 등
		복지형	독거노인, 장애인 보호 등
시장참여형	자립지원형	시장형	주유원, 지하철 택배, 세탁방, 간병인 등
		인력파견형	유기농, 실버용품점, 주례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05

28)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로, 예를 들면 교육·의료·사회복지·환경·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한편 2005년부터는 사업수행기관별로 주된 역할을 정립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형 일자리 중심, 시니어클럽은 자립지원형 일자리,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복지형 일자리 중심, 대한노인회는 단순 일자리 알선중심,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복지형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참여자 선발요령은 참여자 연령과 우선 선발기준, 그리고 제외대상자로 나뉘어진다. 먼저, 참여자의 연령은 공익형과 복지형은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60-64세도 참여 가능하다. 교육형은 6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2004년 참여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장형은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004년 참여자와 60-64세가 참여 가능하게 한다. 인력파견형은 6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연령을 만족시키더라도 우선선발기준이 있어 이에 따라 다시 선발여부가 판가름 난다. 즉, 우선선발기준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면 고령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고, 생계유지 필요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아울러 여성가장, 모부자가정, 실직가정, 손자녀 동거세대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별도기준 적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공공근로사업 등 타 부처의 사업 참여자이다.

〈표 5-9〉 사업유형별 예산 지원기준 (2005)

구분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국고 보조율
		인건비 (월)	참여 개월	교육 및 부대비용	계	
공익형		20만원이내	6개월이내	10만원이내	130만원이내	서울 : 30%
교육복지형	교육형	20만원이내	5개월이내	15만원이내	115만원이내	
	복지형	20만원이내	5개월이내	10만원이내	110만원이내	
자립지원형	시장형	20만원이내 (인건비 또는 사업비)	5개월이내	—	100만원이내	지방 : 50%
	인력파견형	—	—	10만원이내	10만원이내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05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무시간은 공익형과 복지형의 경우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하고, 월 12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형의 경우는 주당 평균 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간 총 20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한다. 시장형은 일자리의 특성상 사업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력파견형 또한 일자리의 특성상 파견 받은 업체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2)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예산지원 등 정책 전반을 관장하며,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정책개발, 사업진행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역할도 일부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운영 주체별 역할을 더 상세히 알아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지원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 및 조정을 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를 관리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과 조정을 한다.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취합과 조정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며,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홍보 추진,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박람회 개최 및 지원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전반에 관한 총괄과 조정을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 또한 그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과 수행기관 분기별 정산보고를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를 추진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지원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설치된 노인인력운영센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획 홍보하고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연계하고 조정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신규개발 및 보급하고,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심사 평가 등 기존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하며,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훈련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사업 수행 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게시판 등에 사업신청을 공고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은 노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한다. 시군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해 심사하여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결과를 근거로 시군구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취합,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시도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별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예산을 확정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혜자 조사

가. 조사 개요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082명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조사하기 위한 250명의 표본은 다단계 집락표집(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추출되었다. 구체적인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 복합형, 그리고 농촌형으로 분류한다.²⁹⁾ 2단계, 각 집락에서 각각 2개의 대표적인 시·군을 선정한다(단, 농촌형은 일자리 수 자체가 적게 배정되어, 1개 지역만을 추출하여 전수 조사하였다). 3단계, 이전 단계 집락에서 추출된 5개 시·군 중에서 대표적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각각 1개소³⁰⁾씩을 추출한다. 4단계,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5개 지역의 일자리사업 수행기

29) 도시형에는 부천, 광명, 과천, 의왕, 안양, 군포, 성남, 수원, 안산, 시흥이 속하고, 도농복합형에는 김포, 파주, 양주, 고양, 의정부, 용인, 광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이 있으며, 그리고 농촌형은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하남이 있다.

30) 사업수행기관 1개소에 목표치보다 적은 수의 사업수행노인이 있는 경우(예, 수원시)는 2개소를 선정하였다.

관을 대상으로 표집 수 250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50명의 노인이 표본 추출 되었고, 조사가 끝난 설문지를 검토하여 분석에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244개 케이스가 사용되었다.³¹⁾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는 2005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었고, 훈련된 조사원들에 의해 일대일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수거된 설문지는 코딩과 클리닝 작업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표 5-10〉 조사표 내용

	조사내용
일자리 사업 유형	성별 일자리사업 참여 유형
일자리사업 참여	성별 일자리사업 참여 경로
일에 대한 만족도	성별 일에 대한 만족도 일에 만족하는 이유 일에 불만족하는 이유
노인취업에 대한 의식	성별 노인이 취업하기 힘든 이유에 대한 견해
가사노동 수행	가사노동 참여 정도
성역할 의식	성역할 의식 및 태도

나.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표 5-11〉 참조). 총 응답자는 여성노인 126명과 남성노인은 118명으로 여성노인이 약간 많이 표집 되었다. 연령은 여성과 남성 모두 65-74세가 68.0%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이 18.0%, 64세 이하가 13.9% 였다. 노인 중에도 고연령을 우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칙으로 인해 64세 이하의 저연령층의 비율은 적은 편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64세 이하에서는 비중이 높았고, 65-74세와 75세 이상의 연령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노인들

31) 표본 추출된 노인들이 속한 사업수행기관은 수원 A노인복지회관과 B노인복지회관, 부천 시니어클럽, 파주시청, 고양 C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여주 D노인복지회관과 8개의 읍(면)사무소였다.

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34.7%) 수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고등학교(27.7%), 2년제 대학 이상(24.8%), 그리고 무학(12.8%)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노인들의 평균 수 학 년 수는 9.1년이였다.³²⁾

〈표 5-11〉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령	64세 이하	22.2	5.1	13.9
	65-74	62.7	73.7	68.0
	75세 이상	15.1	21.2	18.0
	계	100.0(126)	100.0(118)	100.0(244)
교육수준	무학	19.2	6.0	12.8
	초	38.4	30.8	34.7
	중고교	31.2	23.9	27.7
	2년제대학 이상	11.2	39.3	24.8
	계	100.0(125)	100.0(117)	100.0(242)
혼인상태	유배우	50.8	87.3	68.6
	무배우	49.2	12.7	31.4
	계	100.0(124)	100.0(118)	100.0(242)
과거 주된 직업	전문관리직	17.5	38.1	27.5
	사무직	4.2	11.5	7.7
	판매 서비스직	19.2	13.3	16.3
	생산직	7.5	17.7	12.4
	농어민	10.0	18.6	14.2
	전업주부	41.7	0.0	20.9
	무직	0.0	0.9	0.5
	계	100.0(120)	100.0(113)	100.0(233)
가구형태	단독가구	28.6	14.4	21.7
	부부가구	31.0	52.5	41.4
	2세대가구	17.5	23.7	20.5
	3세대이상가구	25.0	8.3	16.3
	계	100.0(126)	100.0(115)	100.0(240)
총가구소득	40만원미만	38.9	38.1	38.5
	40-80만원미만	12.7	22.0	17.2
	80만원이상	48.4	39.8	44.3
	계	100.0(126)	100.0(118)	100.0(244)

주: '3세대 이상가구'에는 조손가구도 포함된다.

32) 전국단위 확률표집에 의한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무학이 40.1%, 초등학교 35%, 중등학교 19.4%, 전문대이상 5.6%인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는 비교적 고학력의 노인들이 많이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일자리 유형 중 교육형 일자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수준 중에는 무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년제 대학 이상만 유일하게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 상태는 유배우는 68.6%, 사별이나 이혼 등 무배우자는 31.4%로 나타났다.³³⁾ 남성은 여성보다 유배우인 경우가 많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무배우 비율이 높았다. 현재의 가구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부부가구(41.4%), 단독가구(21.7%)등 1세대가구의 비중이 63.1%로 나타났고, 자녀동거가구인 2세대가구(20.5%)와 3세대 이상 가구(16.3%)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³⁴⁾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부부가구와 2세대가구 비율이 높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단독가구 비율이 높고 3세대이상가구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가구 총 수입은 40만원 미만인 38.5%, 40-80만원 미만은 17.2%, 80만원 이상이 44.3%로 8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수입은 84.8만원으로 나타나 전국 조사에서 나타난 총수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³⁵⁾ 이와 같은 결과는 한편으로는 조사대상 노인의 높은 교육수준에서도 설명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수입에 일자리 수입이 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성별로는 40만원 미만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40-80만원 사이는 남성이 많았고, 80만원 이상은 여성이 오히려 많게 나타났다. 평균 가구수입은 여성이 79만원, 남성이 90만8천원으로 남성이 11만8천원 더 높게 나타났다.

다. 조사결과

1)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응답자의 일자리 유형은 공익형이 가장 많았고(46.7%), 다음이 교육형(32.8%), 복지형(10.2%), 그리고 자립지원형(9.0%)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2〉 참조).

33) 전국단위 확률표집에 의한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유배우 54.8%, 무배우 45.2%인 점을 감안한다면, 본 표집에서는 유배우 비율은 더 높은 편이다. 이는 부부가구에 유리한 선발기준과 관련적일 것이라 추측된다.

34) 전국단위 확률표집에 의한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단독가구 20.6%, 노인부부가구 34.4%, 자녀동거 38.6%, 기타 6.4%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는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높게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선발기준과 관련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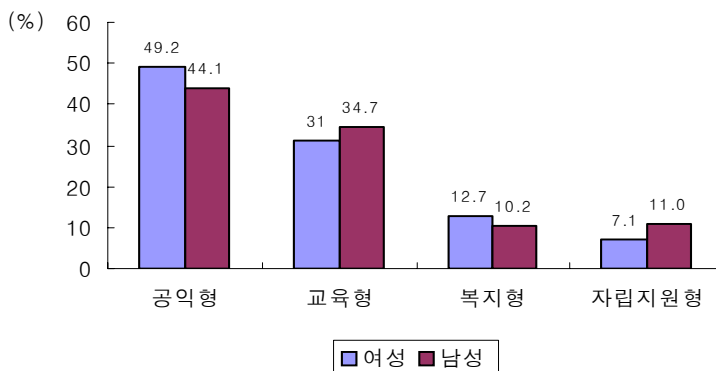
35)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평균수입이 84.8만원이었고, 40만원 미만이 65.3%, 40-80만원이 18.9%, 80만원 이상이 15.9%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평균수입이 29.9만원이었고, 40만원 미만 79.2%, 40-80만원 16.0%, 80만원 이상 4.8%였고, 남성은 평균수입이 78.3만원, 40만원 미만 43.2%, 40-80만원 23.3%, 그리고 80만원 이상이 33.5%였다.

이 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공익형과 복지형 일자리에 참가하는 비중이 높고,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교육형 및 자립지원형에 참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단순노동과 돌봄 노동 비중이 높고, 남성은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교육형과 직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형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친구이웃의 소개’ (38.8%)와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 소개’ (38.3%)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프랭카드·전단지·벽보를 통해’ (7.9%), ‘지역소식지’ (5.8%), 그리고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2.1%)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은 남성보다 ‘프랭카드·전단지·벽보를 통해’와 ‘지역소식지를 통해서’가 많았고, 남성은 여성보다 ‘가족친구이웃의 소개’, ‘신문과 텔레비전’, ‘동(면)사무소 소개’가 더 많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농촌지역에서는 모집 공고를 내기보다 이장들을 통해 추천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장들이 주로 남성노인들을 소개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인들이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싶어서(37.0%),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21.7%),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21.3%),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10.8%), 여가를 보내기 위해(3.8%), 집

〈그림 5-2〉 참가 일자리 유형



〈표 5-12〉 일자리 사업 참여 경로

(단위: %, 명)

참여경로	여성	남성	전체
가족친구이웃의 소개	37.6	40.0	38.8
신문 텔레비전을 통해	1.6	2.6	2.1
프랭카드 전단지 벽보를 통해	10.4	5.2	7.9
지역소식지를 통해	7.2	4.3	5.8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을 통해	38.4	38.3	38.3
동(면)사무소를 통해	4.0	5.2	4.6
기타	0.8	4.3	2.5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25	115	240

〈표 5-13〉 일하는 이유

(단위: %, 명)

일하는 이유	여성	남성	전체
돈을 벌고 싶어서	43.5	31.9	37.9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8.9	12.9	10.8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13.7	30.2	21.7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	25.8	16.4	21.3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0.8	2.6	1.7
여가(시간)를 보내기 위해	3.2	4.3	3.8
집에 있으면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	2.4	1.7	2.1
기타	1.6	0.0	0.8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24	116	240

에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2.1%),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1.7%) 순이다(〈표 5-13〉 참조). 여성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아울러 노인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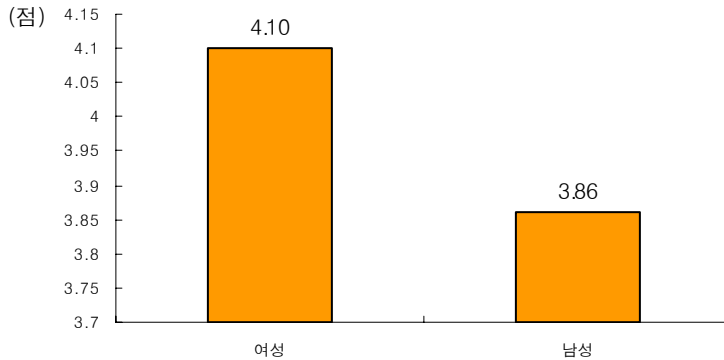
한편,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얻는 월수입은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일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략 20만원 미만이다. 그 수입의 지출처에 대한 내용이 〈표 5-14〉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은 생활비(42.7%)이다. 그 다음이 병원비·약값(28.2%), 기타(12.0%), 문화활동(10.8%), 손자녀를 위해(5.4%), 저축(0.8%)순이었다.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병원비나 약값’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손자녀를 위해’ 쓰는 경우도 남성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여성과 비교하면 ‘문화활동’에 쓰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들은 높은 유병율이 말해주듯 병원비나 약값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아울러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수입을 지출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에 남성 노인들은 여성노인과 비교하면 스스로를 위해 쓰는 비율이 높아 소비유형에도 성별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할까? 〈그림 5-3〉은 일 만족도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성 4.10점, 남성 3.86점으로 여성의 일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4〉 일자리 수입의 지출처

(단위: %, 명)

지출처	여성	남성	전체
생활비	42.9	42.6	42.7
병원비 약값	30.2	26.1	28.2
손자녀를 위해	6.3	4.3	5.4
문화활동	9.5	12.2	10.8
저축	0.8	0.9	0.8
기타	10.3	13.9	12.0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26	115	241

〈그림 5-3〉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 과 ‘대체로 만족’ 등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돈을 벌 수 있다’ (44.3%) ,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부심을 느낀다’ (24.4%) , ‘일을 통해 보람을 얻는다’ (18.2%) ,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10.2%) , 그리고 ‘친구를 사귄 수 있다’ (2.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돈을 벌 수 있다’ 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부심을 느낀다’ 가 많았고, 남성노인은 여성노인보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는다’ , 친구를 사귄 수 있다’ , 그리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하는 이유’ 와도 맥이 닿아 있는데,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아울러 사회활동에 대해서 높은 욕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표 5-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노인들은 모두 ‘수입이 적다’ 를 택했고, 남성노인은 ‘수입이 적다’ 외에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하면 돈벌이를 위해 일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일에 불만족 이유도 적은 수입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노인일 자리를 위해 가장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응답했다. 여성들은 젊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 여성들도 많은 수입보다 오히려 중단 없는 일자리를 바라고 있다(〈표 5-17〉 참조).

〈표 5-15〉 일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만족사유	여성	남성	전체
돈을 벌 수 있다	48.5	39.0	44.3
일을 통해 보람을 얻는다	15.2	22.1	18.2
친구를 사귄 수 있다	2.0	2.6	2.3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7.1	14.3	10.2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부심을 느낀다	26.3	22.1	24.4
시간보내기 좋다	1.0	0.0	0.6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99	77	176

〈표 5-16〉 일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불만족 사유	여성	남성	전체
수입이 적다	100.0	69.2	80.0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0.0	3.8	2.5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0.0	7.7	5.0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	0.0	7.7	5.0
기타	0.0	11.5	7.5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4	26	40

〈표 5-17〉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단위: %, 명)

정부가 해야 할 일	여성	남성	전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	24.4	32.5	28.3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 창출	18.7	19.7	19.2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	4.9	11.1	7.9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50.4	35.9	43.3
기 타	1.6	0.9	1.3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23	117	240

2) 노인의 가사노동 정도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여성노인과 남성노인들의 가사노동참여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5-18〉 참조). 여성노인의 가사노동 평균점수는 밥하기 3.8점, 반찬 만들기 3.7점, 설거지 3.8점, 빨래 3.7점, 장보기 3.6점, 집안청소 3.6점, 집안수리 2.3점 등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도 가사노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일로 인한 피로도가 남성보다 클 수밖에 없다. 각종 자료에서 나타난 노인여성들의 높은 유병율³⁶⁾은 여성노인들의 삶의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 5-18〉 노인들의 가사노동 정도

(단위: %, 명)

문항	여성						남성					
	전혀 하지 않는다	어쩌다 한다	종종 한다	항상 한다	계	사례수	전혀 하지 않는다	어쩌다 한다	종종 한다	항상 한다	계	사례수
밥 하기	3.3	4.9	4.1	87.7	100.0	122	40.0	34.8	20.0	5.2	100.0	115
반찬 만들기	4.1	5.7	3.3	86.9	100.0	122	61.4	26.3	7.0	5.3	100.0	114
설거지	4.1	3.3	5.8	86.8	100.0	121	40.0	28.7	24.3	7.0	100.0	115
빨래 (세탁기 포함)	4.1	5.7	4.9	85.2	100.0	122	49.6	30.1	13.3	7.1	100.0	113
장 보기	4.9	6.6	8.2	80.3	100.0	122	35.1	38.6	16.7	9.6	100.0	114
집안 청소	4.1	8.3	15.7	71.9	100.0	121	13.9	28.7	38.3	19.1	100.0	115
집안수리 (못치기등)	35.3	26.1	9.2	29.4	100.0	119	8.6	13.8	29.3	48.3	100.0	116
마당 (베란다) 청소	14.0	19.8	18.2	47.2	100.0	121	16.5	17.4	36.5	29.6	100.0	115

36) 본 조사결과에서도 노인여성들은 남성노인보다 수입의 지출처로 병원비 및 약값을 지정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여성의 높은 유병율을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다.

5.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가. 입안 및 기획단계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업의 입안 및 기획단계에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획안에 반영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젠더이슈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참고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2005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과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이다.³⁷⁾ 이들 ‘계획’에 나타난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적 부담경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젠더이슈의 반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사업추진 배경에도 ‘높은 노인취업 희망 비율’이나 ‘2004년 일자리 사업 참여 동기가 주로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조사결과’ 등을 밝히고 있으나, 경제력에 있어서의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경기도 차원의 자체 지원계획은 사업시행 초기인 이유로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시에는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는 등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분리통계의 수집 및 활용은 정책의 기획 및 입안단계에서 성 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정책 수혜자인 차상위 계층 노인의 성별 경제생활 실태를 활용하여 정책을 입안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여성노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별도의 자료 수집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인집단은 타 연령대에 비해 성비가 매우 낮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유배우율이 낮으며,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남성노인보다 더 열악한 점 등 다양한 성별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특정 연령범주로 이루어진 성 중립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공무원 및 담당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여겨진다.

37) 이 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최초의 기획 및 입안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사항이다.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법·제도는 「노인복지법」, ‘참여복지5개년계획’,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그리고 ‘경기도 여성발전개년계획’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이다. 이 법에서는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시책 강구’,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 우선 제공 노력’, ‘노인 취업알선 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로 노인의 성별차이와 요구에 대한 고려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경기 2020: 비전과 전략’도 노인복지 추진전략 속에 다른 노인 복지 영역과 더불어 노인의 일자리 제공의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명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중에 ‘여성의 건강과 취약여성 복지 향상’의 세부 정책과제에 ‘노인의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여성 친화적 서비스개발’ 부분이 있다.

‘노인의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여성 친화적 서비스개발’의 기본방향 중 한 가지는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첨부하도록 하여 여성노인에 대한 민감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취업직종개발 및 보급, 취업훈련 및 알선 프로그램 개발 실시,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에서는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보급, 취업훈련, 알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에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의 성 인지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 인지성 제고에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³⁸⁾

경기도의 노인관련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³⁹⁾가 유일하다. 이 위원회는 4

38) 물론 ‘여성’ 자문위원이 반드시 성 인지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경기도, 2004), 여성 위원들이 적절히 참여하고 있을 때 여성 특수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39) “도내 노인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인의 당연직과 7인의 위촉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촉직의 2인은 대한노인회, 2인은 도의 회, 1인은 노인복지시설연합회, 그리고 2인은 학계 대표이다.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보면,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했을 때 여성위원의 비율은 27.3%로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촉직의 경우로만 한정했을 때 여성위원의 비율이 42.9%로 ‘경기도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 인지적 정책 수립을 위한 조건의 한 부분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경기도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0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내에 심사평가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예정인데(보건복지부, 2005), 프로그램의 심사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질적 평가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될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최대한 높여 이 사업이 성 인지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표 5-19〉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2005년 6월 1일 현재)

(단위: 명, %)

위원회 명	여성위원	남성위원	계	여성위원비율
경기도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 위원 (괄호 안은 위촉직수)	3 (3)	8 (4)	11 (3)	27.3 (42.9)

자료: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밋운용조례」

40)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에 따르면 정책의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2008년도 까지 도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안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 다음 〈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확대를 위해 위촉직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여성위원의 비율이다.

〈표〉 경기도 년도 별 여성위원계획안(위촉직)

(단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36	37	38	39	40

자료: 경기도,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2003

관련위원회의 여성비율과 더불어 의사결정권 수준에 있는 공무원 고위직급의 여성비율도 성인지성 제고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노인정책담당 공무원 조사결과 여성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하위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업의 성별영향예측

사업의 성별영향을 예측하고 성별 영향에 격차가 존재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서식 및 수혜자 선발기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업선정의 기준표를 보면(〈표 5-20〉 참조), 심사영역이 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차를 감안하거나 고려한 심사영역은 보이지 않는다. 심사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배점을 가진 것이 ‘신청기관의 사업 전문성 및 책임성’ (30점)이었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20점), ‘사업의 공익성 및 생산성’, ‘사업의 지속성과 파급효과’ (각각 15점), 그리고 ‘노인일자리로서의 적합성’, ‘지역사회 여건과 부합성 여부’ (각각 10점)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심사항목에 사업의 양성평등성을 추가한다면, 보다 양성평등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사업운영 계획에는 활동내용, 교육계획, 홍보계획 및 세부예산으로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성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나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사업계획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세부예산 내역 또한 성별 격차를 고려하여 제시되어 있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자 선발 기준표(보건복지부 예시)를 보면, 오히려 성별 격차를 가중시키는 차별적인 기준도 찾을 수 있다. 개인 선발기준표의 내용에 성 차이를 고려한 선발 기준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노인부부세대(10점)에 비해 단독세대주 노인(5점)에게서 5점이나 더 낮은 점수를 주는 기준이 있어, 단독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을 일자리사업에서 배제할 우려마저 들게 한다(〈표 5-21〉 참조).

〈표 5-20〉 사업선정기

심사영역	심사항목 및 배점	배점	점수
수행능력	○신청기관의 사업 전문성 및 책임성(30점) -노인 및 일자리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담당자의 유사사업 경험 및 전담인력 유무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신뢰도	상(30)	
		중(20)	
		하(10)	
사업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및 생산성(15점) -사업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참여 대상 및 수혜대상 선정의 적절성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상(15)	
		중(10)	
		하 (5)	
실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20점)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상식적)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고유계획 협력기관 확보방안 마련 여부	상(20)	
		중(15)	
		하(10)	
	○노인일자리로서의 적합성(10점) -노인의 근로능력 등의 특성감안 여부 -참여 및 교육시간의 적절성	상(10)	
		중 (6)	
		하 (3)	
	○지역사회여건과 부합성 여부(10점) -지역적 필요성 및 수요 반영 여부 -공공 및 민간기관의 협력 가능성	상(10)	
		중 (6)	
		하 (3)	
사업 효과성	○사업의 지속성과 파급효과(15점) -기대효과의 적절성 및 파급 영향 여부 -참여 노인의 적극성 유도 방안 마련 여부 -지속적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가능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상(15)	
		중(10)	
		하 (5)	
기타 종합 의견			
점 수 합 계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2005.

〈표 5-21〉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항목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가	연령		70세 이상	10		
			65-69세 이상	5		
			64세 이하	0		
나	재산 상황	재산세	재산세 없음	20		재산세는 순수재산 세액기준
			재산세(건물+토지): 30,000원 미만	0		
			재산세(건물+토지): 70,000원 미만	-5		
			재산세(건물+토지): 100,000원 미만	-10		
			재산세(건물+토지): 100,000원 초과	-20		
		자동차소유 (세대원전부)	미소유	10		
			1,500cc 이하, 승합, 화물차	-5		
			1,500cc 초과	-10		
다	세대주		노인부부세대	10		
			단독세대주	5		
			가족동거노인(자녀로부터 부양중)	-15		
라	장애인 (근로능력 있는자)		해당	10		
			비해당	0		
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前단계)		직전단계 신청탈락자	15		
			직전단계 미신청	10		
			직전단계 참여	0		
바	건강보험료 (최근 건강보험 납부고지액)		2만원미만	10		
			3만원미만	5		
			4만원미만	0		
			4만원이상	-10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증	0		
사	부양가족수		3 명이상	10		
			2 명	7		
			1 명	4		
			없음	0		
합계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2005.

부양가족 수 기준 또한 그러하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언뜻 타당한 기준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또한 단독 거주 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물성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업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와 같은 선발기준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지조사를 통해 일선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의 성별영향 예측이 돋보이는 사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아이템 개발,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체계이다. A 노인복지회관은 올해 자립지원형 사업으로 택배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택배사업은 남성노인들이 주가 되고 여성들은 전화연결 정도의 일만 하는데, 이 기관은 타 수행기관과는 달리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들이 더 많이 택배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애초에 택배 물건의 무게를 2킬로그램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여성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2킬로그램 미만으로 택배 무게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소위 남성직종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수혜성을 높이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뿐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일선 사회복지사나 담당직원들의 성 인지성도 사업수행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성 인지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실무담당자의 성 인지성은 성 인지적 사업수행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 집행 단계

1)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집행 단계에서 정책 수혜의 성별 편차가 크거나 혹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정책수혜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경제적 차이는 크고, 여성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단독가구 노인의 비율도 남성노인보다 높다. 이러한 성별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다면, 여성노인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2005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에서 성 인지적 예산 편성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 세부 사업 계획 예산에서도 공익형, 교육복지형 및 자립지원형 등 일자리 유형별로 일자리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성 인지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⁴¹⁾ 즉, 별도의 성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정책의 전달 및 홍보가 특정 성에 치우치게 된다면 다른 성은 정책 수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비록 정책이 계획·입안단계에서 성 인지성을 담보했다 하더라도, 집행단계인 전달 및 홍보 과정에서 특정 성을 배제한다면, 그것이 성 인지적 정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수혜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남성노인들에게는 여성노인보다 주위의 소개가 더 이루어지지만 여성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적어서 스스로 일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조사 결과, 공익형 사업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은 별도의 홍보 없이 이장에게 일자리가 전달되어 남성 세대주나 독거 남성노인에게 일자리 사업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일자리사업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홍보체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다. 평가 단계

1)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43개 수행기관 3,197명

41)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관한 지점으로는 일부 농어촌지역 등 사업수요(의지)가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획일적 예산배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별도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예산 지침은 찾을 수 없었다.

의 수혜자가 있었다. 그러나 수혜인원의 성별구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2005년부터는 성별 분리된 수혜자 현황을 알 수 있었다. 2005년에는 31개 시·군 49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4,082개의 일자리에 여성은 2,200명, 남성은 1,882명이 일하고 있어 여성노인의 수혜율이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⁴²⁾

‘사회적 일자리’는 그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영역에 비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⁴³⁾ 일선 담당자들의 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고부터는 여성노인들의 일할 기회가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노인여성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나아가 이 사업은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과 남성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도 여성노인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노인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일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를 알아본 결과, 총 5점 만점(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불만족 2점, 보통 3점, 대체로 만족 4점,

〈표 5-22〉 시군별 노인일자리 수혜자 현황 (2005년 7월말 현재)

(단위: 개, 명)

구분	일자리수	참여인원			대기인원	탈락인원	참여 중 중도포기
		소계	여성	남성			
계	4,356	4,082	2,200	1,882	1,554	392	392
본청 소계	2,645	2,606	1,386	1,220	564	292	292
2청 소계	1,711	1,476	814	662	660	100	100

자료: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42) 수혜자 성별로 구분 자료를 구축하였지만, 대기인원과 탈락인원 및 참여 중 중도 포기자를 성별로 구분한 자료는 없었다.

43) 기존 통계에서 나타난 고령자 취업률(및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통계청,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매우 만족 5점을 부여하였다)에 여성 4.10점, 남성 3.86점으로 여성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이란 정책의 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공헌하는지, 또한 정책이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에 기여하는지를 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에 미친 공헌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적지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의 특성으로 인해 취약계층인 노인여성들의 수혜 정도를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에 본격적으로 정책의 각 수행단계에서 성 인지성을 도입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여성의 경제생활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정책 평가 기준에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성별격차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정책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평가하게 된다. 공무원 조사결과에서 ‘사업 수혜 정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날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사업에 반영함.’에 대한 업무경험이 없는 비율은 82.9%로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76.0%가 ‘약간 필요하다’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평가는 상반기(7월)와 하반기(11월)에 각각 1회씩 총 2회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차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 및 발전도모에 활용’되고, ‘하반기 평가와 연계하여 우수기관 개인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또한 ‘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기도 한다.

평가주체별 평가방법을 보면, 기획, 조직지원, 예산운영, 사업운영, 홍보실적, 추진성과 가산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별격차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정책 개선안의 마련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

다. 추후부터는 사업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반영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제 성별 분리된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므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내년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서에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과 절차를 명시하고, 사업선정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정책의 수혜성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이상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5-23>과 같다.

<표 5-23>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노인 일자리사업의 계획 ※ 공무원 조사 결과	-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과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 내 에 성별 이슈와 관련성을 파악하는 부분은 없음. - 공무원 조사 결과 57.6%가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차이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응답.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노인 일자리 관련 법, 계획	-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계획에서 양성 평등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예시는 없음. -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에서는 여성 친화적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3. 양성평등한 정책 결정과정 참여	- 노인 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공무원 조사 결과	-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42.9%(위촉직 기준)로 위원회의 경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5년 목표율 36%을 상회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운영 위원회는 내년에 생길 예정이며 향후 위원회의 성별 비율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공무원 조사 결과 54.4%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고려하였다고 응답함. - 노인관련 부서의 공무원 직급별로 보면 여성은 하위직급 비율이 높음.

(계속)

〈표 5-23〉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노인일자리 사업 선정 기준 - 노인일자리 사업 개인 선발기준 ※ 공무원 조사 결과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선정 기준표와 사업계획서에 사업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에게 미칠 영향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에서 단독세대주보다 노인부부세대에게 더 많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독가구 비율이 높은 여성에게 차별을 가져올 수 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74.3%가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2킬로그램 미만 택배사업' 은 성별 영향을 예측한 모범사례임.
5. 성 인지적 예산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 공무원 조사 결과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적 예산 항목은 없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84.1%가 성 인지 예산을 책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70%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사업 참여자 현황 ※ 수혜자 조사 결과	- 수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노인의 수혜도가 더 높으나 여성노인 비율이 높고 유배우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성평등성은 단지 수혜자의 성비로만 평가할 수 없음. - 수혜자 조사 결과 여성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프로그램 - 사업 결과 보고	-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을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여성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생활에 도움이 됨.
9.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공무원 조사 결과	- 결과 보고에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내년 사업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82.9%가 사업수혜 정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날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사업에 반영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요약 및 제언

가. 노인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노인 일자리 사업 모색

1)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 재조정

단독가구 거주 노인(5점)보다 부부가구 노인(10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여성노인을 일자리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개인 선발 규정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단독 거주 노인 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2) 여성노인 친화적인 사업 아이템의 개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 인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노인 친화적인 사업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단위 조사에서도 여성노인의 취업직종은 남성노인보다 더 단순하여 극히 일부 직종에만 편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수혜자 조사에서도 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혜도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기는 하지만, 여성노인은 공익형과 복지형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형과 자립지원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자립지원형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노인 친화적인 사업아이템의 개발이 필요하다.⁴⁴⁾

3)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 인지적 홍보 : 농촌지역 공익형 사업의 예

정책이나 사업의 홍보 방식은 성별 정보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현재의 이장을 중심으로 알음알음으로 진행되는 홍보체계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면사무소에서 파악하고

44) 막신 물리버(1985)의 '실제적 젠더요구'와 '전략적 젠더요구'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 여성의 경우는 비록 성별노동분업이라는 '전략적 젠더 요구'를 실현할 수는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여성친화직종을 개발하여 개인의 소득창출 요구를 실현할 수 있어서 '실제적 젠더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모저, 2000).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명단 중 희망자에 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면, 여성노인이 일자리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 노인복지정책의 성 인지적 수행 여건 강화

1)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예: 사회복지사) 성 인지 교육 필요

공무원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 인지 교육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보다 성 인지적 정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 인지 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적지 않은 것이어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실무자(예컨대, 사회복지사나 시니어클럽 직원)에게 성 인지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노인일자리 사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 확보

현재 경기도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에 경기도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위원회가 설립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보하여 양성평등한 정책결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성위원이 반드시 성 인지적이거나 여성위원의 참여가 곧바로 성평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때 여성 이슈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경기도 농업현황 및 농업인력육성정책
3. 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제도 및 기반의 성 인지성 분석
4. 농업인력육성정책 수혜자 조사
5. 농업인력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6.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70년대 산업화 이래로 농업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인구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현재에도 탈농, 전농으로 인하여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식량생산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토 환경보전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젊은 여성 농업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농업분야의 경우 전체인구 수에서는 여성과 남성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여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아서 청장년층 여성농업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농업분야는 성별불균형의 정도가 높고, 여성들이 농업노동 참여 정도에 비해 권리 행사가 낮으며, 정책 차원에서도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어 농업분야에서의 젠더 이슈는 주로 ‘여성농업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세계농업기구(FAO)는 1989년 제1차 “발전에서의 여성 통합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Integration of Women in Development 1989-1995)”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이영세 외, 2004). 1996년에 있었던 FAO의 세계식량정상회의는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과 권리인정을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법에 여성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이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은 여성농업인력육성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 역시 ‘여성발전5개년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육성 목표를 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육성 계획들의 궁극적 목표는 양성평등한 농업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처럼, 성별영향평가⁴⁵⁾ 역시 정책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의 성 차별성은 없는지 검토함으로써 성인지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45) 김양희 외(2004),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반구축」(경기도) 연구에서는 ‘분석’과 ‘평가’라는 중복적인 단어를 포함하여 혼돈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에서 이를 제도화할 때 ‘성별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여성가족부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분석과 평가 용어의 중복 사용을 피하여 일단 평가라는 사용하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책수혜의 성별격차를 줄이고, 농업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각 단계에서 성 인지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업분야의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여성인력의 유입을 위해 농촌사회와 농업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2. 경기도 농업현황 및 농업인력육성정책

가. 경기도 농업 및 농업인 현황

1) 농가 총 인구 및 농지 규모

전국적인 농업인구 감소추세와 함께, 경기도 농가인구 또한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보다 1.7%(8,174명)이 감소하였다. 2004년 전국 농가인구는 3,414,551명, 경기도 농업인구는 476,101명이며, 경기도는 전국 농가인구의 13.9%를 차지한다. 경북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6-1〉 참조).

〈표 6-1〉 기간별 농가 수 및 경지면적 현황과 증가율

(단위: 호,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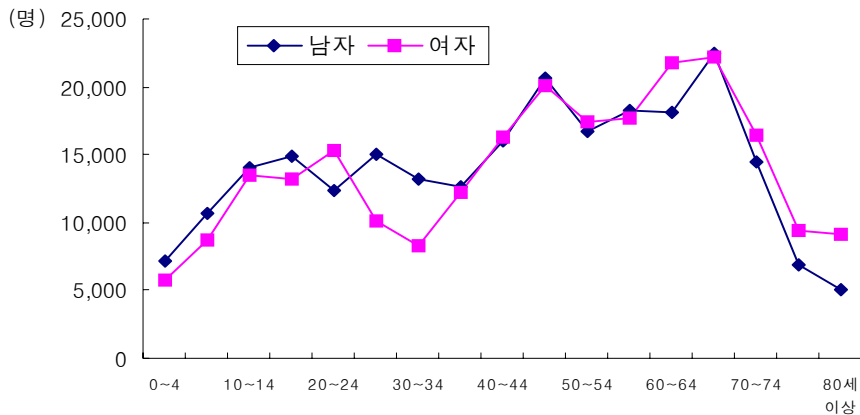
연도	농가수		경지면적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1970	2,483,000	254,229	2,298,000	219,558
1980	2,155,000	235,335	2,196,000	215,478
1990	1,767,000	202,595	2,109,000	213,858
2002	1,280,000	141,533	1,863,000	205,229

자료: 이병기 외, 2003 p.28 에서 재인용

2) 농업 인력의 특성

2004년 경기도 농가인구는 남성 238,570명으로 50.1%, 여성 237,571명으로 49.9%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그림 6-1〉 참조). 하지만 연령별 구성을 보면,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연령별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대로 17.8%이며, 40대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8%이며, 30대는 9.8%에 불과하다. 성별, 연령별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 55세 이상 농가인구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더 높는데 반해, 25-40세 인구의 경우 남성이 월등히 많아서 연령구조의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농업인구의 특성은 차세대 농업경영을 담당할 젊은 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청장년층의 여성농업인구가 부족한 만큼, 여성농업인력육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체 농가에서 여성 경영주의 비율은 16.7%이며, 60세 이상에서는 22.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표 6-2〉 참조).

〈그림 6-1〉 경기도 농업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조



자료: 통계청, 「2004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5.

〈표 6-2〉 전국 농업경영주 성별 구조

(단위 : 천명, %)

구분	40세 미만	40~49	50~59	60세 이상	전체
남성	37 (97.5)	172 (94.3)	253 (88.5)	571 (77.8)	1,033 (83.3)
여성	1 (2.5)	10 (5.7)	33 (11.5)	163 (22.2)	207 (16.7)
계	38 (100.0)	182 (100.0)	286 (100.0)	734 (100.0)	1,240 (100.0)

자료: 통계청, 「2004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5.

나. 농업인력육성정책 현황

농업인력육성정책은 경기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추진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력육성사업(창업농, 신규후계농),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후견인제, 농가경영컨설팅,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다. 여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력육성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6-3〉 경기도 농업인력육성정책

사업명	2005년도 수혜대상	2005년도 예산	2004년도 사업실적
후계농업경영인력육성	86명	5,520백만원	112명/5,040백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66명	915백만원	350명/612백만원
농가경영컨설팅	122농가	960백만원	142농가/413백만원
농업인턴제	12명	60백만원	신규사업
창업농후견인제	12명	60백만원	신규사업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1) 후계농업경영인력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력 육성사업(이하 후계농)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로 농업인력

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지도하여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으로 확보·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81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후계농 사업의 법적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의 입안과 기획은 주로 농림부에서 이루어지고, 지원금 역시 100% 국비에서 나온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림부 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2005년 예산은 800억이다.

사업에 선정된 자에게는 교육 이수 후,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지원,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젊은 농업 전문인력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원자격은 35세 미만의 농업인에 한정하고 있으며,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한 점수(300점) 이상을 확보한 자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농촌에 젊은 인력이 부족하여 신청에 제한이 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45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신규후계농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여성우대제도를 두고 있는데, 여성신청자의 경우는 평가점수 산정 시 20점 가산점을 부여하며, 선정인원의 20% 이내에서 시장·군수의 자율권에 따라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표 6-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주요 운영내용

구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대상 분야	시설자금, 가축입식자금, 개보수자금, 건설탕자금 등	시설, 개보수, 농기계, 운영자금
나이제한	35세 미만	45세 미만
지원한도	2~12천만원	2~5천만원
금리	4%	3%
상환기간	5년거치/10년상환	1~5년거치/2~10년상환
지원대상자 선정	행정기관	대출기관(농, 축협) *행정기관 후보자 추천
기타	농지구입자금의 경우 논·평당 30천원, 밭·35천원까지만 지원	좌동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에서 2005년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총 86명이며, 2004년에는 112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2005년도 5명(5.8%)이며, 2004년도는 10명(8.9%)으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의 여성 후계농 선정비율은 전국과 비교할 때에도 낮은 수준이다. 2005년도 총 사업예산은 5,520백만 원이며, 이 중 남성에게 수혜한 금액은 총 5,230백만 원, 여성은 총 290백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5.25%이다. 2004년, 2005년 모두 여성 신청자는 10명, 7명으로 후계농업경영인사업에서 정책 대상이 되는 35세 미만의 여성의 수가 농촌에 적은 것, 그리고 선정과정보다 신청단계에서 여성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수혜율에서의 한계로 보인다.

〈표 6-5〉 경기도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 및 선정 현황 (2004, 2005)

(단위: 명, %)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여성 선정 비율
	신청	선정	선정율	신청	선정	선정율	신청	선정	선정율	
2004	123	112	91.1	113	102	91.1	10	10	100.0	8.9
2005	100	86	86.0	93	81	87.1	7	5	71.4	5.8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2)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성균관대, 한경대, 농협대, 한국농업전문대학교 4개 대학에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도에서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등록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1인당 도에서는 1인당 교육비의 70%인 175만 원을 등록생에게 지원한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응시자 선발에서 여성지원자를 우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있으나, 우대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

지는 않다.

경기도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997년에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2,924명이 이 과정을 이수 또는 등록하였다. 2005년 경기도에서는 총 564명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지원하여 366명이 선정되었다. 선정자 중 남성은 303명(82.8%), 여성 63명(17.2%)이다. 선정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4.3% 낮으나, 여성비율은 2004년도에 비해 1.2% 상승하였다.

〈표 6-6〉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운영현황(2005)

대학	전공
농협대학	수도작, 과수, 채소, 낙농, 화훼 (5)
한경대학	인삼, 낙농, 한우, 양봉, 관광농업, 농산물유통 (6)
성균관대	대가축양돈위생, 농업정보화 (2)
한국농전	버섯, 인삼약특장, 화훼, 과수, 농산가공, 조정, 농촌관광 (6)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표 6-7〉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선정자 수 및 선정율(2004, 2005)

(단위: 명, %)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여성 선정 비율
	신청	선정	선정율	신청	선정	선정율	신청	선정	선정율	
2004	538	350	65.1	462	294	63.6	76	56	73.7	16.0
2005	564	366	64.9	462	303	65.6	102	63	61.8	17.2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3. 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제도 및 기반의 성 인지성 분석

가. 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법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법령에서 농업인력육성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촌진흥법」 및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있다. 관련 법령 중 성별이슈를 고려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을 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농업농촌기본법」과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제14조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정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이 법이 여성농업인력육성의 책임과 필요성을 정함으로서, 농업정책에서 성별이슈를 발견하고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01년에 신규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제정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를 끼쳤다. 동법의 제정으로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동법은 정기적으로 여성농업인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자문을 위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2005년 11월 5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개선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자체의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실태조사’를 시행해야하며, 시도지사 소속 하에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를 두어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개정은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현황에 맞는 여성농업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는 제21조의 2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포함하여 농업관련 14개의 조례가 있으나, 여성농업인육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역시 여성농업인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여성농업인육

성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조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계획

농업인력정책의 성별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농림부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 계획(2001-2005)’ ,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 ‘제1차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2004-2008)’ 이 있다.

〈표 6-8〉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시행계획(2004-2008): 농업분야

7.1.1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지원

- 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 기반 조성
 - 여성 농업인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여성 농업인 영농 및 농기계 교육 훈련
-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 관련 역할 강화
 - 친환경산업, 농수산물 가공 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및 여성 농업인의 경영교육 강화.
 - 농업경영체 내에서의 여성의 법률적 지위 개선
- 여성 영농 후계자 지원 확대
 - 영농 후계자 선정에서 여성 30% 이상 할당
 - 여성 농업인의 농업인 학습동아리 지원 강화
- 농촌여성의 관광인력 양성
 - 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농촌관광대학 또는 농촌관광 과정의 운영과 자격증 제도의 도입
 - 숙박과 요리, 투어 및 각종 수공업 분야 활동과 관련한 관광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문가 과정 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
 - 농촌 관광 사업과 관련한 여성 창업 지원
 - 농촌 관광 관련 시범사업 개발 및 실시
- 농촌여성 정보화 지원
 - 지역 초고속망 확충 및 농촌여성의 정보 이용료 지원
 - 여성농업인 무료 정보화 교육/이동 정보화교육 확대
- 여성단체의 도농 교류 협력사업 지원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은 농업분야의 성별차이를 완화하고, 농업분야의 젠더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을 구체화시켰으며, 연차별 계획을 통해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지원”을 정책과제로 하며, 구체적인 계획으로 후계여성농업인육성,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또한 여성농업인육성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인력육성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정보화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후계여성농업인 연차적 확대’를 두고 있다.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2004-2008)은 정책목표의 하나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지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계획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분야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정책과제는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지원, 농업경영역할 확대, 여성영농후계자지원확대 등이다. 동 계획은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수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경기도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해 중요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년 시행을 마친 현재, 연차별 계획의 실적이 낮으며, 정책담당부서와 협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다. 농업인력육성정책 추진체계

경기도에서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주무부서는 농정국의 농업정책과 농업경영계이다. 농업경영계에는 여성농업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사업별로 보면 농림부에서 정한 사업이, 도를 거쳐, 시·군·읍·면·동으로 내려가고, 가장 마지막 행정전달/처리지는 마을 이장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체계의 경우 정책대상에게 직접 정책정보를 전달하는 읍, 면, 동이나 마을 이장의 정책 인지 및 성 평등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자문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성 인지성을 확보한 정책협의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별 추진체계는 자치단체의 개입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운영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 최종 추진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정책추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정책자문회의를 들 수 있다. 경기도에는 농업분야

와 관련한 자문회의로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다. 농정심의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총인원은 20명이다. 성별구성은 남성이 14명, 여성이 6명으로 여성비율은 30%이다. 여성의 위원회 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수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여성발전조례」 제8조 역시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관의 위촉직 위원 중 상당수를 여성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정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2005년 현재 30%로 양성평등한 정책결정을 위한 여성위원 최소비율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추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협력부서와의 업무협조 시스템에 있다. 앞의 법, 계획 부분에서 다루었듯이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업담당부서 뿐 아니라, 여성정책부서에서도 관련 법령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성부의 ‘여성발전기본계획’,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의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 이 그 예이다. 성 인지적 정책추진체계 형성의 한 단계와 관련부서와의 정책협력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6-9〉 2005년도 경기도 농정심의회 구성

(단위: 명, %)

구분	위원 수	비율
남성	14	70.0
여성	6	30.0
계	20	10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4. 농업인력육성정책 수혜자 조사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수혜자 조사

1) 조사개요

농업인력육성 정책 가운데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수혜자 조사를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 동안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전화 조사를 한 이유는 후계농업인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경기도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직접 방문 조사가 어렵고, 우편 조사는 회수율이 낮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에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들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99명이다. 전화조사의 특성상 질문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응답자가 질문에 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조사 후 문항 수를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회수된 조사 결과는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거쳐 SPSS ver.13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 동안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진입과정의 어려움, 배우자 후계자 여부 및 이유, 그리고 여성우대 제도 인지 및 필요성 인식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표 6-10〉 참조).

〈표 6-10〉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조사 내용

	조사내용
I. 진입과정의 어려움	신청, 교육, 대출 과정에서의 어려움
II. 배우자 후계자 여부 및 이유	배우자의 후계자 여부 후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자금으로 구입한 자원 관리 권한
III. 여성우대제도 인지 및 필요성인식	우대제도 인지여부 우대제도 인지경로 우대제도 도움정도 여성들이 후계농이 되기 어려운 이유

3) 조사결과 분석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6-11〉 후계농업경영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령	20대	3 (12.0)	35 (47.3)	38 (38.4)
	30대	16 (64.0)	31 (41.9)	47 (47.5)
	40대	6 (24.0)	8 (10.8)	14 (14.1)
	계	25 (100.0)	74 (100.0)	99 (100.0)
학력	중졸 이하	3 (12.0)	2 (2.7)	5 (5.1)
	고졸	15 (60.0)	26 (35.1)	41 (41.4)
	2년제 대졸	3 (12.0)	27 (36.5)	30 (30.3)
	4년제 대졸 이상	4 (16.0)	19 (25.7)	23 (23.2)
	계	25 (100.0)	74 (100.0)	99 (100.0)
혼인상태	유배우	24 (96.0)	43 (58.1)	67 (32.3)
	무배우	1 (4.0)	31 (41.9)	32 (67.6)
	계	25 (100.0)	74 (100.0)	99 (100.0)
선정형태	창업농	12 (50.0)	49 (68.1)	61 (63.5)
	신규후계농	12 (50.0)	23 (31.9)	35 (36.5)
	계	24 (100.0)	72 (100.0)	96 (100.0)
선정연도	2002	10 (40.0)	16 (21.6)	26 (26.3)
	2003	6 (24.0)	12 (16.2)	18 (18.2)
	2004	8 (32.0)	20 (27.0)	28 (28.3)
	2005	1 (4.0)	26 (35.1)	27 (27.3)
	계	25 (100.0)	74 (100.0)	99 (100.0)
사업 작목	수도작	4 (16.0)	10 (13.5)	14 (14.1)
	복합	—	13 (17.6)	13 (13.1)
	원예	11 (44.0)	10 (13.5)	21 (21.2)
	과수	2 (8.0)	6 (8.1)	8 (8.1)
	특작	2 (8.0)	7 (9.5)	9 (9.1)
	한육우	1 (4.0)	11 (14.9)	12 (12.1)
	낙농	3 (12.0)	10 (13.5)	13 (13.1)
	양돈	1 (4.0)	3 (4.1)	4 (4.0)
	양계	—	3 (4.1)	3 (3.0)
	기타	1 (4.0)	1 (1.4)	2 (2.0)
	계	25 (100.0)	74 (100.0)	99 (100.0)

응답자는 남성 74.7%, 여성 25.3%로 남성이 많다. 하지만 전체 후계농업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여성 응답자 비율은 높은 셈이며, 조사 과정에서 여성 응답자 비율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학력은 고졸(41.4%)이 가장 많고, 2년제 대학졸업(30.3%), 4년제 대학졸업(23.2%) 순이다. 연령은 30대(47.5%)가 가장 많고, 선정형태는 창업농 63.5%, 신규후계농 36.5% 순이다. 선정년도는 2002년 26.3%, 2003년 18.2%, 2004년 28.3%, 2005년 27.3%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나) 후계농업경영인사업 진입과정

신청단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서류 작성의 복잡함’ 을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이 각각 13.8%, 29.6%로 가장 많았다. ‘서류작성 복잡함’ , ‘영농기반 확보’ , ‘평가점수 확보’ , ‘긴 심사기간’ 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함을 포함하고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자에 대한 행정적 요구사항을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6-12〉 참조).

〈표 6-12〉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정에서의 어려움(복수 응답)

(단위: %, 명)

선정과정의 어려움	여성	남성
영농기반확보가 어려워서	3.7	3.8
평가점수를 맞추기 힘들어서	3.7	1.3
지역 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3.7	2.5
신청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3.7	6.3
서류작성이 복잡해서	29.6	13.8
연령제한 때문에	3.7	2.5
심사기간이 길어서	3.7	2.5
담당자가 까다로워서	—	1.3
기타	3.7	7.5
어려운 점이 없었다	44.4	58.8
계	100.0	100.0
사례수	27	80

교육단계에서는 여성은 ‘가사일과 병행’ 22.5%, ‘농사일과 병행’ 20.0%, ‘교육내용이 도움이 안 되었음’ 17.5%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다. 남성은 ‘농사일과 병행’ 17.9%, ‘교육내용이 도움이 안 되었음’ 이 15.4%로 응답의 높은 순위이다. 여성 응답자들의 나이는 30대가 64%로 가장 많다. 30대는 기혼여성인 경우 현실적으로 가사, 육아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이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젊은 여성농업전문인력 양성의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다면, 30대 여성농업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들의 해소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표 6-13〉 참조).

〈표 6-13〉 후계농업교육인 교육 과정의 어려움(복수 응답)

(단위: %, 명)

교육과정 어려움	여성	남성
교육장과 거리가 멀어서	5.0	3.8
농사일과 병행하기 어려워서	20.0	17.9
가사일과 병행하기 어려워서	22.5	1.3
교육내용이 농사에 도움이 안 되어서	17.5	15.4
교육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7.5	6.4
교육시설이 불편해서	2.5	—
교육이 지루해서	—	6.4
기타	2.5	2.6
어려운 점이 없었다	20.0	35.9
교육 안 받음	2.5	10.3
계	100.0	100.0
사례수	40	78

대출단계에서는 신청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절차의 복잡함’을 1순위로 꼽았으며, 여성들이 이를 어려움으로 더 많이 호소하였다. 행정절차의 복잡함이 여성의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한다.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경우 성별차이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어왔다. 현재 대출금리 4%가 다른 자금 지원과 비교할 때 이점을 크게 갖지 않는다는 점, 연령제한의 한계, 복잡하고 형식적인 절차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본 조사의 응답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 인지적인 정책입안 및 집행은 성별 차이를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4〉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대출 과정의 어려움(복수 응답)

(단위: %, 명)

대출과정 어려움	여성	남성
절차가 복잡해서	40.0	27.6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6.7	3.9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되어서	3.3	6.6
담보물 설정이 어려워서	10.0	14.5
선 사업 후 자금지원의 불편	10.0	6.6
겸업 불가능	—	1.3
시간이 오래 걸려서	—	1.3
대출혜택이 적어서	—	1.3
기타	—	2.6
어려움이 없었다	30.0	34.2
계	100.0	100.0
사례수	30	76

다) 배우자의 후계자 여부 및 그 이유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사 품목이 다를 경우 부부가 모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업정책이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 때문에 부부 모두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 수혜라는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이 농업인 정체성을 갖고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원 기준은 농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인인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부부가 공동 경영주인데도 후계농에 한 쪽만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대상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부부가 모두 전업농인 경우는 총 44명(44.4%)이고, 44명 가운데 부부 모두 후계농인 경우는 4명에 불과하며 1명은 현재 신청 중이었다.

〈표 6-15〉 남편/부인은 후계농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미신청 사유	여성	남성
전업농이 아니라서	6.7	—
본인이 농업 경영주이므로	—	28.6
연령제한 때문에	60.0	0.0
농사품목이 같아서	6.7	9.5
평가점수를 만들기 어려워서	20.0	—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한지 몰랐음	—	23.8
시간이 오래 걸려서	6.7	4.8
집안일로 바빠서	—	9.5
필요가 없어서	—	9.5
고려하고 있음	—	4.8
시도했으나 선정 안 됨	—	4.8
기타	—	4.8
계	100.0	100.0
사례수	15	21

배우자가 후계농이 아니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 6-15〉 참조), 여성은 ‘남편이 연령제한에 걸려서’가 6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평가 점수가 안 되어서’라는 응답이 20.0%이다. 남성의 경우 부인이 후계농 사업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경영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부 모두 신청가능한지 몰랐다’는 응답이 23.8%였다.

4) 여성우대제도 인지 및 필요성 인식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여성 20점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인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여성은 56.0%가 알고 있었으며, 남성은 13.5%만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정보를 얻은 경로로 공무원, 농업기관 관련 담당자를 1순위로 꼽았다(여성, 55.6%, 남성 44.4%)(〈표 6-16〉 참조).

〈표 6-16〉 여성우대제도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정보취득 경로	여성	남성
팜플렛, 안내문	—	22.2
작목반, 조합 동료	16.7	11.1
공무원, 농업관련기관 담당자	55.6	44.4
인터넷	11.1	11.1
기선정자	11.1	—
잘 모르겠다	—	11.1
기타	5.6	—
계	100.0	100.0
사례수	18	9

현장에서 후계농업인 사업을 추천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정책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책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성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6-17〉 참조). 가산점 제도를 알고 있는 여성응답자들에게 가산점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4.5%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끝으로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1순위로는 제도적인 취약점으로 꼽았는데, ‘남편이 이미 후계농이어서’라는 응답이 19.4%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취약점인데 ‘농촌사회가 가부장적이어서’라는 응답이 16.7%이다.

〈표 6-17〉 여성이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여성만 응답)

(단위: %, 명)

여성이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	비율
농사의지가 없어서	2.8
남편이 이미 후계농이어서	19.4
평가점수 확보가 어려워서	2.8
신청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13.9
영농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워서	11.1
연령제한으로	8.3
가족들이 반대해서	5.6
남성들이 농사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2.8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11.1
농촌이 가부장적이라서	16.7
기타	5.6
계	100.0
사례수	36

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혜자 조사

1) 조사개요

본 설문조사는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총 238명으로 2005년도 선정자 366명의 65%이다⁴⁶⁾.

〈표 6-18〉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대학	총 응답자수	2005년 선정자	응답자/선정자 비율
농협대학	86(36.1)	130(35.5)	66.2
한경대학	47(19.7)	94(25.7)	50.0
성균관대	27(11.3)	44(12.0)	61.4
한국농전	78(32.8)	98(26.8)	79.6
계	238(100.0)	366(100.0)	65.0

2) 조사내용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혜자 조사는 교육참여의 동기, 참여의 어려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의 참여관련 질문, 여성지원자 우대조항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성 등을 물었다(〈표 6-19〉 참조).

〈표 6-19〉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조사 내용

	조사내용	
I. 교육 참여	접근성 및 동기(5문항) 만족도(6문항)	과정 참여의 어려움(6문항)
II. 배우자의 과정 참여	배우자 등록여부 (2문항)	등록/미지원 이유(2문항)
III. 여성지원자 우대조항	인지 및 접근성(2문항)	필요성 및 만족도(2문항)

46) 2005년도에 선정된 자 중 등록을 포기하거나, 휴학 또는 복학을 한 자가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도 현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록생 수는 선정자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조사결과 분석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여성 20.5%, 남성 79.5%로 2005년도 선정자의 성별비율과 비슷한 수치이다. 학력은 고졸이 58.1%로 가장 많으며, 나이는 50대 41.8%, 40대 38.5%, 30대 11.5% 순으로 청년층 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소득은 4천~6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6.9%로 가장 많아 경제적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농업인들이 이 과정에 등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접근성 및 지원동기

지원동기를 보면 여성과 남성모두 ‘영농정보획득’을 이유로 과정에 지원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6-21〉 참조). 영농정보획득을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것에 비해 남성의 경우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원동기를 볼 때, 등록생들은 이 과정에 대해 재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가장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전공을 선택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들은 남녀 모두 ‘현재 농사짓고 있는 주 작목’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남성(70.7%)이 여성(58.1%)보다 더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작목’을 전공으로 선택했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여성 25.6%, 남성 21.3%). 이는 여성이 가공분야에 많은 것과도 일치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등록하는 여성들의 경우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동기가 남성보다 더 높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의 수요가 전공 개설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여성농업인들을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접근성의 성별차이를 보기 위해서 지원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남성은 작목반, 조합 동료 26.5%, 공무원 20.1% 여성은 공무원 26.0%, 작목반, 조합 동료 20.0%,

〈표 6-20〉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학	농협대	13 (28.9)	70 (40.0)	83 (37.7)
	한경대	7 (15.6)	32 (18.3)	39 (17.7)
	성균관대	5 (11.1)	22 (12.6)	27 (12.3)
	한국농업전문대	20 (44.4)	51 (29.1)	71 (32.3)
	계	45 (100.0)	175 (100.0)	220 (100.0)
연령	20대	1 (2.4)	3 (1.8)	4 (1.9)
	30대	3 (7.1)	21 (12.7)	24 (11.5)
	40대	21 (50.0)	59 (35.5)	80 (38.5)
	50대	17 (40.5)	70 (42.2)	87 (41.8)
	60대 이상	0 (0.0)	13 (7.8)	13 (6.3)
	계	42 (100.0)	166 (100.0)	208 (100.0)
학력	중졸이하	10 (23.3)	26 (15.6)	36 (17.1)
	고졸	30 (69.8)	92 (55.1)	122 (58.1)
	2년제 대학졸	1 (2.3)	19 (11.4)	20 (9.5)
	4년제 대학졸 이상	2 (4.7)	30 (18.0)	32 (15.2)
	계	43 (100.0)	167 (100.0)	210 (100.0)
혼인상태	유배우	42 (95.5)	160 (95.8)	202 (95.7)
	무배우	2 (4.5)	7 (4.2)	9 (4.2)
	계	44 (100.0)	167 (100.0)	211 (100.0)
소득	2천만원 미만	—	10 (7.7)	10 (6.8)
	2천~4천만원 미만	2 (11.1)	31 (23.8)	33 (22.3)
	4천~6천만원 미만	5 (27.8)	49 (37.7)	54 (36.5)
	6천~8천만원 미만	1 (5.6)	12 (9.2)	13 (8.8)
	8천~1억원 미만	1 (5.6)	8 (6.2)	9 (6.1)
	1억원 이상	9 (50.0)	20 (15.4)	29 (19.6)
	계	18 (100.0)	130 (100.0)	148 (100.0)
경력	10년 이하	10 (28.6)	38 (23.5)	48 (24.4)
	11~20년	11 (31.4)	61 (37.7)	72 (36.5)
	21~30년	12 (34.3)	45 (27.8)	57 (28.9)
	30년 이상	2 (5.7)	18 (11.1)	20 (10.2)
	계	35 (100.0)	162 (100.0)	197 (100.0)

가족 18.0%, 단체 임원, 회원 18.0% 순으로 나타났다. 작목반은 정보가 모이고 유통되는 곳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은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경우가 18.0%인데 반해서 남성은 2.5%여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정보를 얻는 경로의 1순위가 공무원으로 나와서 남성에 비해서 생산자 조직, 단체 활동보다는 공공 기반과 가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교육기회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활동하는 마을 부녀회 조직 등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조직을 통한 홍보와 함께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나 홍보물을 이용한 정보 전달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표 6-21〉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지원한 이유

(단위: 명, %)

지원이유	여성	남성	전체
영농정보획득	36 (83.7)	133 (78.2)	169 (79.3)
농업인 자부심	3 (7.0)	24 (14.1)	27 (12.7)
네트워크 형성	3 (7.0)	10 (5.9)	13 (6.1)
자금신청 이점	—	2 (1.2)	2 (0.9)
기타	1 (2.3)	1 (0.6)	2 (0.9)
계	43 (100.0)	170 (100.0)	213 (100.0)

〈표 6-22〉 전공을 선택한 이유

(단위: 명, %)

전공 선택 이유	여성	남성	전체
현재 주 작목이라서	25 (58.1)	123 (70.7)	148 (68.2)
시도하고싶은 작목이라서	11 (25.6)	37 (21.3)	48 (22.1)
과정 이수율의 수월성 고려	3 (7.0)	4 (2.3)	7 (3.2)
지리적 요인 고려	1 (2.3)	1 (0.6)	2 (0.9)
기타	3 (7.0)	9 (5.2)	12 (5.5)
계	43 (100.0)	174 (100.0)	217 (100.0)

정보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신청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보기로 ‘응시원서 작성이 복잡해서’, ‘신청시기와 방법을 잘 몰라서’, ‘관심에 맞는 전공이 없어서’,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를 제시했는데, 남녀 모두 신청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6-24〉 참조).

〈표 6-23〉 지원 정보를 얻은 경로

(단위: 명, %)

지원 정보 입수 경로	여성	남성	전체
홈페이지	1 (2.0)	11 (5.4)	12 (4.7)
안내문	3 (6.0)	12 (5.9)	15 (5.9)
신문, 방송	1 (2.0)	7 (3.4)	8 (3.1)
가족	9 (18.0)	5 (2.5)	14 (5.5)
작목반, 조합 동료	10 (20.0)	54 (26.5)	64 (25.2)
단체 임원, 회원	9 (18.0)	34 (16.7)	43 (16.9)
마을 이장	—	7 (3.4)	7 (2.8)
공무원	13 (26.0)	41 (20.1)	54 (21.3)
대학 담당자	1 (2.0)	26 (12.7)	27 (10.6)
기타	3 (6.0)	7 (3.4)	10 (3.9)
계	50 (100.0)	204 (100.0)	254 (100.0)

〈표 6-2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청에서 어려움

(단위: 명, %)

신청시 어려움	여성	남성	전체
원서 작성	— —	— —	— —
신청 정보 입수	9 (21.4)	54 (31.4)	63 (29.4)
전공 선택	5 (11.9)	15 (8.7)	20 (9.3)
등록금 마련	5 (11.9)	8 (4.7)	13 (6.1)
기타	1 (2.4)	8 (4.7)	9 (4.2)
어려움 없었음	22 (52.4)	87 (50.6)	109 (50.9)
계	42 (100.0)	172 (100.0)	214 (100.0)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농사일과의 병행’을 가장 많이 꼽았다(남성 평균 3.07 여성 3.12)(〈표 6-25〉 참조). 생산물 출하시기에 단 하루도 농사일에서 손을 떼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현재로서 이런 문제가 과정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6-25〉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참여의 어려움(5점 척도)

(단위: 명, %, 점)

문항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계	평균(5점)
농사일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	여성	10 (23.8)	14 (33.3)	18 (42.9)	42 (100.0)	3.12
	남성	47 (28.1)	56 (33.5)	64 (38.3)	167 (100.0)	3.07
	전체	57 (27.3)	70 (33.5)	82 (39.2)	209 (100.0)	3.05
가사일(가사노동, 육아, 노인부양)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	여성	15 (37.5)	15 (37.5)	10 (25.0)	40 (100.0)	2.72
	남성	69 (49.3)	53 (37.9)	18 (12.9)	140 (100.0)	2.39
	전체	84 (46.7)	68 (37.8)	28 (15.6)	180 (100.0)	2.44
가족들은 내가 이 과정을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성	36 (92.3)	3 (7.7)	0 (0.0)	39 (100.0)	1.18
	남성	132 (84.1)	18 (11.5)	7 (4.5)	157 (100.0)	1.52
	전체	168 (85.7)	21 (10.7)	7 (3.6)	196 (100.0)	1.49
동급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여성	34 (82.9)	6 (14.6)	1 (2.4)	41 (100.0)	1.61
	남성	138 (86.8)	16 (10.1)	5 (3.1)	159 (100.0)	1.53
	전체	172 (86.0)	22 (11.0)	6 (3.0)	200 (100.0)	1.56
교육내용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여성	31 (75.6)	10 (24.4)	0 (0.0)	41 (100.0)	1.73
	남성	113 (71.1)	41 (25.8)	5 (3.1)	159 (100.0)	1.87
	전체	144 (72.0)	51 (25.5)	5 (2.5)	200 (100.0)	1.89
교통이 불편해서 다니기가 힘들다	여성	24 (58.5)	9 (22.0)	8 (19.5)	41 (100.0)	2.44
	남성	84 (52.8)	43 (27.0)	32 (20.1)	159 (100.0)	2.36
	전체	108 (54.0)	52 (26.0)	40 (20.0)	200 (100.0)	2.35

주: 표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를 합친 수치임.

‘그렇다’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수치임.

남성과 여성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가사일과 병행’ 으로 남성 평균 2.39 여성 평균 2.72이다. 농촌사회가 여성의 농업인 정체성을 격려함으로써 농촌사회가 남녀 모두 동등한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가사일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평등한 농촌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기적 과제가 있다. 제도적 지원으로는 육아, 노인부양과 같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육기관 확대와 같이 보살핌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여성우대제도 인지 및 필요성 인식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이수했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지 질문하였다(〈표 6-26〉 참조). 그 결과 여성응답자는 57.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3.0%만이 부인이 과정을 이수했거나 현재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흥미 있는 결과로 여성들이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는 남편들의 이해와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부가 모두 과정에 등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영농정보 획득 및 기술향상’ 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100% 위와 같이 응답하였다. 배우자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묻은 결과는 여성은 ‘남편은 농사일이 바빠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은 부인은 ‘가사일이 바빠서’ 46.4% ‘농사일이 바빠서’ 32.1%, 한 집에서 둘이 다닐 필요가 없어서 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여성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농업인 정체성 인식의 제고, 공동경영주 개념의 문화적 확대가 요청된다.

〈표 6-26〉 배우자의 과정 등록 여부

(단위: 명, %)

구분	등록함	등록안함	계
여성	22 (57.9)	16 (42.1)	38 (100.0)
남성	18 (13.0)	120 (87.0)	138 (100.0)

〈표 6-27〉 남편/부인은 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농사일로 바빠서	7 (50.0)	36 (32.1)	43 (34.1)
가사일로 바빠서	1 (7.1)	52 (46.4)	53 (42.1)
등록금이 부담되어서	1 (7.1)	4 (3.6)	5 (4.0)
자격이 안 되어서	—	2 (1.8)	2 (1.6)
한 집에서 둘이나 다닐 필요가 없어서	3 (21.4)	13 (11.6)	16 (12.7)
기타	2 (14.3)	5 (4.5)	7 (5.6)
계	14 (100.0)	112 (100.0)	126 (100.0)

경기도에서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지원하는 여성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요강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도에서 대학에 공문으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지원자의 경우는 여성우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우대제도에 대한 인지가 여성들의 지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지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여성 30.2%, 남성 20.6% 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권고조항을 모르고 있었다.

여성 우대제도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매우 필요하다’ 는 응답에 여성 54.8%, 남성 36.7%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 ‘전혀 필요 없다’ 에 응답한 여성응답자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볼 때, 여성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우대제도의 실행력 향상 및 정책 홍보의 확대가 여성들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라) 만족도

수혜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강사’, ‘장비사용’, ‘교육내용’, ‘건의사항 반영’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하였다. ‘장비사용’ 부분을 제외하고는 응답 평균은 대부분 3.8~3.9사이에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 간에도 만족도의 차이 역시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장비 활용에 있어서는 남성 평균 3.48 여성 평균 3.21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장비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28〉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단위: 명, %, 점)

문항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계	평균
교수(강사)들은 강의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여성	1 (2.3)	12 (27.3)	31 (70.5)	44 (100.0)	3.89
	남성	13 (7.7)	26 (15.4)	130 (76.9)	169 (100.0)	3.97
	전체	14 (6.6)	38 (17.8)	161 (75.6)	213 (100.0)	3.94
컴퓨터 등 실습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여성	11 (25.6)	14 (32.6)	18 (41.9)	43 (100.0)	3.21
	남성	25 (15.7)	57 (35.8)	77 (48.4)	159 (100.0)	3.48
	전체	36 (17.8)	71 (35.1)	95 (47.0)	202 (100.0)	3.42
교육내용이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여성	0 (0.0)	15 (34.9)	28 (65.1)	43 (100.0)	3.91
	남성	5 (3.0)	39 (23.5)	122 (73.5)	166 (100.0)	4.00
	전체	5 (2.4)	54 (25.8)	150 (71.8)	209 (100.0)	3.96
교육생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려고 교육기관이 성심껏 노력하였다	여성	2 (5.0)	16 (40.0)	22 (55.0)	40 (100.0)	3.70
	남성	5 (3.1)	39 (23.9)	119 (73.0)	163 (100.0)	3.93
	전체	7 (3.4)	55 (27.1)	141 (69.5)	203 (100.0)	3.90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여성	0 (0.0)	13 (29.5)	31 (70.5)	44 (100.0)	3.82
	남성	10 (5.7)	36 (20.7)	128 (73.6)	174 (100.0)	3.82
	전체	10 (4.6)	49 (22.5)	159 (72.9)	218 (100.0)	3.82

주: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 2점, ‘보통’ = 3점, ‘대체로 그렇다’ = 4점, ‘매우 그렇다’ = 5점을 주어 측정하였으며 표에서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를 합한 수치이고 ‘그렇다’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5. 농업인력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을 중심으로

가. 기획 및 입안 단계

1) 성별이슈 및 관련성 파악

입안 및 기획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첫 번째 항목은 성별 이슈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파악·고려하고 있는가이다. 농업인력육성정책과 관련한 성별이슈는 여성의 농업 노동의 기여도에 비해 여성의 농업분야의 대표성이 낮다는 것, 농업분야에서 양적 성별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여성농업인력 부족의 심각성 등이 제기되어 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목적은 농촌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젊은 농업 인력이 크게 감소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사업의 목적 자체가 성 인지적 관점을 갖고 기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5년 현재 추진방향의 하나로 ‘여성의 농업 정착 유도’ 를 명시하고 있어서, 여성농업 전문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사업기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앙 농림부에서 기획, 입안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가 기획 및 입안단계에 성 인지적 관점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경우 농협대학의 과정 개설 목적을 보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보급’ ,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경영능력함양’ , ‘농촌지도자로서의 자질 강화’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이다. 기획단계에서 성별이슈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정책의 성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사용이 필요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중앙에서 기획·입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획 단계에서 성별분리 통계가 활용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료 수집 부분에서는 연령별, 학력별, 사업작목별, 지원금액별 각각에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성별 분리된 정책자료 수집 기반이 잘 갖추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경기도의 경우, 성별 분리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성별분리 통계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분리통계는 입안 및 기획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수집·개발·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6-29〉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 2005년도 선정 결과 및 2006년도 대상자 신청현황 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 기능요원	결혼여부		연령				
		기혼	미혼	합 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계								
남								
여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 농전	여주 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계속)

〈표 6-29〉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 2005년도 선정 결과 및 2006년도 대상자 신청현황 보고

(계속)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사군구별		합계	경 중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사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사군구별		합계	경중농업분야						축산분야					
사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자료: 「농림사업시행지침」, 2005.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

농업인력육성정책과 관련한 양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는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 계획’,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에서 볼 수 있다. 2005년으로 제1차 계획을 마감하는 ‘여성농업인육성5개년 계획’에서는 실행 목표의 하나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

화’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지원’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여성농업인육성부분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를 목표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제고 및 전문인력육성의 기반조성” 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계획’ 역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지원”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위 계획들은 모두 여성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확대를 세부계획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 등을 포함하는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은 2005년도 전체 후계농업인의 20%를 여성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는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농업인력 육성 정책에서 여성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양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목표의 정책수단 부분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3) 양성평등한 정책 결정 참여

입안 및 기획 단계에서 성 인지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자문, 심의, 의결 과정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련한 위원회로는 농정심의회가 있다. 2005년도 농정심의회 위원은 총 20명이며, 20명 중 11명이 당연직이며 9명이 위촉직이다. 2005년도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남성 14명, 여성 6명으로 여성비율은 30%이며, 위촉직 9명 중 여성 4명으로 여성비율은 44.4%이다. 위촉직 여성비율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2005년 목표율 36%를 상회하고 있으나 당연직 여성 비율이 적은 한계가 남는다.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기도 농정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농정국 공무원 10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8명으로 전체의 7.8%이다.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채용 시부터 농업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직 시 성별 비율에 따라 여성공무원 비율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6급 이하의 직급 비율이 높아 의사결정 권한이 비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은 18.1%여서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되는 문제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나, 농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여성 비율은 매우 낮아서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성별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사업의 성별영향 예측

사업의 성별영향 예측은 입안 및 기획의 마지막 단계로, 해당 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분석하고 만약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획안의 점검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성별격차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지원자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정해진 평가 기준표에 따라 300점 이상인 지원자를 시장, 군수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에게는 점수 산정 시 20점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라 20% 이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사업시행시침의 ‘선정시 우선순위’ 지침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성을 우선선정의 2순위로 하고 있다. 이는 후계농업인육성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계농사업의 여성우대조항은 목표점수에 비해 부여하는 가산점이 적고, 다른 형태의 우선선발 조항이 여러 개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성지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학력과 교육훈련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우대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기도 자체 사업이 아니므로 경기도가 구체적 시행 지침이나 운영방법을 변경하기는 어려우며, 결과 보고 등을 통해 중앙의 집행기관에게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6-30〉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평가기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영농정착의욕 (100점)	-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60%) - 하 : 70점("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	- 학 력(100점)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6개월 이상 : 100점 3개월 이상 : 85점 2개월 이상 : 70점 1개월 이상 : 60점 15일 이상 : 40점 7일 이상 : 20점
영농사업계획 (200점)	- 영농사업계획(20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점
가점사항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 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 여성의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자료: 「농림사업시행지침」, 2005.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이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후계농업인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부부 후계농 제한 규정과 연령제한은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업 분야는 오랫동안 농업인 개인이 아니라 농가가 정책집행의 단위였으며,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농가의 대표는 남자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들이 농업인 정체성을 갖고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남편이 이미 후계농업인이고 농사 품목이 같다면 여성이 후계농으로 선정되는 것은 쉽지 않다. 농업인 부부 둘 중 하나가 후계농이 되어야 한다면 남편이 신청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을 독립적인 농업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지원자격에서 35세 미만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35세 미만의 연령제한은 농촌에 젊은 농업 인력이 없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표 6-31〉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확정 기준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원 가능(다만, 부부의 주 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 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한편 창업농후계인 사업과 45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신규후계농’이 병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35세 미만의 창업농사업과 45세 미만의 신규후계농의 경우 대출자금한도, 대출금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히 농촌에서 35세 미만의 여성들은 전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창업농후계인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면, 여성들의 지원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또한 여성지원자 우대제도를 두고 있지만, 후계농 사업의 경우처럼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학의 과정 담당자들에게 여성우대에 대한 권고사항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질문하였는데, ‘선발절차에서 면접관이 감안해서 판단한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양성평등 정책이 한국사회에서 이제 시작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안 및 기획단계에서 성 인지적 관점의 반영이 기획의도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

후계농육성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여성우대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성별영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우대제도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계농업인 사업에서 품목이 다를 경우에만 부부 후계농을 인정하는 규정과 연령제한 규정은 그 자체가 특정한 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농촌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향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집행 단계

1)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집행단계의 성 인지적 예산편성은 정책수혜의 성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다. 후계농업인 사업은 2004년도 여성비율이 8.1%에 불과하였고, 2005년도에도 후계농업인 선정자의 성별차이 또한 클 것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성별차이를 줄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사업 전체 예산 중 일정 금액을

여성후계자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양성평등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 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도 후계농업인사업 전체예산은 5,520백 만원이며, 여성에게 배분된 금액은 290백 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25%이다. 이처럼 경기도 후계농업인 사업 예산에서 남성의 수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별 수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 않다.

2)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는 성별에 따라 조건이 다른 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여성이(또는 남성이) 사업에 접근하는 데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다. 홍보에 있어서도 다른 한 쪽 성에게만 익숙한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의도치 않게 다른 한 쪽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 있다.

후계농업인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홍보 절차는 공식적으로는 도에서 시·군에 사업 시행 공문을 보내면, 시·군은 읍면·동에, 읍면·동에서는 각 마을의 이장에 공문을 발송해서, 농업인들은 마을 이장을 통해 공식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마을 이장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게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여성우대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혜자 조사 결과를 통해 보면, 실제로 여성우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응답자는 후계농 사업에서는 56.0%,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는 30.2%에 불과하였다.

수혜자 조사에서 사업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후계농업인사업, 최고경영자과정 모두 여성은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는 반면, 남성은 작목반, 조합, 단체 등에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었다. 남성들은 생산자 조직 등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성은 그렇지 않음을 드러낸다. 정책 홍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정보 접근 차이를 주목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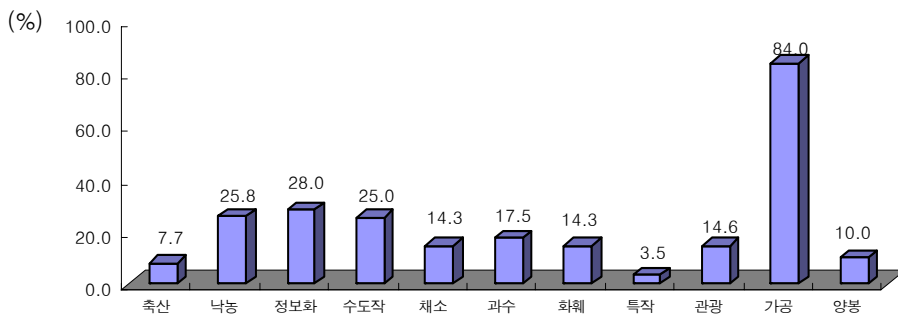
다. 평가 단계

1)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보면 200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경우 선정자 총 86명 중에 여성은 5명으로 5.8%이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2005년 4개 대학에 총 366명이 선발되었으며 남성 303명, 여성 63명으로 여성은 전체의 17.2%이다. 후계농업인 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모두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의 경우,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에서 2005년까지 영농후계자를 20%까지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실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997년 개설 이래로 등록생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공별로 성별 비율의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6-2〉 참조). 전공별로 보면 가공분야(한농전)의 경우 25명 정원에서 21명이 여성으로 다른 전공에 비해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교육기회 수혜를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성별간의 수요의 차이를 파악하여 전공분야를 개발·개설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림 6-2〉 2005년도 전공별 여성비율



자료: 개설대학 제공 2005년도 등록생 현황

주: 4개 대학에 개설된 전공 중 동일전공을 통합한 것이다. 특작은 한경대의 인삼 전공과 한농전의 인삼약특작, 버섯 전공을 포함.

수혜자 만족도를 보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여성 70.5%, 남성 73.6%가 과정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도의 평균은 여성 2.70, 남성 2.68(3점 척도)로 만족도 부분에서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신청, 교육, 대출 각각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있었는지 묻는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성별 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혜율의 성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공무원 조사에서도 사업 평가 시 성별에 따른 수혜도를 평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외에도 수혜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성별 격차의 원인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평가는 정책의 집행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하는지, 정책이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양적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그러나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후계농업인사업,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모두 수혜율의 성별 격차가 뚜렷한데, 여성의 수혜율이 낮은 이유는 농촌에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여성의 농업노동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독립적인 농업인보다는 농업보조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시행은 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하더라도 여성 참여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의 집행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양성평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혜율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는 성별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였는지, 정책결과 보고서에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하였는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후계농업인 사업 결과 보고 양식은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와 영향을 평가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후계농업인사업의 보고 양식을 보면, 선정자에 대해 혼인상태별, 연령별, 학력별, 분야별, 금액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범주를 성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성별분리통계 수집에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지 수치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수치가 담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의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 ‘성별 수혜의 차이를 분석해서 추후사업에 반영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11.6%만이 있다고 하여 평가 단계에서 성별영향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과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모두 여성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가 중요한 평가 지표로 인지되지 않고 있다. 동 계획의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후계농업경영인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6-32>와 같다.

6. 요약 및 제언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중심으로 농업인력 육성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획 및 입안단계의 경우 관련 계획에서 양성평등 목표 및 정책수단이 잘 마련되어

〈표 6-32〉 농업인력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표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농림사업시행지침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사운영 계획 - 성별분리통계 수집 및 활용 - 결과보고 서식 ※ 공무원 조사 결과	- 농림사업시행지침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사운영계획의 사업목표에 성별이슈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후계농의 경우 정책방향에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를 포함하고 있음. - 후계농의 성별분리통계 수집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 성별분리통계 수집, 활용이 미흡함. - 공무원조사에서 성별분리통계 용어 인지도 매우 낮고, 업무 기획 단계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농업인력육성 관련 법, 계획	-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여성발전5개년계획에 여성농업인력육성 목표와 여성후계농양성에 대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어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음. -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계획에서 2005년도 성과목표는 여성후계농 20%확보임.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	- 농업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 공무원 성별비율 ※ 공무원 조사 결과	- 농정심의회 여성 비율은 2005년 현재 30%이며 위촉직 기준 44.4%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5년 목표율 36%를 상회하고 있음. - 농정담당 공무원의 성별구성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은 낮고, 여성은 하위 직급에 배치되어 있음. - 공무원 조사에도 여성응답자가 낮으며, 수적 형평성 자체가 양성평등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한 기반의 하나라는 점이 인지될 필요가 있음.

(계속)

〈표 6-32〉 농업인력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표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 ※ 공무원 조사 결과 ※ 수혜자 조사 결과	- 후계농업경영인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여성우대제도를 두고 있어서 정책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후계농 사업에서 부부후계농 제한 규정과 연령 제한규정은 문화적 요인으로 여성이 후계농 사업의 수혜를 받기 어렵게 함.
5. 성 인지적 예산	- 사업 예산 - 선정결과 성별 예산비율 ※ 공무원 조사 결과	- 후계농,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은 없음 -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 성 인지적 예산 용어 인지도가 낮고, 87.7%가 성 인지 예산 책정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6. 성 인지적 정책서비스전달 및 홍보	- 홍보 단계 및 방법 ※ 수혜자 조사 결과	- 정보 전달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수혜자 조사 결과 정보접근의 차이가 나타남.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2004, 2005 사업결과 ※ 수혜자 조사 결과	- 수혜율의 성별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2005년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여성 5.8%,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17.2% 임. - 수혜자 조사결과 수혜만족도에서는 성별차이가 거의 없음.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프로그램 - 사업 결과 보고	- 후계농업경영인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농촌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역할고정관념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수혜율이 너무 낮은 한계가 있음.
9. 성별영향 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결과보고에 성별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년 사업에 금번 평가의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여성발전5개년 계획의 농업분야 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있고, 농정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2005년 현재 30%(위촉직 기준 44.4%)로 성 평등한 정책결정을 위한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 또한 여성 우대제도를 통해 성별 격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집행 단계의 경우, 성 인지적 예산편성이 거의 전무하고, 성 인지적 정책홍보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정보접근성의 차이를 보다 고려할 점이 있다는 점에서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평가 단계에서는 정책 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부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가. 여성농업인력육성 강화 및 대표성 제고

1) 여성우대제도의 실행력 강화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경우 20% 이내에서 시장, 군수의 재량에 따라 여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선정자 추천 시 여성이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도 대학에서 입학생 선발 시 여성지원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시행 여부를 점검,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 대학별 면접 평가표를 공통으로 작성하고, 여성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식의 구체적인 지침이 요구된다.

2) 부부 중 여성 후계농업인 지원

후계농업인 사업에서 현재 품목이 다른 경우에만 부부 모두 후계농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업인 개인을 대상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배우자와 관계없이 농업 인력 육성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품목이 다를 경우 부부 모두 후계농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 여성농업인 수요를 고려한 전공 개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전공개설에서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개설된 전공을 보면, 한국농업전문대학의 농산가공분야는 전체 25명 정원 중 21명이 여성으로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분야로 볼 수 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 인지적 정책 홍보

수혜자 조사 결과에서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작목반, 조합 등을 통해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은 가족, 공무원들을 통해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었다. 농업 관련 정보 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작목반, 조합 등에 여성참여가 저조한 것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단체, 부녀회 등 마을 여성조직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나.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 인지적 정책 기반 강화

1) 성별분리통계의 수집 및 활용

성별분리통계는 입안 및 기획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2005년부터 성별분리통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모든 관련 사업 보고 양식에 성별분리된 통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수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성 인지적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

2)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의 농정분야 계획 반영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은 여성농업인력육성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후계농업경영인 육성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동 계획의 목표와 연차별 계획이 농

업정책 담당부서에 잘 수렴되어 있지 않다. 여성농업인육성의 책임 부서인 농정국은 가족여성정책국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농업인육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야 할 것이다.

3) 여성농업인 정책협의체 구성

농림부는 중앙에 여성농업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행하도록 촉구해왔다. 경기도는 아직 여성농업인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업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의 의무를 갖게 된 만큼, 정책자문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여성농업인정책협의체는 도의 여성농업인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농업정책의 성 인지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을 현장에서 대면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경기도 농정 분야 공무원들의 성 인지 정책용어에 대한 인지도, 업무 경험에서 성인지 관점의 반영 경험 등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또한 성 인지적 훈련 경험도 다른 부서에 비해 낮아 농업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하여 농정분야 공무원 대상 성 인지 교육이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 성인지 관점 반영의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경기도 경제활동 현황
3. 공공근로사업 시행 및 추진배경
4. 공공근로사업 수혜자 조사
5.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6.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자 한다. 공공근로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성별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근로 사업은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에 따라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8년 1단계 사업시행 당시 선발대상을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남성가장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신청자격을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여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남성 참여자들의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2단계부터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로 선발 대상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한시적 자활보호대상 가구의 전업주부나 전업농업인 가구주나 가구주의 주 수입원이 실직상태에 있는 전업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여성참가자 수가 증가하고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이미경, 1998). 경기도의 경우 2004-5년 기간 동안 참가자 성비를 보면 여성 참가자 비율이 남성 참가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

공공근로사업에 남성 참가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부분적으로 호전되어 실업률이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남성들은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 등으로 빠져나가고, 또는 건설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시기에 따라 임금이 더 높은 다른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등 외부노동시장으로 이탈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여성이 더 높은 비중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 고연령, 저학력자의 참가 정도가 높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또 다른 일과 비교하여 임금효과도 높지 않아 공공근로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저학력으로 미숙련인 고연령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 사실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대체노동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선택하게 되어 남

성에서 여성으로, 그리고 고연령자 중심으로 내부구성이 재편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구성의 특성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초기 사업의 목표인 실업자구제의 성격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화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중 청년층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비의 30%가 할당되면서 유입된 것이다. 청년실업대상 참가자 역시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 사업의 여성화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여성중심화에 주목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성별 차이와 동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직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던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내는 측면과 동시에 여성참가자들의 많은 수가 실제로 생계를 부담하고 있어 사업이 여성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참가자들을 실업자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성별 차이나 요구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보호의 측면에 주목하여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참가자들의 성별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성 인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경기도 경제활동 현황

2004년 경기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8,076천 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5,052천 명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은 3,067천 명이고 여성은 1,985천 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91천 명 정도 더 많다. 2003년 경제활동인구는 4,776천 명으로 1년 동안 276천 명 정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도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인데, 최근 4년간 연평균 336천 명의 규모로 증가하여 총 135만 명이 증가하였다(경기도, 2004).

아래 표를 통해 먼저 경제위기 이후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62.5%에 달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1998년 60.6%로 1.9% 정도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경제가 호전되어 2000년 이후 조금씩 증가폭을

늘러오면서 2004년에는 외환위기 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당 부분 회복되어 62%까지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회복정도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2004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 정도는 남성의 경우 2004년 77.2%로 전국 평균 74.8%와 비교하여 2.4% 정도 상회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전국평균치에 비교하여 참가 정도가 높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다. 2004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8.9%이다. 그러나 경기도 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로 전국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다.

다음으로 실업율을 통해 도내 경제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1997년 2.6%에 불과하던 실업율이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7.0%까지 상승한다. 이와 같은 높은 실업율은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2000년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2004년 3.5%로 최고치를 이루던 1998년의 7.0%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의 부담이 가시화되기 전 실업율은 전국평균치에 비해 높다. 높은 정도는 이후 2년간 지속되다가 2000년도에 와서 처음 전국평균치를 하회하며 꾸준히 지속되어 오다가 2005년 3.5%로 동일하다.

〈표 7-1〉 경제활동 참가율(전국 및 경기도)

(단위: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전체	62.5	60.6	60.6	61.0	61.3	61.9	61.4	62.0
	여성	49.8	47.1	47.6	48.6	49.2	49.7	48.9	49.8
	남성	76.1	75.1	74.4	74.2	74.2	74.8	74.6	74.8
경기도	전체	63.9	61.5	61.7	61.7	62.0	62.2	61.7	62.6
	여성	48.7	45.1	45.9	46.9	47.5	47.5	46.7	48.4
	남성	79.8	78.5	78.2	77.1	77.1	77.5	77.1	7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경기도 실업율의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매년 남성의 실업율이 여성의 실업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업율을 수치상으로 보면 여성의 고용조건이 남성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남성의 실업율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이나 재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실망실업자로 편입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실망실업자는 구직의사가 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자들로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구직의사가 낮은 것이 아니라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 또 육아나 가사노동으로 인해 구직에 장애를 겪어 구직의사와 무관하게 비경제활동화 되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2005년의 경우 여성의 체감실업율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고려할 경우 4%로 상승하고 여기에 무급 가족종사자 수를 고려하면 체감실업율은 더 높아져 전국치의 경우 10%대까지 올라가며(현대경제연구원, 2005), 사실상 여성의 실업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취업자들의 취업 직종을 보면, 여성의 경우 도·소매숙박업과 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 몰려있고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저조하다. 남성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취업 비중이 높지만 제조업 비중이 다음을 차지하고 건설업에의 취업정도가 높다.

〈표 7-2〉 실업율 현황(전국 및 경기도)

(단위: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전체	2.6	7.0	6.3	4.1	3.8	3.1	3.4	3.5
	여성	2.3	5.7	5.1	3.3	3.1	2.5	3.1	3.1
	남성	2.8	7.8	7.2	4.7	4.3	3.5	3.6	3.7
경기도	전체	2.9	8.2	6.9	3.7	3.4	2.6	3.2	3.5
	여성	3.1	7.6	6.6	3.4	3.1	2.5	3.1	3.2
	남성	2.9	8.6	7.2	3.8	3.7	2.7	3.3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다음으로 연령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겠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에 가장 취업자 수가 가장 많다. 여성의 경우는 20대, 30대, 40대 참가자가 크게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50대로 오게 되면 참가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전 연령대의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30대에 고점을 이루고 40대가 되어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50대에 이르면 급격히 축소되어 30대의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50대에 참가 정도가 가장 감소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저연령을 선호하고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상시화로 인해 고연령을 중심으로 퇴거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성이구주의 노동시장 이탈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기혼여성들의 취업욕구를 강화시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게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입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2002년 이후부터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04년 남성 2,954천 명, 여성 1,921천 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00천 명

〈표 7-3〉 산업별 취업자 수 (경기도)

(단위: 천명)

구분	연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 신금융	사업 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계
여성	2002	91	353	35	551	116	596	1,742
	2003	73	360	22	589	123	614	1,781
	2004	73	378	25	620	125	699	1,920
남성	2002	116	636	356	571	328	734	2,741
	2003	101	714	361	565	326	771	2,838
	2004	100	744	360	585	333	830	2,9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구보」, 각년도.

정도 취업 정도가 높다. 고용의 안정성이 비교적 보장되는 상용직의 경우 남성이 1,344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5.5%에 이르지만 여성은 559천 명으로 그 비중이 29.8%에 불과하여 고용불안의 정도가 더 크다. 여성은 상용직 고용은 낮은 반면 비상용직 고용은 높아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면 43.0%에 달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남성은 26천 명으로 0.1%에 불과한데 비해 여성의 경우 233천 명, 12.1%로 비중 면에서 남성의 12배에 달한다.

〈표 7-4〉 2004년 경기도 연령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연령	남성	여성
15-29세	541	535
30-39세	972	523
40-49세	850	521
50-59세	404	216
60세 이상	187	127
계	2,954	1,9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5.

〈표 7-5〉 종사상 지위(경기도)

(단위: 천명)

구분	연도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계
여성	2002	280	219	491	498	254	1,743
	2003	246	247	506	584	200	1,782
	2004	298	233	559	625	206	1,921
남성	2002	863	22	1,140	471	246	2,742
	2003	872	25	1,273	461	210	2,840
	2004	880	26	1,344	505	200	2,9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이상 고용현황을 통해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여 보면 여성의 전체경제활동 참가 정도가 남성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의 절대수가 많고 또 무급가족종사자로 고용되어 있어 고용불안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정도가 남성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 진입에 성별을 이유로 장애를 겪어야 하는 것과 경제위기 당시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이유로 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어 노동시장에서 퇴거하게 하여 고용율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3. 공공근로 사업 시행 및 추진배경

가. 공공근로 사업 배경 및 목적

1) 사업 목적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정부가 직접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장기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이다. 대량실업시대 노동수요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체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업대책사업으로써,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을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공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공공부조의 미비로 급증하는 실업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이주희, 2000).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실업부조제도가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태였다. 더욱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소진 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계보호제도가 없는 실정이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외환

위기 당시 실업급여 적용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에 한정되고 자영업 실업자 신규실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97년 당시 생활보호제도는 그 대상범위가 극히 협소하여 전체 인구의 극소수(3.1%)만이 국민 기초 생활수급대상자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보장수준 또한 비현실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98년 5월 정부는 실직자 중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장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재정으로 직접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직자들이 한시적으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되게 되었다(경기도, 2002). 정부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공근로 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실업정책을 통해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시도함에 있어서 적극적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채택한 것은 경기침체에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공공생산성 효과와 실업자의 근로능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행 과정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하여 강도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였다. 이로 인해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여 일시에 직장에서 밀려난 실업자들로 인해 실업율이 높아지면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실업자 구제와 내수증대를 통한 경기 진작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판단하여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에 실업대책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강병구, 2001).

공공근로 사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량실업 기간에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보강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갖고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업흡수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IMF 이후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익성 높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으로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를 거쳐 8개 부처 20개 사업이 확정되어 전격 추진, 시행되었다.

중앙부처사업과 지자체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크게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분류되며 지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공공재 및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에 집중되었다. 특히 지자체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였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였던 사업들로서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및 복지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강병구, 2001).

그간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사업의 비생산성에 대한 많은 지적들도 제기되기도 하였고, 사업 시행 초기 공공근로의 취지인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자들의 참여로 인해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재취업을 유도하기보다는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미곤, 1999).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주장과는 달리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고, 특히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여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전과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강병구, 2001;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2001).

이와 같이 상호 상치되는 주장들은 공공근로사업을 고용창출, 생산성의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생계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인가 하는 성격상의 논란과 연관되는데, 전대문(2000)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참가로 인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정도가 높아 공공근로가 실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김광혁, 2003).

한편 경제위기가 해소되고 실업율이 완화되면서 국고 보조금이 축소됨으로 인해 공공근로 사업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고 심지어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의 폐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기능 저학력층 실직자와 고령으로 인한 미취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불가하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2001) 여성가구주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의 향후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나. 경기도 공공근로 사업

1) 사업 내용

경기도 또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도부터 대량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1998년 2단계 사업부터는 고학력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사무직과 전문직 실직자를 위한 기회를 확장시켰다(이원숙, 2000). 1999년부터 정보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에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은 노동자들도 이 사업에 유입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DB를 구축하거나 T2K 문제 해결의 보조역을 하고 있다(이주희, 2001).

경기도 본청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는 그동안 실업대책반 실업대책팀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2년 2월 18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과명칭만 ‘실업대책반’에서 ‘고용안정과’로 바뀌었으며, 제2청은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의 실업대책팀에서 관장하고 있다. 시군의 경우는 대체로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 노사경제과, 사회복지과, 농업경제과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경기도, 2002).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난 뒤 비생산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 그동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행정정보화, 주민 숙원사업해결, 사회안전망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위 같은 글, 2002), 지자체의 공공근로 사업은 생활보호제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일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보완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김광혁, 2003).

공공근로사업은 2004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여 지방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 단계마다 추진일정과 지침 등 세부업무를 촉박하게 시달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정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 자체교육, 신청 안내 등 업무가 한꺼번에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일선 사군에서 공공근로 사업 발굴 등 추진에 관한 부실

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참여자 신청접수 기간 중에 사업물량을 확정해야 하고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비가 배정되는 모순이 지적되기도 하였다(김영만, 2003).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중앙부처의 통제 하에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지방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2005년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예산

2005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배정된 공공근로 예산은 42,209백만원으로 이 가운데는 분권교부세 7,629백만원, 도비 7,000백만원, 시·군비 27,58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액은 2004년에 비교하여 볼 때 307백만원 정도 감소한 것이다. 전체 금액 중 시·군비가 가장 비중이 높아 65.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분권교부세가 18.1%, 도비가 16.6%를 차지한다.

나) 사업추진단계

사업 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 및 시행기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별 사업기간은 1단계 : 2005.1.3 - 3.26, 2단계 : 2005.4.4 - 6.26, 3단계 : 2005.7.4 - 9.24, 4단계 : 2005.10.4 - 12.24로 나누어 실시되며 2005년도 사업도 이 과정에 따르고 있다.

다) 신청자격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이거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어야 한다. 참가자의 연령은 6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지역적 특수성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청일 현재 60세 초과 65세 이하인 자에게도 5% 내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참가인원 중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하여 청년층(18세 이상 29세 이하) 실업대책 사업에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참가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혜여부, 정기소득 유무, 1세대 1인 이상 참여제한, 3단계 연속참여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일반참여자들과 같이 고려 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연속 3단계 즉 9개월 동안 계속하여 참여한 경우 다음 단계에서의 사업 참가는 불가능하다. 참여불가의 내용은 신청자 확인양식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위와 같지만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01천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적용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라) 신청서 접수 및 선발

공공근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는 이중신청이나 참여자격의 적격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소지의 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는 단계별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별도기간을 정하여 접수 가능하다.

선발자 선정은 자치단체 시행사업의 경우 각 시·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되며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수탁 행정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선발 시 장애인과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실업기간, 가구소득 등의 항목을 통해서 가중치가 부여된다(〈표 7-6〉 참조).

〈표 7-6〉가중치 예

고려요소	판단기준	가중치
연령	29세 이하 기타 연령	5(5, 0)
세대주	여부	10(10, 0)
여성 세대주	여부	5(5, 0)
부양 가족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15(0, 5, 10, 15)
:	:	:
장애인	여부	5(5, 0)
:	:	:
가구소득	4등급 분류	15(0, 5, 10, 15)

자료: 경기도, 「2005년도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2005.

마) 임금

임금은 ‘경기도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 근로의 경우 하루 24,000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고,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는 하루 27,000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 더 높아 32,000원 이하의 임금이 지급된다. 시·군은 경기도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임금 지급은 일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일급, 주급, 월급의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바) 근로 조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밤 10시 이후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취약지역 방법활동이나 야간 정보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시행된다. 공공근로 참여자 중

희망자는 매 사업단계 참여기관 중 1회씩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1월간의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 다음 달에 1회 유급 휴일이 부과된다.

사) 시행사업

도 지침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추진 사업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추천사업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하게 하고 있다. 시군은 시군 단위의 광역사업,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 중에서 생산성이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도의 지침에 따르면 우선 추진사업으로는 청년실업대책추진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장 사호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추천사업으로는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인력지원 사업이 있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들에 적합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 위원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는 도의 경우 ‘경기도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시군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 단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임금단가,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현장 확인 및 심사 평가, 기타 실업대책관련 주요시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시군의 위원회는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별 임금단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결정하며, 추진사업의 현장 확인 및 심사 평가 및 기타 주요사항 심의 의결 및 실업대책 관련정책의 심의를 담당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도의 경우 도지사를 포함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경제·노동관련교수, 기관단체 대표, 노사민간단체 대표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고, 시군의 경우는 15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필요할 경우 소수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2005년도 사업 현황

가) 예산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은 42,694백만 원으로, 2004년의 43,001백만 원에 비해 306백만 원이 감소하였다. 2004년은 다시 2003년에 비해 245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국비 지원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오면서 국비가 대폭 감소하여 감소 정도는 5,357백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예산액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던 1998년도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소 해소되어 실업정도가 완화되어 사업규모의 축소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예산액에 비해 미집행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참가자 중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전직으로 중도탈락자가 생겨 집행되지 않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집행액이 발생할 경우 잔액은 전액 이월되어 집행된다. 담당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실직자의 생계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1명의 실업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잔액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고 있

〈표 7-7〉 공공근로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국비	14,004	8,647	6,682
지방비	29,242	34,354	36,012
계	43,246	43,001	42,694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연초에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미집행액으로 인한 사업축소는 없다.

나) 참가자 현황

다음 <표 7-8>를 통해 사업참가자 성비 구성을 보면, 2005년 8월 말 현재 참가자 16,353명 중 여성은 10,520명으로 64.3%이고 남성은 5,833명으로 35.7%를 차지해 여성참가자 비율이 28.6%나 높다. 2004년의 경우도 금년과 동일하게 여성참가자 비율이 더 높아 여성 16,333명, 66.9%이고 남성 8071명, 33.3%를 차지한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의 참가가 확연하게 높은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노동시장은 여성에 비해 남성을 더 선호하며, 연령차별이 있어 고연령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유입되는 정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참여가 높은 것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가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임금 수준의 변화 때문이다. 1998년 시행 초기 전문직의 경우 1일 35,000원, 일반노무직의 경우 25,000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높은 임금수준으로 노동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1998년 2단계에 한 번 그리고 1999년 1단계 초기에 또 한 번 임금단가가 하향 조정되어 저기술 사무직과 일반노무직의 경우 19,000원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임금이 낮아지면서 임금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남성들은 동 사업을 기피하는 한편, 정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노동자들인 여성, 저학력 노령 노동자들에게 유인력이 높아져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이주희, 2001).

<표 7-8> 참가자 성별 구성

(단위: 명, %)

	여성	남성	전체
2004년	16,333(66.9)	8,071(33.3)	24,404(100.0)
2005년 8월말	10,520(64.3)	5,833(35.7)	16,353(100.0)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다음 <표 7-9>를 통해 선발율을 보면 2003년의 경우 69.5%의 선발율을 보이다 2004년의 경우 전체 신청자 37,787명 중 24,404명이 선발되어 선발율은 64.5%이다. 2005년 3단계 참가자까지 31,730명이 신청하여 16,353명이 선발되어 선발율은 51.5%로 지난 해에 비해 13% 감소하였다. 이처럼 선발정도가 감소되는 것은 국비지원이 감소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어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체 대상인원이 줄어들게 되어서이다.

사업비 축소로 인해 참가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여성의 비중이 따라서 감소하고 있다. 2004년 66.9%이던 참가율이 2005년 64.3%로 2.6% 감소하였다. 반면에 남성의 비중은 33.3%에서 35.7%로 증가하였다. 공공근로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여성가구주의 생계보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축소가 여성가구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의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보면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층 대상 사업에 참가하는 20대와 제한적 참여가 허용되는 60대를 제외하고, 30대 참가자의 비중이 가장 낮다. 30대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앞 장의 취업자 수 분포를 통해 볼 수 있었던 바처럼 30대의 경제활동참가 정도가 각 연령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아 이 연령대의 참가율을 낮추게 된 때문이다. 40대부터 참가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40대 이상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거하는 정도가 높고, 퇴거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입되어 그 정도를 높이게 된다. 50대 이상의 경우 가장 참가 정도가 높아 44.2%로 참가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에서 이처럼 참가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 7-9> 선발율

(단위: 명, %)

구분	2003	2004	2005
선발자	28,673	24,404	16,353
신청자	41,223	37,787	31,730
선발율	69.5	64.5	51.5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표 7-10〉 연령별 참가자 수

(단위: 명, %)

구분	2004	2005
29세 이하	3,054 (12.5)	2,910 (17.8)
30대	3,199 (13.1)	2,224 (13.6)
40대	5,573 (22.8)	3,983 (24.4)
50대	10,528 (43.1)	6,091 (37.2)
60세 이상	2,050 (8.4)	1,145 (7.0)
계	24,404 (100.0)	16,353 (10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노동시장이 저연령자를 선호하여 현실적으로 이들의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량 유입되는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참가자들의 학력정도를 살펴보겠다. 학력별로는 초등졸 이하가 가장 많아 2005년의 경우 33.5%이다. 다음으로 고졸이 31.0%, 중졸이 18.1%이다. 2005년 고학력 참가자들로는 전문대졸 6.2%이고 대졸 이상자는 11.2%로, 전년도에 전문대졸 4.2%, 대졸 이상 8.1%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학력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공공근로사업비의 30%를 청년층 사업에 할당하여 이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부터다. 위의 〈표 7-10〉을 보면 29세 이하의 경우 2004년은 12.5%이지만 2005년의 경우 17.8%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졸 이상 참가자의 경우 대부분 청년층 사업대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로 이들을 제외하게 되면 참가자의 학력 정도는 저하되어 초·중졸이 51.6%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학력정도가 주요한 인적자본이 되는 노동시장에서 참가자들의 취약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도 하다. 청년층 대상 사업에 예산의 30%가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사업비 배정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보인다.

참가자들의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기 이전 전직을 살펴보면, 일용근로자가 가장 많아 2004년 24.9%에서 2005년 26.8%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주부의 경우 2004년 22.9%에

서 2005년 다소 감소하였지만 17.3%로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한다. 일용직의 경우 활황을 이루던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되면서 대체 근로자를 찾지 못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부의 경우 실질적인 가구주이거나 또 배우자의 실직 등으로 생계부양 부담을 대신 지게 되면서 공공근로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부들의 유입으로 인해 공공근로 사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던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표 7-11〉 학력별 참가자 수

(단위: 명, %)

학력	2004	2005
초등졸	9,617 (39.4)	5,484 (33.5)
중졸	4,979 (20.4)	2,960 (18.1)
고졸	6,798 (27.9)	5,063 (31.0)
전문대졸	1,034 (4.2)	1,011 (6.2)
대졸 이상	1,976 (8.1)	1,835 (11.2)
계	24,404 (100.0)	16,353 (100.0)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표 7-12〉 전직별 참가자 수

(단위: 명, %)

이전 직업	2004	2005
자영업	650 (2.7)	422 (2.6)
회사원	1,757 (7.2)	1,341 (8.2)
일용직	6,069 (24.9)	4,379 (26.8)
학생	1,178 (4.8)	1,225 (7.5)
주부	5,581 (22.9)	2,832 (17.3)
제조, 서비스	1,300 (5.3)	951 (5.8)
농림, 수산업	192 (0.8)	172 (1.1)
기타	7,677 (31.4)	5,031 (30.8)
계	24,404 (100.0)	16,353 (100.0)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다) 경기도 시행 사업

2005년 도내의 공공근로사업은 4대 분야에서 91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참여사업유형 별로는 공공생산성 사업이 가장 많아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서비스 사업이 21.5%를 행정정보화사업이 20.3%, 환경정화사업이 10.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7-13〉 시행사업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명
정보화 추진사업 (16개)	주민관련전산화	· 주민등록 전산화 · 호적전산화
	행정정보 DB구축사업	· 자치법규 전산화 · 지적도면 전산화 · 지하매설물 전산화 · 건축물대장 전산화 · 국공유재산 전산화 · 하수관거 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 과세자료 전산화 · 행정자료 전산화
	통계베이스 구축	· 통계자료전산화
	홍보 및 안내사업	· 홈페이지 구축 · 공모 등 기타
	기타전산화사업	· 전산프로그램개발 · 전산가정방문 문제해결 · 기타 전산화 사업
공공 생산성 사업 (38개사업)	도로정비사업	· 도로확장 및 포장 · 도로신 · 도로면 보수 · 도색 · 도로시설물 정비 · 보도 블록 정비 · 하수도 준설
	하천정비사업	· 하천제방 개·보수 · 상하수 준설 · 둔치 개·보수 · 저수지 정비 · 재해 복구사업
	시설물 정비사업	· 공공시설물 개·보수 · 일반시설물 보수(노인정 등) · 저소득층 주거개선 · 체육시설정비(경기장 등) · 자연학습장 조성
	농업기반 조성사업	· 농·용배수로 준설 · 농·용배수로 개·보수 · 객토사업 · 휴경지 생산화 사업 ·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녹지조성사업	· 숲가꾸기 사업 · 가로수 식재 및 정비 · 자연휴양림 정비 · 조경수식재 및 화원조성 · 방화선 설치 · 잔디조성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 소공원화 사업 · 철도변 공원화 사업 · 공공시설물정화 사업 · 문화 유적지 정화 사업 ·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 ·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 재활용품 선별 작업 · 폐 임목활용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타사업	· 디자인 개발 사업 · 기타사업

(계속)

〈표 7-13〉 시행사업

(계속)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명	
공공 서비스사업 (34개사업)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 공공근로 업무보조 · 행정상담(옴브즈만 포함)	· 민원 도우미 · 행정모니터링 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 노인가정 도우미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탁아사업 · 학교급식지원 사업 · 저소득층 아·미용 도우미	· 소년소녀 가장 도우미 · 가정방문 간호사업 · 사회단체지원 사업 · 취업알선센터 운영
	새주소 부여사업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태조사사업	· 농지 · 지가 · 물가 · 행정통계	· 각종 점검 조사사업
	청소년지도사업	· 보조교사 · 청소년 폭력예방(자율방법)	· 청소년 공부방 지도
	환경감시지원	· 하천오염 감시사업 · 매연감시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물 관리사업	· 수도물 절수사업	· 상수원구역 정화사업
	기타사업	· 산불감시 · 기타사업 · 교통질서계도 · 생활민원가동지원사업	· 안전계도 · 문화재 감시 · Food Bank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3개사업)	분리 및 수거사업	· 쓰레기 분리처리 사업 · 폐비닐 수거작업 · 기타 사업	

4. 공공근로사업 수혜자 조사

가.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및 대상

설문조사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2005년 8월 22일에

서 26일까지 약 1주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참여자가 자기 기입식으로 기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현재 공공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조사 지역은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살려 31개 시군 가운데 한수 이북과 한수 이남 지역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하였다. 한수 이북에서는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의정부시를, 한수 이남에서는 참가자 수가 많고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를 선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수원시 148부이고 의정부시 147부로 총 295부이며, 이 중 분석이 어려운 17부를 제외한 나머지 278부를 통계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13을 사용하여 데이터클리닝과 부호화작업을 거쳐 빈도 분석, 평균 분석을 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과 계기, 참여 전 직업 유무, 참여 시 도움된 점과 어려운 점, 만족도, 현 단계 사업종료 이후 구직 및 교육훈련 의사 여부, 그리고 일반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내용은 다음 <표 7-14>와 같다.

<표 7-14> 조사내용

	조사내용
I. 공공근로 참여 내용	현재하고 있는 일의 내용(1문항) 참여 방법 및 계기(3문항)
II. 공공근로 참여 전 직업 유무	참여 전 직업 관련 (3문항)
III. 공공근로 참여 만족도	도움 및 어려운 점(2문항) 만족도(3문항)
IV. 현단계 사업종료 이후 구직 의사	향후 구직 의사(2문항) 직업교육훈련 의사(4문항)
V. 일반적 사항	일반 인적사항(3문항) 혼인상태 및 가족관계(4문항) 경제상태 측정(4문항)

나.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9.8%로 남성 30.2%보다 더 많다(〈표 7-15〉 참조). 여성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 하고 있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29.5%로 가장 많고 40대가 28.8%로 4-50대 참가자가 2-30대 보다 더 많다. 교육수준은 고졸자가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전문대 졸 이상이 23.8%로 많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자가 19.9%이다.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 34.5%, 기혼 33.8%, 이혼·사별·별거가 31.7%로 미혼과 기혼 유배우자, 무배우자 비율이 비슷하다. 이 가운데 미혼이라 응답한 경우는 대부분 30세 미만 청년층대상 사업 참가자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4.0%로 가장 많아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는 주로 청년층대상 사업 참가자인 경우가 많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특성을 보면, 여성은 40대가 29.9%로 가장 많고 20대 24.7%, 50대 24.2%이다. 남성은 50대가 41.7%로 가장 많고 40대가 26.2%, 20대가 21.4%로 50대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은 여성과 남성 모두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높으며, 여성이 42.5%로 남성 38.1% 보다 많다. 전문대 졸업 이상 비율도 여성이 24.9%로 남성 21.4%보다 높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남성이 22.6%로 여성 18.7%보다 높다. 혼인상태는 여성은 이혼·사별·별거 비율이 38.1%로 가장 높고, 남성은 미혼 비율이 44.0%로 가장 높다.

가구형태의 특징을 보면, 여성은 한부모 가구 비율이 19.6%로 남성 7.1%보다 높다. 여성은 이혼·사별·별거 비율이 높고 동시에 한부모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공공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가구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월평균 소득은 여성과 남성 모두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1.3%, 70.2%로 가장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월평균 소득을 100만원 이하로 대답한 경우는 본인 외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로 사실상 소득이 공공근로 참가로 얻는 50-6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제압박 정도가 매우 높다.

〈표 7-15〉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령대	30세 미만	24.7	21.4	23.7
	30세 이상~40세 미만	21.1	10.7	18.0
	40세 이상~50세 미만	29.9	26.2	28.8
	50세 이상	24.2	41.7	29.5
	계	100.0	100.0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8.7	22.6	19.9
	중학교 졸업	14.0	17.9	15.2
	고등학교 졸업	42.5	38.1	41.2
	전문대 졸업 이상	24.9	21.4	23.8
	계	100.0	100.0	100.0
혼인상태	미혼	30.4	44.0	34.5
	기혼	31.4	39.3	33.8
	이혼, 사별, 별거	38.1	16.7	31.7
	계	100.0	100.0	100.0
가구형태	1인 단독 가구	17.5	15.5	16.9
	부부	3.1	2.4	2.9
	부부(참가자)+자녀	25.8	28.6	26.6
	부부+자녀(참가자)	21.1	26.2	22.7
	한부모+자녀	19.6	7.1	15.8
	3세대 이상	8.2	14.3	10.1
	기타	4.6	6.0	5.0
	계	100.0	100.0	100.0
가구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61.3	70.2	64.0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9.3	9.5	9.4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6.5	9.5	14.4
	200만원이상	12.9	10.7	12.2
	계	100.0	100.0	100.0
주거상태	자가	29.0	26.8	28.4
	전세	31.1	32.9	31.6
	월세	28.5	36.6	30.9
	기타	11.4	3.7	9.1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194	84	278

다. 조사결과 분석

1) 공공근로 참여내용

전체 참가자들의 공공근로 사업 평균 참여 횟수는 3.4회이며, 남성 2.8회, 여성 3.9회로 여성의 장기 참여 비율이 더 높다. 1-2회라고 응답한 참가자가 54.6%로 가장 많고 남성이 66.7%로 여성 49.0%보다 더 많다. 그러나 5-9회 이상은 여성이 21.9%로 남성 8.9%보다 많다. 이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참여 횟수가 많고 공공근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근로 참여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들의 공공근로 참여가 높고 장기화되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남성에 비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화된 노동시장이 공공근로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겠다.

공공근로에 참여한 이유는 34.9%가 ‘생계가 어려워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이 39.0%로 남성 34.9%보다 약간 더 높다. 그리고 ‘마땅히 취업이 안돼서’가 28.6%로 많았으며, 남성이 30.5%로 여성 27.8%보다 많았다. 그리고 여성은 ‘다른 일을 하기 힘들어서’가 12.3%로 많았으며, 남성은 ‘일하는 것이 좋아서’가 15.9%로 나타났다.

공공근로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관공서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이 67.9%로 여성 37.5%보다 높았다. 여성은 주변사람 소개가 53.1%로 가장 높아 여성은 주로 주변사람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남성은 주로 관공서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경우는 그 비중은 아주 미미하지만 여성만이 2.2%로 응답하고 있다.

〈표 7-16〉 공공근로 참여 횟수

(단위: 명, %)

참여횟수	여성	남성	전체
1-2회	47 (49.0)	30 (66.7)	77 (54.6)
3-4회	21 (21.9)	9 (20.0)	30 (21.3)
5-9회	21 (21.9)	4 (8.9)	25 (17.7)
10회 이상	7 (7.3)	2 (4.4)	9 (6.4)
계	96 (100.0)	45 (100.0)	141 (100.0)

〈표 7-17〉 공공근로 참여 이유

(단위: 명, %)

참여 이유	여성	남성	전체
마땅히 취업이 안돼서	52 (27,8)	25 (30,5)	77 (28,6)
사업 실패로	2 (1,1)	4 (4,9)	6 (2,2)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	2 (2,4)	2 (0,7)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3 (1,6)	4 (4,9)	7 (2,6)
다른 일을 하기 힘들어서	23 (12,3)	9 (11,0)	32 (11,9)
생계가 어려워서	73 (39,0)	21 (25,6)	94 (34,9)
일하는 것이 좋아서	21 (11,2)	13 (15,9)	34 (12,6)
기타	13 (7,0)	4 (4,9)	17 (6,3)
계	187 (100,0)	82 (100,0)	269 (100,0)

〈표 7-18〉 공공근로 정보 습득 방법

(단위: 명, %)

정보습득 방법	여성	남성	전체
신문이나 방송	8 (4,2)	3 (3,6)	11 (4,0)
주변사람 소개	102 (53,1)	22 (26,2)	124 (44,9)
인터넷	6 (3,1)	—	6 (2,2)
관공서	72 (37,5)	57 (67,9)	129 (46,7)
기타	4 (2,1)	2 (2,4)	6 (2,2)
계	192 (100,0)	84 (100,0)	276 (100,0)

2) 공공근로 참여 전 직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전 직업 유무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5.2%가 직업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 67.9%, 여성 49.7%가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공공근로

참여 전 직업이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들의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생계부양의 부담이 남성에게 있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근로 참여 전 여성의 경우 직업이 없었던 비율이 50.3%에 달해, 전업주부와 같은 여성들이 공공근로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공근로로의 유입은 배우자가 실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전업주부처럼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요구를 노동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근로 사업 참가 전 직업이 있었던 경우, 다음 <표 7-20>을 보면 성별에 따른 직종의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생산직이 29.1%로 가장 높고, 일용직이 21.8%이다. 그리고 여성은 사무직이 27.5%로 가장 많고, 판매 및 서비스직 비율이 20.9%이다. 반면 남성은 사무직 비율이 3.6%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주로 판매 및 서비스직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성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여성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무직에서도 여성들은 대부분 하위직에 머물고 사무 보조의 성격을 지녀 특별한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렵고, 그 결과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참여 전 실직기간은 1년 미만이 47.6%로 가장 많으며, 여성이 54.8%로 남성 35.2%보다 많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 실직 기간은 남성이 33.3%로 여성 16.1%보다 2배 정도 더 많다.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장기 실업 상태에 있다가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9〉 참여 전 직업 유무

(단위: 명, %)

참여 전 직업 유무	여성	남성	전체
있음	96 (49.7)	57 (67.9)	153 (55.2)
없음	97 (50.3)	27 (32.1)	124 (44.8)
계	193 (100.0)	84 (100.0)	277 (100.0)

〈표 7-20〉 참여 전 직종(있는 경우)

(단위: 명, %)

참여 전 직종	여성	남성	전체
전문·관리직	8 (8,8)	8 (14,5)	16 (11,0)
사무직	25 (27,5)	2 (3,6)	27 (18,5)
판매 및 서비스직	19 (20,9)	7 (12,7)	26 (17,8)
생산직	9 (9,9)	16 (29,1)	25 (17,1)
일용직	16 (17,6)	12 (21,8)	28 (19,2)
기타	14 (15,4)	10 (18,2)	24 (16,4)
계	91 (100,0)	55 (100,0)	146 (100,0)

3) 공공근로 만족 정도

공공근로 참가를 통해 도움이 된 점을 묻는 문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4%와 41.0%로 가장 많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정도는 17.4%나 높아 공공근로가 여성의 생계보호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성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7%로 여성 13.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21〉 공공근로를 통해 도움 된 점

(단위: 명, %)

도움 된 점	여성	남성	전체
가계 경제	108 (58,4)	34 (41,0)	142 (53,0)
자신감	24 (13,0)	23 (27,7)	47 (17,5)
사람들과 만날 기회	27 (14,6)	13 (15,7)	40 (14,9)
소일거리	16 (8,6)	11 (13,3)	27 (10,1)
기타	10 (5,4)	2 (2,4)	12 (4,5)
계	185 (100,0)	83 (100,0)	268 (100,0)

공공근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근무시간과 임금, 업무 내용 중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3.71로 나타났으며, 임금 만족도가 2.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가구 소득이 없는 경우 한 달에 50-60만원 정도의 수입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진다. 근무시간 만족도는 여성이 3.73으로 남성 3.67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업무 내용 만족도는 남성이 3.58로 여성 3.54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이 높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09:00-18:00으로 정시성이 보장되어 있어 가사노동과 병행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표 7-22〉 공공근로 만족도(5점 척도)

(단위: 점, 명)

만족도	여성	남성	전체
근무시간 만족도	3.73	3.67	3.71
임금 만족도	2.52	2.52	2.52
업무 내용 만족도	3.54	3.58	3.55
사례수	194	84	278

4) 재취업 및 교육훈련 의사

재취업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4.3%, 91.7%로 응답자 대부분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단계 공공근로 종료 후 하고 싶은 일을 묻는 문항에서는 여성과 남성 공공근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6.7%, 57.9%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았다. 반면 창업은 남성이 9.2%로 여성 1.7%보다 높아 창업에 대한 의지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여성 49.7%, 남성 46.4%가 교육 및

47) 업무 만족도에서 미미하지만 여성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실제 맡고 있는 업무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하위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아 업무별로 응답자의 비중이 차이나지 않아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사회복지사, 컴퓨터 관련,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노인복지에 관한 교육, 요리, 미용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는데, 장기적인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앞으로 일할 의향

(단위: 명, %)

일할 의향	여성	남성	전체
있 다	183 (94,3)	77 (91,7)	260 (93,5)
없 다	11 (5,7)	7 (8,3)	18 (6,5)
계	194 (100,0)	84 (100,0)	278 (100,0)

〈표 7-24〉 하고 싶은 일

(단위: 명, %)

하고 싶은 일	여성	남성	전체
공공근로	120 (66,7)	44 (57,9)	164 (64,1)
다른 직업	47 (26,1)	22 (28,9)	69 (27,0)
창업	3 (1,7)	7 (9,2)	10 (3,9)
기타	10 (5,6)	3 (3,9)	13 (5,1)
계	180 (100,0)	76 (100,0)	256 (100,0)

〈표 7-25〉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사

(단위: 명, %)

교육·훈련 받을 의사	여성	남성	전체
있 다	95 (49,7)	39 (46,4)	134 (48,7)
없 다	96 (50,3)	45 (53,6)	141 (51,3)
계	191 (100,0)	84 (100,0)	275 (100,0)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나이가 많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30.0%, 31.8%로 가장 많고, 여성은 ‘적당한 교육이 없어서’ 20.0%, 남성은 ‘시간이 없어서’ 18.2%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수업료 부담 때문’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

8.9%이며 남성은 한 명도 없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있어 경제적 부담은 교육 및 훈련을 기피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나이’ 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인은 교육 내용의 문제이거나 교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진정으로 교육 받을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업료에 대한 부담 등을 줄여준다면 교육 받을 의사를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공공근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종합하면, 먼저 여성 참가자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공공근로 사업이 여성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그만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특히 전업주부처럼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고연령 여성들의 공공근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 고연령 저학력층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연령 남성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 30대 응답자가 가장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은 출산 이후 경력단절로 인해서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우며, 그 결과 3개월 단기고용에 그친다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공공근로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여성의 공공근로 사업 참여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근로 참가자들의 재취업 의사가 매우 높고, 교육 및 훈련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이상 앞서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관해 살펴본 내용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 조사 및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과정인 입안

및 기획단계, 그리고 정책이 시행되고 진행되는 과정인 정책 집행단계, 마지막으로 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 및 검토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가. 입안 및 기획 단계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사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은 사업 계획 시 성별 이슈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으며 이를 사업기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초기 남성 실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에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율이 완화되면서 남성의 참가가 감소하고 대신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이나 고연령자들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부구성의 변화, 특히 여성 참여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는 1998년부터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개발, 시행해오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 단계의 성별 이슈 관련성 파악을 위해 다음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성별분리통계이다. 사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젠더 이슈를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로 필요한 것이 성별분리통계이다.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구비되어 있을 때 성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사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유엔은 이미 1990년대부터 여성 의제가 배제되지 않도록 성 인지적 통계의 구축을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은 사업 참가 신청 시에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 성별, 전직, 학력 등을 중심으로 성별통계를 구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별로 구분된 통계는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사업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별분리통계가 구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9.8%에 불과하고, 성별통계를 사업에 활용한 경우는 24.1%로 더 저조하다.

공공근로사업은 2004년까지 노동부에서 사업을 관할하다 2005년 금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이관되기 이전까지 상위 기관에서 성별통계를 요구하지 않아 하위 기관들

은 성별통계를 구비할 필요성이 없어 구축해 놓지 않았을 수 있다. 경기도가 사업에 여성의 참여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이 보다 더 내실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이해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통계를 보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공공근로 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층 실업자 구제에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근거조항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각 호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실시’ 로 명기되어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 근거인 관련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3) 양성 평등한 정책 결정

사업이 기획되고 입안되는 단계인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과 진행에 젠더 의제를 반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업이 심의·의결되는 과정인 관련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때,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정한 여성위원 수 확보는 사업의 성 인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정도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전제되고 있다.

경기도 전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기도고용심의위원

회'의 경우 여성위원의 참여가 40%로 2008년까지 도가 목표로 하는 40%를 이미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 단위의 경우 의결기구인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적절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 <표 7-26>은 2005년도 도내 31개 시·군의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성비를 표시한 것이다. 31개 시·군의 절반 이상에서 여성 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위원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0%를 상회하는 시·군은 포천시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7곳이나 된다. 시·군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치단체장과 관련 사업담당자 등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당연직이 되며 또 다른 기관의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위촉직의 여성비율을 높임으로서 부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 경기도청 내 고용정책과 공무원 구성 현황을 보면 남성 12명(60%), 여성 8명(40%)으로 남성 비율이 더 높을 뿐 아니라 남성은 4급에서 6급까지 상위직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 여성은 모두 7급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은 4-5급 비율이 23.3%이나 여성은 2.9%에 불과하고, 남성 8-9급 비율은 12.3%이고 여성은 58.8%에 달해 여성은 주로 하위직급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26> 2005년도 시·군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단위: 명, %)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해당 시·군
10%미만	16 (51.6)	성남, 안산, 광명, 이천, 광주, 의왕, 양평, 수원, 남양주, 구리,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여주, 하남
10%이상 20%미만	3 (9.7)	용인, 평택, 오산,
20%이상 30%미만	11 (35.5)	부천, 안양, 시흥, 군포, 화성, 김포, 안성, 의정부, 파주, 과천
30%이상	1 (3.2)	포천
계	31 (100.0)	

4) 사업의 성별영향 예측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만약에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발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 환경이 변화하여 실업정도가 완화되면서 참여자가 여성, 저학력, 고연령자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실업자 구제라는 초기 목적이 희석되고 점차 취약계층의 생계보호의 의미로 사업의 의미가 전환되었다. 최근 이혼율 증가 등 사회변화로 인해 생계 부담을 저야 하는 여성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3%에 달한다. 도내 한부모 가족의 경우 비율 면에서는 전국평균치 6.3%에 미치지 않지만 도 내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가구 수로는 148천 가구나 된다. 편모/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편부가족은 1.5%에 불과하지만 편모가족은 5.5%로 3.6배에 달한다. 수혜자 조사 결과에서도 참가자 중 한부모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도 지침에 의하면 참여자 선발 시 여성세대주에게 5점의 부가점이 부여되고 있어 이들의 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표 7-27〉 참조). 여성가구의 경우 빈곤의 위험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집단으로 여성세대주에게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특히 생계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어 이는 성별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기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27〉 선발 기준

고려요소	판단기준	가중치
연령	29세 이하 기타 연령	5(5, 0)
세대주	여부	10(10, 0)
여성 세대주	여부	5(5, 0)
부양 가족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15(0, 5, 10, 15)
:	:	:

자료: 경기도 내부 자료.

나. 집행 단계

1)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집행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되는 요인은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들 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혜정도가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 예산 내역을 보면 공공 근로사업은 다른 정책이나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 인지적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청년층 대상 사업에만 예산의 3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앞의 공무원 조사를 보면, 88.8%가 성 인지적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수혜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64.8%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성 인지적 예산의 편성은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2002년 국회에서도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에 있어 성 인지성을 반영하는 예산의 기획·편성·집행제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정책예산이 성별로 균형적인 수혜를 가져오도록' 하는 성 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통해서도 그 책무성이 이미 강조된 바 있다.

한편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공공근로사업에 여성 참여 비율이 높아 성 인지적 예산 집행을 단지 남성의 수혜를 증진시키기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다. 성 인지적 예산은 참가자의 성별 비율을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성 인지적 예산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법」의 경우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3분으로 남성의 1분 24초에 비해 길고(성별통계반영), 생리적 특성상 폐쇄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함으로 화장실 내 대변기의 수를 남성의 소·대변기 수와 똑같이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 인지적 예산이란 남성과 여성의 수혜를 50: 5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성별 간 신청자 대비 선발 정도, 모집단으로써 전체 여성의 빈곤 정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점 등이 반영하여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공공근로 사업의 시행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홍보방법은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플랜카드를 이용한 대중 공고, 인터넷 고시, 시청 알림판 이용, 지방지 게재, 반상회 이용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의 수혜자 설문결과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 방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주변사람 소개가 가장 많아서 53.1%에 달하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는 67.9%로 관공서를 통한 정보입수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로 보면, 많은 여성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업에 참가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공적 기관을 통해 사업에 참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의 신청 정도도 높고, 참여 비중도 높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성들의 정보 접근 기회가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공적 기관 접근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사업내용을 수혜자인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충분히 홍보·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로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는 충분히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평가 단계

1)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평가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지표로 검토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가 성별로 형평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 일반적으로 남성의 수혜정도가 높은 다른 사업에 비해 여성의 수혜 정도가 더 높다. 2005년 8월말 현재 여성 참여 비율이 64.4%로 남성 35.7% 보다 더 높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의 수혜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임금만족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2.52로 동일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3.73, 남성, 3.67로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3.58인데 비해 여성은 3.54로 남성의 만족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혜자 조사 결과 ‘공공근로 참여시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서 여성 6.7%, 남성 1.2%가 ‘일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은 가사와 육아 등 돌봄 노동과 공공근로를 병행하는데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어려움은 단지 공공근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노동자의 삶과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최근 구조조정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의 위치가 흔들리면서 기혼여성들의 취업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업주부로 머물러 있던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과 연령, 그리고 성별로 인한 차별로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근로사업 참여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 참여 비율이 높고 특히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동 사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정도를 높이고 경제세력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비생산인구로 가정되어 가족 공간 속에 제한되었는데 전직 주부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고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의 개선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여성들의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도 보장되지 않으며, 낙인효과까지 있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공공근로사업에 장기적으로 잔류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정규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성별영향평가의 환류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사업의 결과 성별 격차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사업결과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경기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여성과 취약계층의 참가 비중이 높아 이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고 보고하고 있어 사업이 특히 여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평가 단계에서 성 인지적 업무경험이 있는지 보면, 사업결과를 보고할 때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작성한 적이 없는 경우가 74.8%, 사업결과를 평가할 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수혜를 받았는지 평가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없다는 응답이 85.0%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사업 결과 평가 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일찍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는 1994년부터 모든 정부의 보고서에 성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지금까지 주요 지침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7-28>와 같다.

〈표 7-28〉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사업 계획서 - 성별분리통계 활용 ※ 공무원 조사 결과	- 여성 참여자 수가 많음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여성친화적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 오고 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성별분리통계 활용경험은 24.1%임.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공공근로사업 관련 법, 계획	-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근거인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계속)

〈표 7-28〉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	-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 고용관련 공무원 여성 비율 및 직급 ※ 공무원 조사 결과	- 경기도고용심의위원회 여성비율은 40%에 달하나, 31개 시군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여성비율은 매우 낮아 31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여성비율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 고용정책과 공무원 구성에서 남성은 주로 고위직급 비율이 높고, 여성은 하위직급 비율이 높음. -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은 4-5급 비율이 23.3%이나 여성은 2.9%에 불과하고 8-9급 남성 비율은 12.3%이고 여성은 58.8%에 달해 여성은 주로 하위직급에 있음을 알 수 있음.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공공근로 참가자 선정 기준	- 참가자 선발 시 여성세대주에게 가중치 부여하여 성별 관련성을 예측함.
5. 성 인지적 예산	- 공공근로사업 예산 ※ 공무원 조사 결과	-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적 예산 항목은 없었음. - 공무원 조사 결과 88.8%가 성 인지 예산 업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 홍보 방법 ※ 수혜자 조사 결과	-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정보 접근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수혜자 조사 결과 여성은 주로 주변사람 소개로, 남성은 관공서를 통해 참여하고 있어 정보접근의 차이가 나타나 여성에 대한 공적 정보접근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기관별 /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 수혜자 조사 결과	- 여성의 참여가 64.4%로 남성 35.7%보다 더 높으나 노동시장의 차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학력 고연령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 여성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음. -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단지 수혜자 성비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의 성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성을 평가하여야 함.

(계속)

〈표 7-28〉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결과 보고	- 여성의 참여가 많고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여성들이 공공근로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
9.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결과 보고 시 여성과 취약계층의 참가 비중이 높아 이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됨. - 여성의 공공근로참여가 장기화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됨.

6. 요약 및 제언

한국사회는 암묵적으로 생계부양자는 ‘남성’, 가사전담자는 ‘여성’이라는 성별분업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평생직장과 남성 가장이라는 믿음이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신화가 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상시화로 중장년층 남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높아지고 동시에 여성의 생계부담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혜자 조사 결과에서도 참가자 가운데 한부모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의 빈곤층 확대는 성별분업과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고 특히 빈곤에 취약한 여성들이 빈곤화하지 않도록 공공근로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보전이라는 현재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근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외부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경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가. 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모델 강화

1)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개발

앞서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성비구성 비교를 통하여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의 2배에 달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여성 참가자 비율이 높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성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개발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 공공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SK그룹, 한국자활훈련기관협회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 2007년까지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일자리창출에 대한 협약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부담을 나누기로 협약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노인부양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계획하고 ‘노인수발부양제’를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 고용과 직업을 창출, 연계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2) 사업 참여 방식의 변화 및 기간 연장 고려

공공근로는 시행초기와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차상위 계층의 참여자가 많으며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측면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 축소를 위해 단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기간을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자의 경우 사업 기간 제한이 실업을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고연령자의 경우 사업 기간 제한은 생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대상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은 모색해야 한다.

3)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수혜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직업과 연계되는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산하 교육기관이나 여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 교육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근로 시간을 줄이고 대신 계약기간을 늘린다거나 혹은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 일자리 지원과 교육이 함께 가능해야 할 것이다.

나. 성 인지적인 실업 정책 수행 기반 강화

1) 공무원 및 일자리 알선 담당자의 성 인지 교육 기회 확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용은 성별과 무관한 사업으로 간주되어 고용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성 인지 교육 경험은 다른 부서,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노인 관련 부서 공무원보다 낮다.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성 인지성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사업들은 여성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많기 때문에 성 인지성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전제된다.

그러한 이유로 이미 국내외 많은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슈티글러는 광범위한 계속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조직구조에 성 주류화 원칙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지도부에게 이러한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슈티글러, 2005). 따라서 향후 고용 관련 부서 공무원들 뿐 아니라 직업상담사 등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성 인지 교육 기회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활용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도와 시·군에서 구비하고 있는 성별분리통계는 많지 않은데, 시·군의 경우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였던 행정자치부가 시·군에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한다. 공무원 조사에서도 성별분리통계 활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1%에 그치고 있어 성별분리통계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관련위원회 여성위원비율 제고

사업 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 수 확보는 관련 사업에 젠더 이슈를 포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고, 이들 중 다수는 빈곤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은 여성가구주인 경우가 많아 젠더 이슈와 성별 차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까지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국제적 경향과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수용하여 적절한 여성위원의 수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청년실업실태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3. 경기도 청년실업실태와 청년뉴딜사업
4. 경기청년뉴딜사업 수혜자 조사
5.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6.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장에서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 정책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기청년뉴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사업이 여성의 주류화와 경제세력화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활동참가는 깊은 관련을 가지며 노동정책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재생산적 노동에 종사해왔던 여성들이 생산적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차별 없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은 양성평등사회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될 만큼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이다(오은진 외, 2004). 때문에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주장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해왔다.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의욕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법적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성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용 불안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 여성들의 취업 지원 정책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의 보호라는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는 동 사업이 2005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이다. Hannan은 주류화의 핵심 요소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의사결정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특히 초기의 개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초기의 개입이란 정책이 입안단계에 개입하여 사업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자원의 배분에 젠더 이슈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박재규 외, 2003에서 재인용). ‘경기청년뉴딜사업’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전 평가의 의의가 강하고, 성 인지성의 개입 정도에 따라 사업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젠더 이슈를 파악하고, 사업 참가자들 간의 성별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성 인지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실업실태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가. 청년실업현황

1) 청년실업실태

1997년 후반 IMF 관리 체제 이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량실업의 충격은 전 연령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평균 2% 수준을 유지하여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안정된 모습을 보여 온 우리에게 실업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강선희, 2001).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의 시작과 함께 실업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제 신인도의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이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정리해고제 도입, 기업의 신규 인력 감소, 영세사업장의 잇단 폐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청년실업률⁴⁸⁾은 1998년 12.2%로, 숫자로는 65만 5천명까지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점차 하락하여 2002년 6.6%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2003년 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7.7%로 상승한 뒤, 통계청이 2005년 4월 말 발표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8%에 달한다. 실업자 기준을 OECD처럼 4주 내에 구직활동을 한번 이상 했지만 일을 못한 사람으로 완화하고 15~24세로 좁히면 청년실업률은 10%대 까지 올라갈 정도로 심각하다(이상우, 2005). 이와 같은 수치는 전체 실업률 3.6%의 배가 넘는 비율이어서 청년 실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48) UN과 OECD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을 정의하고 있으나 청년층에 대한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이라고 할 때에는 15~29세의 연령층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영란, 2002).

〈표 8-1〉 실업률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4.4	4.0	3.3	3.6	3.7
청년	8.1	7.9	7.0	8.0	8.3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청년층은 실업의 정도 뿐 아니라 고용상 안정의 문제도 심각한데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1996년 41.7%에서 2003년 49.7%로 8%나 증가하여 고용불안정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이상우, 2005). 한편 전체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심하다.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취업난과 함께 각종 남녀고용차별로 인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취업이 힘들기 때문이다(이정표, 2004).

2) 청년실업의 배경과 그 원인

경제위기 이전에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던 청년실업이 심화되는 데는 단순히 경기변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업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등 기업의 고용방식의 변화와 대학의 인력 양성 내용과 기업의 인력 요구의 불일치, 대졸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중첩되어 실업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0년까지 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전병유·이상일, 2004).

먼저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1997-1998년 대량 청년실업이 발생했던 것이 후유증으로 남아 기업들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제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채용규모를 늘리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업의 정도를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이후 1999년에서 2000년 기간에 잠깐 상승곡선을 타던 경제가 2000년 하반기 이후 다시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둔화와 더불어 고용증가율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이나 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또

는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연령층보다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김영란, 2003).

다음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양성체제와 노동력 수요 구조의 불일치,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대학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1995년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대학 졸업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1995년부터 이후 4년 동안 대졸자 수가 17만 명 증가하였는데 대졸자의 증가는 결국 취업률 저조로 이어지면서 청년층 노동시장 악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노우영, 2002).

대학진학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청년층 고용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괴리이다. 신규대학의 신설로 인해 대학졸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산업수요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이공계의 확대보다는 주로 인문사회계 위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첨단 산업 및 IT 산업분야에서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하여 인력수급에 있어서 양적, 질적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이, 구직자의 측면에서는 과잉인력의 문제가 동시에 병존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김농주, 2002).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는 채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여 실제로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 군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업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것이 경력직 우선 채용이다. 기업들이 훈련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력자를 우선하는 고용방식을 택하면서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현재의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고등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대졸자들이 취업 후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일정기간의 직무훈련이 필요하게 되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훈련비용의 소요보다는 대졸자의 신규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채용관행을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취업기회가 축소되고 있는데 더욱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아 청년층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70년대 경제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년실업을 경험한 외국의 경우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초기

단계에는 취업자체에 목적을 두었으나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평생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고용가능성과 평생에 걸친 개인경력개발에 초점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이정표, 2004).

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1) 여성과 경제활동 참가의 필요성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계획 수립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정도는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다음 <표 8-2> 경제활동참가의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2004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8%인데 비해 남성은 74.8%에 그 격차는 25%에 달한다(통계청, 2004). 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대체로 70% 내외이고, 2004년 OECD 평균 수준이 61.3%인데 비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8%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저고용 상태인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로는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 규범이 아직 지배적이어서 20대 후반 및 30대에 결혼과 출산·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거하여 취업률이 감소하는 M자형 곡선, 다시 말해서 후진국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표 8-2>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62.5	60.6	60.6	61.0	61.3	61.9	61.4	62.1
여성	49.8	47.1	47.6	48.6	49.2	49.7	48.7	49.8
남성	76.1	75.1	74.4	74.2	74.2	74.8	74.6	7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고학력화와 성평등 의식의 확산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정도가 이전에 비해 많아지고, 1980년대 후반 여성운동의 성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들의 취업촉진 및 차별철폐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들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에는 사회·문화적인 제한과 진입장벽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성취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경제활동참가는 단순히 경제적 의미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 참가는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로, 시민권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며 사회적 권력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여성주의가 태동한 이래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의 공적영역으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은 공적영역으로부터의 배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향후 10년 이후부터 노동인구 부족이 예상되고,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인력활용을 중요한 고용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감성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지닌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2) 고학력 여성의 고용현황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문제되는 것은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용율이 높아지는 OECD 주요 회원국들의 고용 경향과는 반대로 고학력 여성의 고용율이 낮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인력 비율은 높은데 반해 경제활동참가 정도는 저조하여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가 경제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8-3〉을 통해 고학력 여성의 고용율과 성별격차를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경우 고용율은 87.8%, 성별격차는 4.3%로 고용율은 32.8%나 낮고 성별격차는 30.6%나 높다.

〈표 8-3〉 학력에 따른 고용격차

(단위: %)

구분	대학/고등교육 이상	
	고용율	성별격차
덴마크	88.7	4.5
일본	62.7	33.5
스웨덴	87.8	4.3
영국	86.4	8.0
미국	81.9	11.6
한국	55.0	34.9
OECD 평균	82.1	11.2

자료: 이선주(2004)에서 재구성

〈표 8-4〉를 통해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정도를 보면, 1985년 50.6%에 불과하던 대졸 이상 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정도는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4년 62.6%로 20여 년에 걸쳐 10% 이상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대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정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남성의 참가 정도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남성은 1985년 92.8%를 기록하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간 감소하긴 하였지만 대졸 이상 경제활동 참가는 2004년 89.3%로 여성에 비해 36.3%나 높다.

2004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율이 79.9%에 달할 정도로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학력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이는 없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력화의 정도는 낮아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 49만 명에서 2005년 4월 현재 158만 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상우, 2005). 능력이나 기술, 그리고 의욕 등에서 남자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남성노동자를 더 선호하고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한 문화적 차별과 진입장벽으로 인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정도는 여전히 저조하다.

학력에 따른 실업률을 통해 여성의 고용정도를 살펴보면(〈표 8-5〉 참조), 여성의 경우 중졸 이하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아 1.8% 수준을 보이고, 고졸과 대졸은 각각 4.1%로 동일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고졸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아 4.7%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중졸 이하에서 3.3%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대졸 이상에 가장 그 정도가 낮아 3.1%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는데 반해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 고학력의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표 8-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연도	여성			남성		
	중졸	고졸	대졸이상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85	32.8	42.1	50.6	59.1	77.1	92.8
1990	38.2	47.5	57.2	56.6	80.0	93.2
1995	40.7	50.2	60.0	58.1	81.1	93.4
2000	42.2	49.5	60.7	53.7	78.4	88.6
2004	41.0	53.0	62.6	52.4	77.7	8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8-5〉 교육정도별 실업률(2004)

(단위: %)

학력	여성	남성	전체
중졸이하	1.8	3.3	2.6
고졸	4.1	4.7	4.4
대졸이상	4.1	3.1	3.6
전체	3.4	3.9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여성들은 실망 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취업자 수를 보면 여성의 취업정도가 남성의 취업정도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초등졸과 중졸의 경우 취업자 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초등졸의 경우 여성의 참여 숫자가 더 많다. 중졸의 경우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고학력자로 분류되는 고졸의 경우 남성이 5,896천 명인데 비해 여성은 3,853천 명이다.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남성 4,603천 명, 여성 2,441천 명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다. 즉,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8-6〉 교육정도별 취업자 수(2004)

(단위: 천명)

학력	여성	남성	전체
초등졸	1,829	1,259	3,088
중졸	1,241	1,435	2,676
고졸	3,853	5,896	9,749
대졸이상	2,441	4,603	7,044
전체	9,364	13,193	22,5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3. 경기도 청년실업실태와 청년뉴딜사업

가. 경기도 청년실업 실태와 고용현황

경기도 내 청년실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도 내 경제활동참가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8-7〉 참조). 그 결과, 남성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 79.8%의 참여율을 기록한 후,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높아지면서 78.5%로 1.3% 하락하였다. 이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2년 잠깐 상승하여 77.5%를 기록하고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04년

77.2%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1997년 48.7%를 나타내다 1998년 45.1%로 3.6%나 감소하여 남성의 감소분 1.3%에 비교하여 2배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한다. 경제위기 당시 여성의 감소 정도가 남성에 비해 큰 것은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이유로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이 여성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는 2년 정도 지속되다 2000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면서 2004년 48.4%로 외환위기 이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남성의 참가율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회복의 정도가 낮지만 참가 정도는 현격히 높아 여성에 비해 28.8%나 높다. 2004년 우리나라 전체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8.9%와 비교해 볼 때,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로 전국보다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도내 실업률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2003년 남성, 여성 모두 3.4%로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매년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4년 남성 3.8%인데 비해 여성 3.4%로 0.4% 정도까지 차이를 보인다. 실업률을 수치상으로 보면 여성의 고용조건이 남성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실업정도가 여성에 비해 높은 이유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이나 재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실망실업자로 편입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실망실업자는 구직의사가 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자들로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구직의사가 낮은 것이 아니라 취업노

〈표 8-7〉 경기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63.9	61.5	61.7	61.7	62.0	62.2	61.7	62.6
여성	48.7	45.1	45.9	46.9	47.5	47.5	46.7	48.4
남성	79.8	78.5	78.2	77.1	77.1	77.5	77.1	7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 또 육아나 가사노동으로 인해 구직에 장애를 겪어 구직의사와 무관하게 비경제활동화 되는 것으로 성격상 이들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률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 내 청년실업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그 격차도 커서 2002년의 경우는 2.2%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실업률의 정도는 낮지만 경기도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적지 않다. 또한 대학들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이른바 수도권 지역은 졸업 후에도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획득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형편이다(이효선, 2002).

교육 수준에 따른 취업 현황을 보면(〈표 8-10〉 참조), 경기도 여성의 경우 고졸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아 916천 명(47.7%)이며, 다음으로 대졸 이상 532천 명(27.7%)이다. 중졸과 초졸 이하의

〈표 8-8〉 경기도 실업률

(단위: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2.9	8.2	6.9	3.7	3.4	2.6	3.2	3.5
여성	3.1	7.6	6.6	3.4	3.1	2.5	3.1	3.2
남성	2.9	8.6	7.2	3.8	3.7	2.7	3.3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8-9〉 청년실업률(15-29세)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8.1	7.9	7.0	8.0	8.3
경기도	6.2	5.9	4.8	7.3	7.6

자료: 통계청, KOSIS, 각년도.

〈표 8-10〉 교육수준별 취업정도(2004)

(단위: 천명, %)

학력	여성	남성	전체
초졸이하	242 (12.6)	179 (6.1)	421 (8.6)
중졸	231 (12.0)	274 (9.3)	505 (10.4)
고졸	916 (47.7)	1,408 (47.6)	2,324 (47.7)
대졸이상	532 (27.7)	1,094 (37.0)	1,626 (33.3)
계	1,921 (100.0)	2,955 (100.0)	4,876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비율은 비슷하여 중졸 12.0%, 초졸 이하 12.6%이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전체 취업자 중 고졸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아 1,408명(47.6%)이며, 다음으로 대졸 이상 1,094명(37.0%) 순이다. 중졸과 초졸 이하의 비율은 더 낮아져 중졸 9.3%, 초졸 이하 6.1%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별 내 고졸 비율이 가장 높아 50%에 근접한 정도를 보인다. 이를 다시 수로 비교하여 보면, 고졸의 경우 여성은 916천 명으로 1,408명인 남성의 65.1%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졸 이상의 경우 더욱 격차가 커져 여성은 532천 명으로 남성의 1,094천 명에 비해 48.6%에 불과하다. 학력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참여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통해 고용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면 경기도 내 전체경제활동 참가 정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참여 정도가 현저히 낮다. 실업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에는 실망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 취업자 수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여성의 실업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도내 청년실업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전국평균치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 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 학교가 몰려있어 매년 배출되는 졸업자 수가 누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실업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경기청년뉴딜사업

1) 사업시행 배경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고용 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십 수 년 전부터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온 선진외국과 달리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로소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해 이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김영란, 2002).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향후 30-40여 년간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주축을 담당하게 될 기대 계층이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끊임없이 탐색작업을 하는 계층이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상대적 정보가 부족해 평생 일 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짧은 근속기간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업가능성 및 높은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노우영, 2002). 따라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청년층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경기청년뉴딜’ 사업이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도 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근거로 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4회에 걸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성과가 누적되고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아 1회 더 연장하여 금년 말까지 5기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이다. 사업내용은 구직자 개인별로 취업전문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을 파악하고 취업에 적

합한 업종을 분석한 다음 그에 따라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알선 등 필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자 맞춤형 종합취업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영국의 청년뉴딜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과 프랑스의 로컬 미션(Local Mission)의 사업 내용 중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경기도청의 경제투자관리실의 고용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팀이 운영되고 있고 홈페이지도 가동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실업자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전제 한 상태에서 대책수립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채창균, 2003). 선진 유럽국가의 청년실업정책은 청년실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실업대책을 세워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데, 경기청년뉴딜은 앞에서 제기된 다른 실업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경기청년뉴딜’ 사업은 매회 200명을 위탁정원으로 계획되었지만 기수를 거듭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청인원이 늘어나 1기 216명에서 2기 246명, 3기 284명, 4기의 경우 323명이 신청하여 모집정원 200명을 넘어 1.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구직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5기의 경우 10월 7일까지 400명을 모집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9월 말 현재 청년뉴딜사업의 성과는 <표 8-11>과 같다.

〈표 8-11〉 경기 청년뉴딜사업의 성과(2005. 9월말 현재)

(단위: 명)

	취업	직장체험	취업대기 중
참여인원	257	248	111

자료: 경기도 고용정책과 내부자료.

2) 경기청년뉴딜사업 개요

가) 소요예산

전체 소요예산은 38억 22백만 원으로 청년뉴딜 15억,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 제공 예산

23억 22백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고 및 사업개시

참가자 모집을 위한 공고기간은 도 및 시 홍보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개시일 2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사업개시 15일 전에 마감된다. 대상자는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확정되며 7일 전까지 통보된다. 각 기별 사업이 시작되는 날짜는 <표 8-13>과 같다.

다) 사업대상 및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가 그 대상자이다. 군필자는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만 32세까지 참가 연령이 연장된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과 휴직자는 참가가 제외되며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우선 선발되고, 남자의 경우 군필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최근 6개월 및 현재 받고 있지 않은 자가 우선 선발된다. 앞에서 언급한 해당기간 이내라도 기간이 짧을수록 우선된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불성실 참가자는 향후 3년간 도내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벌칙을 부가하고 있다.

〈표 8-12〉 경기청년뉴딜 소요예산

	청년뉴딜	고학력청년 일자리 제공
소요예산	15억	23억 22백
계	38억 22백만원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표 8-13〉 경기청년뉴딜 사업개시일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개시일	2005년 2월 1일	2005년 3월 1일	2005년 4월 1일	2005년 6월 1일	2005년 10월 13일

라) 사업 운영

청년뉴딜사업은 3단계로 지원되는데, 먼저 1단계로 개인별 밀착상담이 6주간 진행되며, 2단계로 직업훈련 또는 직장체험이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진행된다. 다음 3단계는 직장 집중알선과 사후관리가 최대 2년간 지속되게 된다. 1단계 과정에서는 6주간 동안 구직자의 개별특성에 맞춰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병행하여 진행된다. 개인상담은 자신감을 강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취약부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기노출에 대한 경험을 위해 소그룹 상담을 병행하여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집단 상담기간 동안에는 채용동향과 직업정보를 알려주고 참여자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구직 기술과 구직활동방법, 예컨대 기업체와의 접촉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이력서 쓰기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공개면접 테스트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 취업컨설팅 및 취업전략이 수립되는 기초가 된다. 이 기간동안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2단계에서의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과 직장체험으로 나뉘어져 직업훈련을 선택할 경우 적성화 능력에 따른 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훈련을 선택할 경우 유망교육과정을 우선 선정하여 실무위주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육은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제공되며 도립학교에 없는 교육 내용인 경우에는 취업전문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최대 40만원, 즉 교통비 15만원에 더해 월 수강료가 지급된다. 직장체험을 하는 참가자에게는 구직자별로 적합한 업무를 정하여 현장에서 업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체험 후 정규직으로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 직장체험 기업은 경기중기센터, 벤처협회, 16개 도 출연-출자기관, 경경련, 경기경총, 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직장체험기업을 모집하여 2005년 8월 현재 520개 업체에서 1,842명을 확보하고 있다. 최장 기간은 9개월이며, 86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후 3단계로 직장알선 기간에는 취업을 위해 개인 이력서를 홍보하며, 구직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개별 추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위탁 리쿠르트 업체의 PR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미취업자는 최대 2년까지 Work-net에 등록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표 8-14〉 경기청년뉴딜 3단계 지원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내용	개인밀착상담	-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집중알선
수당	30만원 지급	- 교육훈련비 : 최대 월 40만원 지급 - 직장체험 : 월 80만원 3개월간 지급 최장 9개월	-
취업지원	취업스킬 향상교육, 취업컨설팅, 취업전략 수립, 경력관리	- 취업전문기관 추천 : 우수/유망기업에 직장체 험 기회제공	다양한 분야의 취업전문교육
기간	6주	- 직업훈련 최장 6개월 - 직장체험 최장 9개월	3개월 - 최대 2년간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마) 사업권역

경기청년뉴딜사업은 경기도 내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데, 각 권역은 다음 〈표 8-15〉와 같다. 경기도가 처음 사업을 기획할 때는 5개 권역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2기 모집에 1기 참여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직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당초 고양권으로 되어있던 양주시를 의정부권으로 조정하고, 평택권으로 되어있던 용인시를 조정·분리하여 6개 권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다시 4기에 고양권을 분리해 7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원권에 속하는 지역은 수원을 비롯하여 오산시, 화성시, 의왕시, 안양시가 포함된다. 평택권은 평택과 안성시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권은 용인과 이천 그리고 여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부권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의정부를 비롯하여 구리와 가평, 그리고 양주, 남양주, 포천, 동두천이 포함된다. 성남권은 성남, 과천, 하남, 광주를 비롯하여 양평시로 구성되어 있다. 안산권의 경우 안산, 부천, 광명, 군포, 시흥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고양권역에는 고양, 파주, 김포, 연천시가 소속되어 있다.

〈표 8-15〉 권역별 구성 및 담당업체

권역구분	참여도시	사업 위탁업체	구성
수원	수원, 오산 화성, 의왕, 안양	인쿠르트	- 팀장 1명, 사무직원 1명, 관리 및 전문 컨설턴트 6명 총 8명으로 구성됨. - 이 중 팀장과 사무직원 2명을 제외하고 여성 컨설턴트가 6명임.
평택	평택, 안성		
용인	용인, 이천, 여주		
의정부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남양주, 포천, 동두천		
성남	성남, 과천, 하남 광주, 양평	스카우트	- 팀장 1명, 전문컨설턴트 5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됨. - 이 중 팀장1명을 비롯해 컨설턴트 3명이 남성, 나머지 2명이 여성임.
안산	안산, 부천, 광명 군포, 시흥		
고양	고양, 파주, 김포, 연천		

사업은 경기도가 기획하고 진행은 취업정보업체인 인쿠르트 및 스카우트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다. 위탁업체는 구직 전문가인 전문상담사들을 배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컨설턴트 한 명이 1기당 20명을 담당한다. 컨설턴트는 지속적으로 참여자들과 연결망을 유지하며 취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를 위해 신입직원의 태도와 정신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입사 이후의 적응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바) 참가방법

참가를 원하는 신청자는 경기넷(www.gg.go.kr) 공고/고시란이나 뉴딜홈페이지(www.newdealjob.c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다음, 우편 및 팩스 접수를 하거나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를 비롯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취업전문업체 스카우트와 인쿠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 경로는 연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아 50.6%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을 한다. 이에 반해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관(2.0%)을 이용하거나 학교 취업소개 기관을 통한 취업은 1.6%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에서 공공의 취업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고, 청년뉴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잘 부합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social network theory)에 의하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할 때 구직자와 기업간의 일자리 짝짓기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행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장원섭 외, 1999, 이정표, 2004 재인용). 경기청년뉴딜 사업은 공신력을 가진 도를 제3자의 위치로 하고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계시킴으로서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구직단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하고 난 뒤 직업에 적응하는 단계까지 취업 전담 컨설턴트가 배치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관리 및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참가자 현황

청년뉴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4기까지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769명 중 여성참가자가 444명(57.7%), 남성참가자 325명(42.3%)으로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 참가자 수보다 더 많다(〈표 8-16〉 참조). 이처럼 사업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참가자 수가 많아진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더 많은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에 도의 고용지원에 대한 기대가 커다란 유인책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취업에 용이하지 않은 인문·사회계열에 몰려있다는 점도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가자들의 학력 정도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참가자가 가장 많아 449명(58.4%)이며, 다음 전문대졸이 238명(30.9%)이다. 고졸 참여자 수가 가장 적어 82명(10.7%)에 불과하다.

성별에 따른 학력 정도를 보면, 여성참가자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자 분포가 남성에 비

해 약간 높은 59.0%이고,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자로 30.9%, 고졸은 10.1%를 차지한다. 남성의 경우 학력 간 분포가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졸자 비율이 57.5%로 조금 낮아지는 대신 전문대졸과 고졸자 비율이 각각 31.1%, 11.4%로 미미하지만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참가자들 전공을 살펴보면, 여성참가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높아 36.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경계열 참가자 비율이 19.3%로 높고, 예·체능 비율이 18.8%이다. 남성은 공학계열이 가장 높아 전체참가자의 절반을 넘어서 53.0%나 된다. 다음으로 상경계열이 18.8%로 높고, 그 다음 인문·사회계열이 16.4%이다. 남성은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공학계열 전공자의 참여가 높은 반면, 여성들은 취업이 쉽지 않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비율이 높다. 또한 여성은 예·체능계 전공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표 8-16〉 참가자 성별 구성

(단위: 명, %)

	여성	남성	전체
참가자 수	444(57.7)	325(42.3)	769(100.0)

자료: 경기도청 고용정책과 내부자료.

〈표 8-17〉 참가자 교육수준

(단위: 명, %)

학력	여성	남성	전체
고졸	45 (10.1)	37 (11.4)	82 (10.7)
전문대졸	137 (30.9)	101 (31.1)	238 (30.9)
대졸이상	262 (59.0)	187 (57.5)	449 (58.4)
계	444 (100.0)	325 (100.0)	769 (100.0)

자료: 경기도청 고용정책과 내부자료.

〈표 8-18〉 구직자의 성별 전공계열

(단위: %)

전공계열	여성	남성	전체
인문·사회	36.6	16.4	26.5
상경	19.3	18.8	19.1
공학	16.0	53.0	34.5
자연	7.3	3.8	5.6
의학	1.5	0.3	0.9
예·체능	18.8	7.3	13.1
사범	0.5	0.3	0.4
계	100.0	100.0	100.0

자료: 경기도청 고용정책과 내부자료.

4. 경기청년뉴딜사업 수혜자 조사

가.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및 대상

본 설문조사는 경기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른 특성과 차이를 밝히고, 성 인지적인 실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조사 방법은 Web Survey로 현재 경기청년뉴딜 사업을 위탁 진행하고 있는 2개의 취업정보업체의 협조를 얻어 참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800명이며, 이 중 136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17.0%이다. 분석 결과는 SPSS ver. 13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다음 <표 8-19>과 같다. 조사내용은 크게 청년뉴딜 참가 관련 문항(6문항), 청년뉴딜사업 참가 이전 취업 경험 및 구직 시 어려운 점(3문항), 취업 및 직장체험 내용 관련(4문항), 그리고 성역할 태도 문항(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성역할 태도 문항은 성별에 따른 차이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의식들이 직업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포함하였다. 그리고 여성 참가들만을 대상으로 여성이어서 겪는 취업 장애를 함께 질문하였다.

<표 8-19> 조사내용

	조사내용
I. 청년뉴딜참가 관련	참가권역 및 정보취득 경로 (3문항) 사업참가 과정과 도움 및 만족도(3문항)
II. 취업 경험 및 구직 장애요인	이전취업경험 구직장애(3문항) 여성의 취업 장애(2문항)
III. 취업 및 직장체험 내용	직장체험관련업무와 만족도(4문항)
IV. 성역할 및 태도에 관한 의식	성역할 태도(10문항)
V.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4문항)

나.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 <표 8-20>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여성 57.4%, 남성 42.6%로 여성 응답자가 더 많고 전체 청년뉴딜사업 참가자의 성별 비율과 유사하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5.5세이며 여성 24.5세, 남성 26.7세로 남성의 평균연령이 더 높다. 여성은 25세 이하 비율이 69.2%로 높고, 남성은 26세 이상 비율이 81.0%에 달한다. 이처럼 남성참가자의 연령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은 군복무 기간이 포함되고 군복무자의 경우 연령 상한선이 2년 연장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참가자 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여성과 남성 모두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이 가장 높아서 여성은 56.4%, 남성은 74.1%로 남성이 조금 더 높다. 2년제 대학 비율은 여성 30.8%로 남성 24.1%에 비해 조금 더 높다. 남성 고등학교 졸업자는 없으며, 여성 고등학교 졸업자는 5.1%로 학력수준은 남성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전공계열별로는 여성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49.3%로 가장 높고, 자연·공학이 29.6%, 예체능계열 19.7%이다. 남성은 자연·공학 계열이 50.9%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45.6%이다. 전공은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전공 차이는 취업률의 성별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표 8-20〉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령	25세 이하	69.2	19.0	47.8
	26세 이상 - 30세 이하	30.8	81.0	52.2
	계	100.0	100.0	100.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5.1	-	2.9
	2년제 대학 졸업	30.8	24.1	27.9
	4년제 대학 졸업	56.4	74.1	64.0
	대학원 이상	7.7	1.7	5.1
	계	100.0	100.0	10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49.3	45.6	47.6
	교육	1.4	-	0.8
	자연·공학	29.6	50.9	39.1
	예체능	19.7	3.5	12.5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78	58	136

다. 조사 결과분석

1) 청년뉴딜 사업 참여 내용

경기청년뉴딜사업은 현재 4기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수별 참여자 수는 다음 <표 8-21>과 같다. 4기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고, 3기 참가자 응답율이 가장 낮다. 청년뉴딜 사업에 관한 정보 습득 방법은 다음 <표 8-22>와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주변 사람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19.9%, 신문 등 언론 매체 18.4%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사업 참가자들에 의한 정보 전달이 높아 친지 등에게 참가를 권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는 주변 사람 소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남성 22.4%보다 더 높았으며, 신문 등 언론 매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2%였다. 남성은 주변 사람 소개와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22.4%로 같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17.2%로 취업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취업지원 기관을 이용한 경우가 적어 기관을 통한 정보 습득은 다소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청년뉴딜사업 참여 과정은 1단계 개인밀착상담, 2단계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3단계 집중알선 과정으로 구분된다. 1단계 기간은 6주이며, 2단계는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가능하고, 3단계는 3개월에서 2년까지 해당된다.

<표 8-21> 참여 기수

(단위: %, 명)

참여기수	여성	남성	전체
1기	26.9	24.1	25.7
2기	25.6	32.8	28.7
3기	15.4	15.5	15.4
4기	32.1	27.6	30.1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78	58	136

조사 응답자의 청년뉴딜사업 참여 과정을 보면 다음 <표 8-23>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6%가 직장 체험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성이 54.4%로 여성 46.2%보다 더 많다. 그리고 직장 집중 알선 과정이 전체 응답자의 24.4%이며 남성 24.6%, 여성 24.4%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은 여성이 24.4%인 반면 남성은 3.5%로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표 8-22〉 청년 뉴딜 사업에 관한 정보 습득 방법

(단위: %, 명)

정보습득방법	여성	남성	전체
신문, TV 등 언론 매체	19.2	17.2	18.4
포스터, 플랜카드 등 홍보물	3.8	8.6	5.9
주변사람 소개	39.7	22.4	32.4
경기도 홈페이지	9.0	15.5	11.8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17.9	22.4	19.9
기타	10.3	13.8	11.8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78	58	136

〈표 8-23〉 청년뉴딜사업 참여 과정

(단위: %, 명)

참여과정	여성	남성	전체
구직자 밀착 상담	5.1	17.5	10.4
직장 체험	46.2	54.4	49.6
교육 훈련	24.4	3.5	15.6
직장 집중 알선	24.4	24.6	24.4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78	57	135

청년뉴딜사업이 가장 도움된 점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8-24>와 같다. 도움 된 내용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 82.1%, 남성 63.8%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취업’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50.0%로 비교적 높은 반면 여성은 17.9%로 남성의 경우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28.2%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동기 부여는 청년뉴딜사업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 하겠다. 사업 위탁업체의 전문직업상담사들도 여성 참가자들의 자신감 부족을 많이 지적하였는데, 실업 정책에서 기술 습득 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의 자신감 향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업훈련은 여성이 17.9%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한 명도 없었다. 기타로는 ‘심신의 안정’, ‘내가 하고픈 일을 찾았다’, ‘용돈문제 해결’, ‘다양한 직업 관심’, ‘자기 자신감’, ‘나의 경력’에 도움이 되었다. ‘많은 경험과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게 큰 도움’, ‘경기도 사업이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데 도움’, ‘취업을 위한 능력 개별’, ‘정보 공유’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남성은 본 사업을 통해 실질적 취업과 기술 습득을, 여성은 기술습득과 교육훈련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표 8-24> 청년뉴딜사업이 도움이 된 점(복수 응답)

(단위: 명, %)

도움된 점	여성	남성	전체
취업	17.9	50.0	31.6
취업에 대한 자신감	28.2	27.6	27.9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11.5	22.4	16.2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82.1	63.8	74.3
직업훈련	17.9	—	10.3
참가자 네트워크형성 및 소속감	2.6	8.6	5.1
기타	2.6	3.4	2.9
사례수	78	58	136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 <표 8-25>와 같다.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뉴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의 만족도가 3.8로 여성 3.6보다 약간 더 높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사업 참여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참가자들이 본 사업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취업일 것이다. 아직 금년도 사업이 종결되지 않았고 내년까지 참가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 할 단계는 아니나, 남성들의 경우 실질적 취업으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교육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취업 경험 및 구직 장애요인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참가자 절반 이상(51.5%)이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들의 경우 52.6%가 취업 경험이 있었으며, 남성은 50.0%로 여성 참가자들의 취업 경험이 남성 참가자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25> 청년뉴딜사업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단위: 점, 명)

	여성	남성	전체
청년뉴딜 사업 만족도	3.6	3.8	3.7
사례수	78	58	136

<표 8-26> 청년뉴딜사업 참가 이전 취업 경험

(단위: %, 명)

취업경험	여성	남성	전체
있음	52.6	50.0	51.5
없음	47.4	50.0	48.5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78	58	136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다음 <표 8-27>과 같다.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36.6%, 남성 29.6%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주로 주변적인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은 ‘계약이 만료되어서’가 19.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남성 14.8%에 비해 높았다. 계약만료에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은 두 번째가 ‘기타’로 22.2%였으며, ‘임금이 낮아서’가 18.5%였다. 남성은 임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이것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구직 시 어려운 점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8-28>과 같다. 구직 시 어려운 점은 여성의 경우 전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남성 36.2%보다 더 많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 참가자들은 인문사회 계열 비율이 높고 남성에 비해 예체능 계열 비율이 높아 여성들의 전공이 취업 장애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요인으로는 임금 28.2%, 자격증 21.8%, 직장과의 거리 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과 가사 및 육아부담은 각각 7.7%, 5.1%로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남성의 경우 한 명도

〈표 8-27〉 직장을 그만 둔 이유

(단위: %, 명)

사직 이유	여성	남성	전체
근로시간이 길어서	9.8	11.1	10.3
임금이 낮아서	9.8	18.5	13.2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36.6	29.6	33.8
계약이 만료되어서	19.5	14.8	17.6
직장의 휴폐업으로	12.2	3.7	8.8
기타	12.2	22.2	16.2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41	27	68

없었다는 점에서 여성만의 주요 취업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에게 주어진 돌봄의 일차적 책임과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여성 취업 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은 임금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임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공 36.2%, 자격증 32.8%, 업무 내용 29.3%, 직장과의 거리 24.1% 순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자격증에 대한 부담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여성이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41.0%와 10.3%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51.3%에 달했다. 이와 같은 응답은 80년대 중후반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여성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여성의 구직활동에 장애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28〉 구직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직시 어려운 점	여성	남성	전체
전공	43.6	36.2	40.4
자격증	21.8	32.8	26.5
학력	16.7	12.1	14.7
임금	28.2	37.9	32.4
업무내용	15.4	29.3	21.3
근로시간	11.5	5.2	8.8
성별	7.7	—	4.4
직장과의 거리	20.5	24.1	22.1
가사 및 육아부담	5.1	—	2.9
경력부족	2.6	5.2	3.8
기타	7.7	6.9	7.4
계	100.0	100.0	100.0
사례수	78	58	136

취업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일한 조건의 경우 남성을 선호하여 채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현실 때문에 실제로 여성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업 정책은 성별화된 고용조건과 노동 현실을 반영,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직장 체험 내용

현재 청년뉴딜사업을 통해 취업 중이거나 직장 체험을 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여성 응답자 78명 가운데 40명으로 51.3%이며, 남성 응답자 58명 가운데 37명으로 63.8%이다. 본 사업을 통해 취업 중이거나 직장 체험을 하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중이거나 직장 체험 중인 경우 취업 형태 비율을 보면, 다음 <표 8-29>와 같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정규직 비율이 높지만 남성은 70.3%로 여성 45.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여성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나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취업된 경우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55.0%에 달해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 형태가 남성에 비해 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노동시장이 유연화 됨에 따라 고용불안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현재 비정규직의 2/3가 여성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성이 참가자의 취업 형태에도 반영되어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형태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29> 취업 중인 경우 취업형태

(단위: %, 명)

취업형태	여성	남성
정규직	45.0	70.3
계약직	30.0	16.2
파견직	—	8.1
임시직	22.5	2.7
파트타임	2.5	2.7
계	100.0	100.0
사례수	40	37

취업 또는 직장 체험 중인 경우 업무 관련 만족도는 다음 <표 8-30>과 같다.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 대체로 높은 편이며 여성이 3.65로 남성 3.59보다 약간 높다. 근무시간 만족도는 여성이 3.55로 남성 2.86에 비해 만족도가 높으나, 임금 만족도는 여성이 2.48로 남성 3.00에 비해 낮다. 그리고 업무 내용 만족도는 여성 3.33, 남성 3.24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성은 근무시간 만족도가 낮고 여성은 임금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높아 근무시간이 길고, 여성은 비정규직 고용형태 비율이 높아 근무시간 만족도는 높으나 임금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취업하고 있는 여성참가자들 중 55%가 비정규직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어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8-30〉 업무 만족도(5점 척도)

(단위: 점, 명)

업무만족도	여성	남성
근무시간	3.55	2.86
임금	2.48	3.00
업무내용	3.33	3.24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	3.65	3.59
사례수	40	37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

5.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가. 입안 및 기획 단계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는 사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성별 이슈를 파악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즉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입안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확인하고 기획안에 이를 반영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2005년도 경기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청년뉴딜사업을 도입·추진, 대상은 ‘청년층 구직자 대상’으로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을 하며 방법은 3단계로 운영’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 안에는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또 고학력 실업자 중 여성 비율이 더 높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지금 취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노동시장에서도 고용불안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실업자’에서 반드시 성별 차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 면담 결과, 구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에 기초하여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맞춤형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획과 진행에 특별히 성별을 고려한 지원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당해 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부 제한이 있지만 차년도 사업 계획에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취업 장애를 반영하여 사업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취업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정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세력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으로 여성의 진입장벽을 고려한 기획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외국의 청년층 대상 고용실업정책의 경우 효율성 이외에 형평성 및 기회균등 차원에서 성, 학력, 인종 등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전병유·이상일, 2003).

다음으로 검토되는 것은 성별분리통계인데, 본 사업이 초기 진행이고,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별로 성별분리통계는 미비한 수준이다. 담당자들은 구직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정도에 따라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특별히 성별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볼 수 있

듯이 여성들은 인적자본의 특성 외에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기획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향후 사업 진행에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성별분리 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별화 된 노동시장의 현황과 참여자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성 인지적인 성별분리통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1995년부터 유엔은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통계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 참가자 전체를 파악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공 영역별, 학력별, 취업상태별 등 보다 세분화된 성별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추진은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시행되며 그 목적은 도내 청년실업해소에 두고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1조에 법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사업이 근거하고 있는 법 조항에서 성별 이슈가 고려되고 있는지 보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년취업자’ 는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괄하는 성 중립적(gender neutral)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근거조항 뿐 아니라 법 전 조항에서 ‘청년미취업자’ 는 성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성별로 인한 장애와 차별을 경험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사업 관련 항목 뿐 아니라 법안 전 조항에 노동시장의 성별 차이와 성차별, 그리고 여성실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에 성 인지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 참여

사업이 기획되고 입안되는 단계인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였는가

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과 진행에 젠더 의제,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애와 특수한 이해나 요구들을 반영하고 성 인지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성위원들이 적절하게 참여하게 될 때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심의·의결되는 과정인 관련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수가 어느 정도로 확보되었는가 하는 점이 성별영향평가의 지표로 검토되고 있다.

청년뉴딜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뉴딜사업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단은 모두 6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은 6명 중 1명으로 16.7%이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어서 관련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동등하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은 이미 1990년대부터 성 인지적 정책을 위해서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일정하게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업에 여성참가자 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남성참가자들에 비해 여성참가자들의 취업 정도가 낮고, 취업 형태도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성별 특성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위원비율 확보가 중요하다.

경기청년뉴딜사업 소관부서인 경기도청 고용정책과의 공무원 구성을 보면 남성 12명(60%), 여성 8명(40%, 계약직 3명 포함)로 전체 20명 중 남성 비율이 더 높고, 직급별로 보면 4급에서 6급까지 상위직에 남성이 많고 여성은 7급 이하 비율이 높다.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은 4-5급 비율이 23.3%이나 여성은 2.9%에 불과하고 남성 8-9급 비율은 12.3%이고 여성은 58.8%에 달해 여성은 주로 하위직급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업의 성별영향 예측

사업의 성별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청년뉴딜사업 참가자 선정 시 기준을 보면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화 된 노동시장의 특성과 성별 차이를 통해 본

사업 시행 시 여성 참가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여성은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으리란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자’는 성 중립적 집단으로 여겨져 사업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집행 단계

1)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집행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들 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혜정도가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위해 배당된 예산은 총 38억 22백만으로 청년뉴딜사업 15억원과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 제공 23억 22백만 원 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 중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고려하는 예산액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도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편성에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경기청년뉴딜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 인지적 예산의 편성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국회결의안에서도 예산편성의 시행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성 인지적 예산은 1984년 호주에서 처음 시도되고 난 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스웨덴, 영국,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 5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재분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필리핀의 경우는 예산의 5%까지 성 인지적 정책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해 성인지 정책과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보내고 이에 의거해 예산편성 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다.

본 사업이 모델로 하고 있는 영국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항목 중 예산분석을 예시하면, 영국 뉴딜프로그램 성 인지 예산분석을 통해 예산의 8%만이 한부모에게 할당되는데 한부모의 95%가 여성이고 예산의 57%는 젊은 층에게 가는데 그들 중 여성은 27%라는 점을 밝혀내고 뉴딜프로그램

램이 남성가장과 안정적 가족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성 인지적 예산편성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경기청년뉴딜사업 전체 사업 참가자 중 여성 비율이 높고 따라서 수혜의 정도가 높아 성 인지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은 수혜 정도를 성별 간 동일하게 편성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컨대 장애인이나 여성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의 전달 및 홍보

정책집행단계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두 번째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가 성 인지적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성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접근하는데 격차가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홍보방식이 성별 간 격차를 초래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이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업에 참가가 결정되고 나면 참가자들은 각기 보유한 인적자본의 특성에 맞추어 참가과정이 선택되고 취업전략이 세워지며 그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어 성별 간 격차는 별로 없다. 특히 청년뉴딜사업 시행은 취업정보업체를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수혜자 조사 결과 취업정보업체를 통한 정보 접근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성별 차이는 드러나지 않으나 취업정보업체의 정보 접근성의 성별 차이는 향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검토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홍보가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있어서 성별격차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수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에서 여성참가자와 남성참가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참가자의 경우 주변사람의 소개를 통하는 경우가 높아 39.7%인 반면, 남성참가자들의 경우는 주변사람의 소개가 22.4%로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성별 간에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는 본 사업을 구직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앙일간지 뿐만 아니라 지방지 및 무가지에 사업실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사업 홍보를 요청하고, 도 관련 홍보지와 사군 홈페이지, 케이블 TV, 경기도 홍보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브로셔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 외 워크넷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권고하는 우편을 발송하고,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 메일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에서 여성이 공적인 통로를 통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해 경기청년뉴딜은 개별정보방법을 병행하여 접근성의 정도를 높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 평가 단계

1)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평가단계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정책의 수혜가 성별로 형평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사업에는 여성참가자 비율이 57.7%인데 반하여 남성참가자는 42.3%로 여성의 수혜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수혜의 정도를 자칫 기계적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양성평등성을 단지 수혜의 성별 비율이나 참여자 수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뉴딜사업의 경우, 여성참여자 수가 높은 이유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비정규직화 되는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혜자 조사결과에서도 ‘여성’이라는 점이 취업에 장애가 되는지 묻는 문항에서 여성응답자 중 51.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결과,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여성 참여자 수가 많아진 것이므로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수혜자 성비나 참여자 수로 양성평등을 평가할 수는 없다.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는 3.7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한다.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여성참가자들의 만족도가 3.6으로 남성참가자들의 만족도 3.8에 비해 낮다. 아직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 진행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은 취업 정도와 고용상태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수혜자 조사 결과 여성의 취업 정도는 17.9%인데 반해 남성은 50.0%로 큰 차이를 보이며, 또 여성들은 취업한 경우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장 궁극적인 결과로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장으로의 실질적인 진입이다. 따라서 취업의 여부는 본 사업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고용상태에서의 질적 수준이 여성의 만족도를 낮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은 구직자인 공급자의 요구보다는 노동시장의 원리에 더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들의 취업을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은 정책의 집행이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데에 이 사업이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청년실업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의미가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가운데서 여성의 경제활동정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더욱이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낮아 최하위권에 속한다. 2002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4년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25-64살 연령대의 여성인구 비율이 13%로 OECD 국가들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 취업률은 56%로 OECD 국가들 중 29위를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특히 저조하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여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낙후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 또한 여성참가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세력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다.

3) 평가 결과의 환류

성별영향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분석하는 항목은 사업으로 인한 성별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기

청년뉴딜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환류장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결과보고서에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00년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 부록으로 성별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라. 소결 :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청년뉴딜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8-31>과 같다.

〈표 8-31〉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1. 성별 이슈 및 관련성 파악	- 청년뉴딜 사업 계획서 - 성별분리통계 활용	- 실업과 관련한 성별분리통계는 있으나 실업에서의 성별 차이나 고학력 여성의 실업 문제 등 성별 이슈가 사업 계획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2.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 수단	- 청년실업 해소 관련법 및 계획	-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시행 근거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는 사업 대상을 ‘청년실업자’로 동일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목표와 계획에 성 인지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3. 양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	-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 고용관련 공무원 여성 비율 및 직급 ※ 공무원 조사 결과	- 청년뉴딜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뉴딜사업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단 6명 가운데 여성은 1명으로 16.7%임. - 고용정책과 공무원 구성에서 남성은 주로 고위직급 비율이 높고, 여성은 하위직급에 많이 있음.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은 4-5급 비율이 23.3%이나 여성은 2.9%에 불과하고 8-9급 남성 비율은 12.3%이고 여성은 58.8%에 달해 여성은 주로 하위직급에 몰려있음.

(계속)

〈표 8-31〉 청년뉴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계속)

평가 지표	분석 방법	분석 내용
4. 사업의 성별 영향 예측	- 경기청년뉴딜사업 참가자 선정 기준	- 참가자 선발 시 여성을 고려하지는 않음
5. 성 인지적 예산	- 경기청년뉴딜사업 예산	- 경기청년뉴딜사업 예산에서 성 특정적 예산, 성 형평적 예산 항목은 없었음.
6.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 홍보 방법 ※ 수혜자 조사 결과	- 구직자 각자의 인적자본 특성에 맞추어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서비스 전달에서 매우 긍정적임 -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정보 접근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나타나지 않았음. - work-net에 구직 등록된 사람 각각에게 개인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발송·사업을 홍보하여 정보접근성에 성별격차는 없음. 개인별 홍보를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7.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사업 참여자 현황 ※ 수혜자 조사 결과	- 여성의 참여가 57.7%로 남성 42.3%보다 더 높으나 수혜자 조사결과 취업정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수혜자 조사 결과 만족도의 정도는 높으나 여성이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약간 낮음. 그 이유는 취업정도가 남성에 비해 낮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중이 높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사업 결과 보고	- 여성의 참여가 많고 여성의 취업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주류화에 기여하는 점이 높음.
9.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결과 보고	- 금년 처음 시작되는 시범사업으로 아직 결과보고가 되지 않음. 향후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사업기획에 반영되기 기대함.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를 고려한 기획마련이 필요.

6. 요약 및 제언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정책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정부정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수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차적인 행정조직체계로서 주민과 행정이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영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있는 각종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도내의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여성참가 정도가 높아 여성의 취업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 취업률이 저조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의 시행은 청년실업 해소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가. 노동시장 성차별에 따른 여성 실업자 지원 방안 모색

1)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청년층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이다. 취업은 구직자의 요구보다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일부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성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는 2006년도부터 그간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어 왔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민간부문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몇 년째 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도입하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3% 감면해 주고, 정부 조달 계약상 가산점을 부여하며 행정작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조치는 1000명 이상 사업장(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적용되게 되어 대

상 기업은 400개 정도로 취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조치가 미치는 상징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까지 고용인원을 계속 낮추어 적용되게 되므로 점차 해당기업의 수가 늘어나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치의 시행과 진행추이를 사업의 진행과정에 잘 활용하여 여성참여자들의 취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를 위한 성인지적인 프로그램 개발

여성청년층은 사회화 과정에서 통해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진로나 경력개발과 관련된 지도나 관심을 적게 받는다. 구직과정에서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데, 실무자들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많이 지적하고 있다. 대학생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자신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성들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감 고양 프로그램 외에도 참가자들에게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뉴딜사업은 실업자들의 취업이 주 목적이지만, 취업 뿐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고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업무에 의한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이 이직과 전직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과 특히 성희롱과 같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성 인지적 정책 수행 여건 강화

1) 성별분리통계의 구축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참가하고 있는 구직자들과 노동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각 참가자들의 인적자본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별분리통계는 성별 간

참가자들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고, 이후 사업 진행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2) 공무원 및 실무자의 성 인지성 강화

고용관련 담당 공무원의 성 인지성 교육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부서별로 교육 경험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성별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부서의 경우 성 인지력 향상 교육 경험이 많지 않으며, 남성의 교육 경험이 여성보다 적어 남성 비율이 많은 부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경기청년뉴딜의 사업 기획은 경기도가 하지만 취업정보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의 진행 특성상 참여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성 인지성도 동시에 요구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성을 교육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의사결정과정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청년뉴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아직 관련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사업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평가단에 참여하는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여 여성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결론 및 제언

- 1. 단기 과제
- 2. 장기 과제

지금까지 경기도 정책 가운데 청소년문화, 노인복지, 농업인력육성, 공공근로사업, 청년 실업정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였다. 사업 및 정책을 기획 및 입안 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로 나누어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행정 자료와 통계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해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주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추진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1. 단기 과제

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2002년 12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동법에 정책의 성 분석 또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근거 조항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성 분석 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에 성 분석의 근거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2000년에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구분)에서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와 소속행정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고 하여 성별분리통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성 분석 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근거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4년 경기도 연구 용역 과제였던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에서도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 법규 개정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갖춘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1999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

례」를 2004년에 개정하여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2항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천시의 경우도 2004년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제8조(정책의 분석·평가)에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산시 또한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2003년에 제정하고, 제9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제2항에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나인 수원시도 2004년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 “시장은 소관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법규를 통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근거 조항을 갖추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지속적 이행과 더불어 31개 시군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나. 공무원 성 인지 훈련 확대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 과정 개발

공무원 성 인지 훈련은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주요 도구 중 하나이며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올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에서도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경기도는 200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와 시군의 여성부서 및 인사부서 과장 등 공무

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02년에도 도와 시·군의 여성부서 및 인사부서, 그리고 예산 부서 계장 등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교육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10,500천원이 지원되었다(경기도, 2003). 2003년에는 도 의원 및 도 위원회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전년도까지 년 1회 실시하던 교육을 직급별로 3기로 구분하여 대폭 확대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30백만 원이 지원되었다(경기도, 2004).

2004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예산을 지원받아 31개 시·군의 일선업무 수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급,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빠르게 정부의 역점 사업을 선도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각 시·군별로 40명씩 연인원 1,200여명의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5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 시·군 공무원 1,600여명이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받았다.

이처럼 매해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인원을 증원하는 등 경기도는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2006년에는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정책개발과 교육훈련 기능을 갖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개원하여 경기도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과정은 크게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심화과정 안에 성별영향평가 및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성별영향평가의 보다 체계적인 이해와 정착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다. (가칭)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성별영향평가 도입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 정착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풀 구성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2005년 개정된 「여성

발전기본법시행령」 제8조(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에서도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별영향평가 자문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 등(안 제10조의2 신설)”을 포함하여 자문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이 여성 및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 2005년 지침에 따르면 외부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심층 평가”와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향후 기초자치단체까지 보다 확대될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지원과 자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가칭)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자문위원회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생산하고, 공무원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가칭)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분석 주체는 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문위원단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 장기 과제

가. 추진 체계 강화

1)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담당관 지정

여성정책책임관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 중 하나는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2004-2008)은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여성 부문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추진 체계 정비와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는 도정 전반에 여성정책의 통합을 가시화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여성정책책임자를 지정하여 여성정책의 방향수립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감에 따라 여성지위향상이라는 정치경제사화문화 전반의 지위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도의 전체 부서와 시·군 부서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기도 하였다(경기도, 2003).

그러나 경기도의 행정조직은 중앙부처와 다르므로 도의 전체 부서와 시·군 부서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담당관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본청과 2청 기획관리실장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각 부서 및 31개 시·군에 여성정책을 관할하는 공무원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정책책임관은 각 부서의 여성정책담당관 전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함으로써 모든 부서에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당해 정책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는 경기도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성 주류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2) 여성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또한 『경기도 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2004-2008)에 따르면 원활한 여성정책 추진 도모를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여성정책협의회’와 ‘도여성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무엇보다 여성정책 부서와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정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예처럼 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관련 부서에 여성정책담당자를 지정)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정책 기구 역할 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지정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부서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정책 및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담당 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성별영향평가는 가족여성정책국 여성인력계 소관이며, 여성인력계는 성별영향평가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다. 2005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면서 성별영향평가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는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모든 부서와의 광범위한 조정과 업무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이다. 따라서 여성정책기구는 성별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고하고,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 자문, 그리고 행정적 지원 제공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성정책부서에 성별영향평가 전문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각종 자료 제공과 업무 협의, 그리고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 인지적인 지역 통계 개발

성별분리통계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 자료이다. 올해 5월부터 부서에 따라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성별분리통계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입안 및 기획단계에서 성별분리통계의 활용, 결과보고 시 성별분리 실적 보고 등 일차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성 인지적인 지역통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사업을 입안 및 기획할 때 필요한 것은 지역통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 지표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성 인지적인 지역 통계를 위한 지표 개발 작업과 지역통계의 홍보 등이 요구된다.

다. 성별영향평가 방법 및 지침 보완

성별영향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 주체를 이원화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이원화 하여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로,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을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업을 해당 부서 및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본 연구처럼 외부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층평가로 이원화하여 상호 유기성을 기반으로 경기도정의 성 주류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성별영향평가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사후 평가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경우 심층 평가형태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사후 평가는 정책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심층평가와 자체 평가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부서가 아닌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경우 중앙에서 기획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민 사업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침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지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 지침은 2004년과 2005년에 개발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이 있으며, 경기도가 2004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한 성별영향분석 매뉴얼이 있다(〈표 2-2, 2-3〉 참조). 그러나 지침이 추상적이고 답을 구하는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 직접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획 및 입안 단계에서 어떤 행정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예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무원들이 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 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용어상의 문제인데,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가 평가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없는 외부 기관에서 부서 및 담당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

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의 사업 선정 시 먼저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체 평가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사용하고, 심층 평가의 경우 연구 분석의 의미가 더 강하므로 ‘성별영향평가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라.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

경기도는 ‘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2004년에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31개 시·군 4개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 주류화나 성별분리통계 등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2008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어느 수준, 어느 단계까지 확대 실시할 것인가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성 주류화를 위하여 경기도 뿐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책부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확대를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범위,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경기도 사례의 경우 부서나 담당자 명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길훈. 2003.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와 대응방안.” 「대학교육」.
- 강대구 외. 2004.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 강병구. 2001.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회 발표문.
- 강선희. 2001. “한시적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인천대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석사논문.
- 경기도. 2002. 「경기2020: 비전과 전략」.
- _____. 2002. 「공공근로사업백서」.
- _____. 2003. 「경기여성백서」.
- _____. 2004. “가족여성정책국 행정감사 자료.”
- _____. 2004. “농정국 행정감사 자료.”
- _____. 2004. 「경기도 경제백서」.
- _____. 2004. 「경기비전 2006」.
- _____. 2004. 「경기여성백서」.
- _____. 2005. “2005년 가족여성정책국 업무보고 및 계획.”
- _____. 2005. “2005년 농정국 주요업무보고.”
- _____. 2005. ‘경기도 보건복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공청회 자료집.
- _____. 2005. 「2005년 노인복지사업계획 계획」.
- _____. 2005.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혁신포럼」 자료집.
- _____. 2005. 「청소년 육성시행계획」. 2003-2005 각년도.
- 경기여성단체연합. 2005. 「NGO와 GO가 함께 하는 성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2005년 8월 30일.
- 권구영 외. 2004. 「경기 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경미 외. 200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아세아여성연구」 40: 87-104.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 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의 문제와 개선방안.”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인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농촌생활연구소.
- 김정희. 2002. “성 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예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1). 한국여성학회.
- 김광혁. 2003.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분석.” 「상황과 복지」 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김근홍 외. 2004. 「2004년 청소년문화존 사업평가」. 강남대학교.
- 김나연. 2003. “여성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본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홍 외. 2004. 「청소년 생활 통계연보」 1·2.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양화 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양희 외. 2004. 「성인지 전략기획 연구: 성 인지 정책 지침 개발」. 여성부.
- 김양희 외. 2004.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경기도.
- 김양화김영옥박영란김은희. 2002. 「한국의 젠더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UNDP.
- 김양희이수연김혜영. 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란. 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만. 2003.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근로참여자 의식조사.” 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옥김경미·박재규김이선. 2005.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농림부.
- 김영옥김이선.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김영혜. 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한국인구학」 27(1): 1-30.
- 김원홍 외. 2004. 「지자체 성 주류화 기반분석 및 여성부와의 연계방안」. 여성부.
- 김익기 외. 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재인 외. 2001.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 외. 2003.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경기도.
- 김정석. 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59-77.

- 남정림. 1992.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법.” 『여성연구』 10(4): 85-110.
- 노우영. 2002. “생산적 복지 관점에서의 청년실업자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
- 노준기. 1998. “여성실업과 공공근로사업.”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경기포럼.
- 농림부. 2001.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2001-2005)」. .
- _____. 2005. 「농림사업시행지침」. .
- 문미경·김혜영. 200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여성부.
-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 백서」. .
-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성정 외. 2003. 「정책의 성별성향분석 평가 선행모범사례 연구」. 여성부.
- 박용찬. 2003.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구축.” 『사회정책논집』 15(1).
- 박재규 외. 2004.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전라북도.
- 변화순 외. 2005. 「서울시 보건·복지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서울시.
- 보건복지부. 2004. 2005.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
- _____. 2005. 「200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
- 서정희. 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신경희. 2003. 「서울시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여성가족부. 2005.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 _____. 2005.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자료집.
- 여성부. 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 오은진 외. 2004. 「재직자 직업훈련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노동부.
- 오진태. 2003.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 유순덕 외. 2003. 「경기도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경기도·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
- 유순덕 외. 2004. 「경기도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

- 유진이. 2002. 「청소년수련관의 공간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무용 외. 2004.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미경. 1998. “경기도 여성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실태와 정책과제.”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경기여성포럼.
- 이병기 외. 2003. 「WOT/DDA 농업협상 전망과 경기도 농업의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민 외. 2004.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실태 및 정책방안」. 여성부.
- 이상우. 2005. “주요경제현안.” 현대경제연구원.
- 이선주. 2003. 「경기지역 기혼여성 취업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소정. 2000. “제3섹터형 고용창출 방식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이영세 외.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부·농림부.
- 이원숙. 2000. “공공근로 여성가족의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35.
- 이정표. 2004. “여성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실태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7(1).
- 이주희. 2001.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 「한국사회학」 35(1).
- 이효선. 2002. “청년실업의 사회학적 의미와 정책대응” . 「사회과학연구」. 제16집.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05. 「올바른 여성농업인육성 2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농민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병유·이상일. 2003.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 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화 외. 2003.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성숙 외. 2004.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
- 조진우. 2005. “2005년,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과 지자체 여성정책의 흐름.” 「2005년 성 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 심화교육자료」. 여성민우회.

- 주재산·김성익. 2004. 「여성통계연보」. 여성개발원.
- 진원대. 2003.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 동국대 사회과학 대학원 석사논문.
- 참여복지기획단. 2003. 「참여복지5개년계획」.
- 채창균. 2003. “유럽주요국가의 청년실업대책” . 「World labor」 .
- 최이숙. 2002. “1970년대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80. 1985. 1990. 1995.
- _____. 2002. 「2002년 생명표」.
- _____. 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_____. 2005. 「2004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 _____. 2005. 「2005 고령자통계」.
- _____. 2005.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 _____.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 _____. 2005. 「2005 청소년 통계」.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대책.” 「제12차 KRIVET HRD 정책포럼」 자료집.
- 홍은광. 2000. “대중문화 교육과 교육문화적 실천.” 「진보교육」 4호. 진보교육연구소.
- 헤럴드 경제. 2005. 6. 24.
- Corner, L. 1999. “Strateg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Capacity Building for Gender Mainstreaming.” A Paper Presented at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Bangkok, Thailand .

- Moser, C. 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Theory, Practice and Training. 장미경 외 역. 2000.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원출판.
- 슈타글러. 2005. “성 주류화를 위한 교육업무.” 「FES-Information-Series」.
- UNESCO. 2003. "The Interface of Gender and Culture". presentation to the participants of the UNESCO gender training Workshop. UNESCO.

부 록

ID			
----	--	--	--

『경기도 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경기도 지역 실정을 고려한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책개발 전문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현재 수행 중인 『경기도 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 공무원의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업무 경험,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성 인지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 처리 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적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05년 8월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진 : 이은아(연구 책임자), 김영혜, 이해진, 유정미

연락처 : 031-220-3952, 3942 euna@gfwdi.or.kr

팩 스 : 031-220-3929

I. 성 인지(性 認知) 정책 이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다음 용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해당 번호에 V 표 해 주십시오.

용 어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차이	①	②	③	④
2) 성 인지 정책	①	②	③	④
3)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①	②	③	④
4) 성별영향평가(성 분석, gender analysis)	①	②	③	④
5) 성별분리통계(성 인지 통계)	①	②	③	④
6)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	①	②	③	④

※ 참고 : 주요 용어 설명

- 성 인지 정책 : 정책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양성간의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
- 성 주류화 :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점검 그리고 평가과정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
- 성별영향평가(성 분석) : 성 인지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정책 사업이나 법·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분석하는 방법

2. 다음은 양성평등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계획·지침 등입니다. 귀하는 다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V 표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1) 여성발전기본법	①	②	③	④
2) 여성정책기본계획	①	②	③	④
3) UN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①	②	③	④
4) UN 여성차별철폐협약	①	②	③	④
5) 경기도여성발전조례	①	②	③	④
6) 경기도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①	②	③	④

3. 다음은 중앙 정부 및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귀하는 다음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V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들어본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1)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4년 10개 주요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시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일반정책에 대한 성 분석(성별영향평가, gender analysis)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3) 『여성발전기본법』과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 기본5개년시행계획』에 따라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다음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성별 영향(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거나 조건입니다. 귀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음 항목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V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약간 있음	충분히 있음
1) 성별(분리) 통계 자료	①	②	③	④
2) 자문 가능한 여성정책 전문가	①	②	③	④
3) 성 인지 정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인식	①	②	③	④
4) 관련 법·조례	①	②	③	④
5) 성별영향평가 지침	①	②	③	④
6) 국내외 사례	①	②	③	④
7) 예산 지원	①	②	③	④
8)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	①	②	③	④
9) 유관기관간의 협조	①	②	③	④
10)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	①	②	③	④

5. 귀하는 ‘양성평등’ , ‘성 인지력 향상’ 또는 ‘성 인지 정책’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 6번 문항으로)

51. (있다면) 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실제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전혀 도움이	거의 도움이	어느 정도	매우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5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교육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 _____ ②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 _____ ③ 업무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_____ ④ 업무에 반영할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 _____ ⑤ 기존 업무가 바빠서
- _____ ⑥ 교육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 _____ ⑦ 기타 ()

II.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는 다음 항목과 같은 업무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업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V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업무 경험		필요성			
	있음	없음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업무를 계획하거나 수립할 때,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차이를 고려함.	①	②	①	②	③	④
2)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함.	①	②	①	②	③	④
3) 업무를 계획하거나 수립할 때,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활용함.	①	②	①	②	③	④
4) 업무를 기획수행·평가할 때, 관련 위원회나 자문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고려함.	①	②	①	②	③	④
5) 성별에 따라 사업 수혜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함.	①	②	①	②	③	④
6) 사업 내용을 수혜자인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충분히 홍보·전달함.	①	②	①	②	③	④
7) 사업 결과를 작성·보고할 때,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작성함.	①	②	①	②	③	④
8) 사업 결과를 평가 할 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 수혜를 받았는지를 평가함.	①	②	①	②	③	④
9) 사업 수혜 정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날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함.	①	②	①	②	③	④

7. 귀 부서의 업무 중 앞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추진할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 8번 문항으로)

7-1. (있다면) 그러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8. 다음은 외국의 성 인지 정책 사례들입니다. 다음 사례들처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경기도 정책(사업)에 도입·반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한 네 영역 (농업 정책, 노인 정책, 청소년 정책, 고용 정책) 중 귀하의 업무와 관련되는 영역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	전혀 필요 없음	거의 필요 없음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1) 베트남에서는 농기계가 남성 위주로 개발됨으로써 여성의 신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여 여성 농민에게 적합한 소규모 농기계를 개발·보급하였다.	①	②	③	④
2) 미국에서는 전체 농업경영주 중 여성의 비율에 비해 여성농업경영인에게 대부금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아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대부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①	②	③	④

노인 정책	전혀 필요 없음	거의 필요 없음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1) <i>캐나다</i> 에서는 정부 조사결과,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보다 길지만 만성 유병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건강교육 및 트레이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i>독일</i> 에서는 여성이 육아로 인해 고용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어 노후에 남성보다 적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연금법에서 소득점수를 가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청소년 정책	전혀 필요 없음	거의 필요 없음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1) <i>미국</i> 에서는 십대 여자 청소년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공한 여성 예술가와 십대 여자 청소년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①	②	③	④
2) <i>호주</i> 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여자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①	②	③	④

고용 정책	전혀 필요 없음	거의 필요 없음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1) <i>덴마크</i> 에서는 건축학 및 토목학과 여성 졸업생이 1/3정도이지만 이 분야에 일 자리를 얻는 여성들의 수는 훨씬 적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들에게 건설업 분야의 훈련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①	②	③	④
2) <i>EU</i> 에서는 ‘유럽빈곤퇴치네트워크’의 각 이사회/협의회에 ‘성 주류화’ 경험자를 1명씩 포함함으로써, 성 불평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Ⅲ. 여성과 남성의 역할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9.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V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 으로 동의함
1)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3)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재산을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①	②	③	④
5)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타고난 지적(知的)인 능력의 차이는 없다.	①	②	③	④
6) 대학에서 취업 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교시양성과정에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①	②	③	④
9) 여자가 매우 적은 직업에 일정한 비율의 여자를 뽑도록 하는 '여성할당제'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10)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11)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직원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여자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특혜를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14)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15) 광고에서 여성의 몸을 선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지 여성 차별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VI.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남성 ____ ② 여성 ____
2. 출생년도	19 ____ 년
3. 학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중퇴·재학 포함) _____ ② 전문대 졸업(중퇴·재학 포함) _____ ③ 4년제 대학 졸업(중퇴·재학 포함) _____ ④ 대학원 이상(중퇴·재학) _____

■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4. 현 소속부서	□ 도 _____ (과) □ 시·군 _____ (과)
5. 직 군	① 일반직 ____ ② 별정직 ____ ③ 전문계약직 ____ ④ 기능직 ____
6. 직 급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① 1급 ____ ② 2급 ____ ③ 3급 ____ ④ 4급 ____ ⑤ 5급 ____ ⑥ 6급 ____ ⑦ 7급 ____ ⑧ 8급 ____ ⑨ 9급 ____ ⑩ 기타 ____ (전문계약직 공무원) ① 가급 ____ ② 나급 ____ ③ 다급 ____ ④ 라급 ____ ⑤ 마급 ____
7. 현 부서 근속기간	____ 년
8. 여성관련부서 재임 경험	① 있다 (년 개월) ____ ② 없다 ____

※ 여성관련부서란 (가족)여성정책국/과, 여성국/과, 여성○○과 등을 말함.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D			
----	--	--	--

경기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수혜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경기도 지역 실정을 고려한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책개발 전문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현재 수행 중인 『경기도 청소년 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 내용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결과는 성 인지적인 청소년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학생의 응답은 통계 처리 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8월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담당자 : 이 은 아(031-220-3952), 김 영 혜(031-220-3942)

이메일 : euna@gfwdi.or.kr

3-1. **(있다면)** 현재 학생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 학교 (교내 공식 동아리)
- ② 청소년 수련 시설(청소년수련관, 회관, 문화의 집 등)
- ③ 지역사회 단체 또는 시설(사회복지관 등)
- ④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조직(또래 모임 등)
- ⑤ 기타 ()

3-2. 현재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문화예술관련 활동(댄스, 코스프레 등) ② 사회봉사관련 활동
- ③ 스포츠관련 활동 ④ 학습관련 활동
- ⑤ 종교활동 ⑥ 기타 ()

4. 청소년 수련 시설(예: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4-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5번 문항으로)

4-1. **(있다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 해 주십시오
(3개까지 중복 응답 가능).

- ① 댄스연습실 ② 음악연습실
- ③ 공연장 ④ 영상 편집실
- ⑤ 문화 활동실(미술, 서예 등) ⑥ 과학 활동실
- ⑦ 어학연습실 ⑧ 도서관(독서실)
- ⑨ 컴퓨터실 ⑩ 정보 센터
- ⑪ 상담실 ⑫ 인터넷 방송국
- ⑬ 축구장(풋살) ⑭ 수영장
- ⑮ 농구장, 배구장 ⑯ 당구장(포켓볼)
- ⑰ 체력단련장(헬스장) ⑱ 탁구장
- ⑲ 인라인 스케이트장 ⑳ 기타 ()

II. 다음은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5. 현재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 | |
|-------------------|-------------------------------|
| ① 옥외 광고 및 홍보물을 보고 | ② 청소년 관련 시설을 통해 |
| ③ 신문, 방송, 소식지를 통해 | ④ 친구/선후배들을 통해 |
| ⑤ 부모님(가족)을 통해 | ⑥ 학급/학교/선생님을 통해 |
| ⑦ 동아리를 통해 | ⑧ 인터넷을 통해 |
| ⑨ 그냥 우연히 | ⑩ 기타 () |

6. 프로그램에 누구와 함께 참여하였습니까?

- | | |
|-------|-------------------------------|
| ① 혼자서 | ② 친구 또는 선·후배 |
| ③ 동아리 | ④ 학급/학교 |
| ⑤ 가족 | ⑥ 기타 () |

7. 프로그램 진행 장소까지 오는데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을 무엇입니까?

- | | |
|-------|-------------------------------|
| ① 걸어서 | ② 자전거, 오토바이 |
| ③ 버스 | ④ 지하철 |
| ⑤ 승용차 | ⑥ 기타 () |

8. 프로그램 진행 장소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 | | |
|-------------------|-------------------|
| ① 10분 이내 | ② 10분 이상 - 30분 미만 |
| ③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④ 1시간 이상 |

9.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중복 응답 가능).

영역	프로그램 내용	
스포츠 활동	① 풋살 ③ 족구 ⑤ 배구 ⑦ 단체 줄넘기 ⑨ 스킨스쿠버	② 축구 ④ 농구 ⑥ 인라인 스케이트 ⑧ 수영 ⑩ 기타 ()
과학 활동	① 로봇제작	② 기타 ()
공예 활동	① 비즈 ③ 가족책만들기 ⑤ 도자기 제작	② 풍선아트 ④ 문화지도 ⑥ 기타 ()
문화 활동	① 문화기획기자단 ③ 방송제작연출	② 뮤지컬 배우기 ④ 기타 ()
공연	① 댄스 ③ 수화	② 노래 및 연주(밴드) ④ 기타 ()
기 타	① 직업상담	② 기타 ()

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화관, 문화의 집) ② 실외 경기장
 ③ 공원·거리 ④ 기타 ()

11.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1일 기준)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17. 다음은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만족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9. 여학생 또는 남학생이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19-1번 문항으로)

② 없다 (→20번 문항으로)

19-1. (있다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Ⅲ. 다음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다음 문장을 읽고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2. 학급의 환경미화와 같은 활동은 여학생이 담당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체육교육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강조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빠를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맞벌이를 해도 가사(집안 일)과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7.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8.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남편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고위 관리직에서 여자가 부족한 것은 여자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10. 여자는 직장생활을 해도 남자만큼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11. 정치인은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12. 남자가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13. 남자들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학생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14. 여자들이 축구나 야구를 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15. 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IV. 다음은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학생의 나이는?(세는 나이로) ()세
3.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해당사항 없음
4. 학생의 학년은? ()학년
5. 학생의 학교 형태는?

 ① 여학교 ② 남학교
 ③ 남녀공학 ④ 해당사항 없음
6. 지금까지 남녀평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D			
----	--	--	--

노인일자리 사업 수혜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경기도 지역 실정을 고려한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책개발 전문기관입니다.

본 개발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경기도 정책 성별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르신의 참여 내용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이 하신 응답은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담당자 : 김 영 혜 (031-220-3942), 이 은 아(031-220-3952)

이메일 : kyh0303@gfwdi.or.kr

4. 어르신께서 이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돈을 벌고 싶어서 ___②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___③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___④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
___⑤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___⑥ 여가(시간)를 보내기 위해
___⑧ 집에 있으면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 ___⑨ 기타(자세하게:)

5. 어르신께서는 그 일을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주 ()시간

6. 어르신께서 그 일을 해서 받는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만원

7. 어르신께서는 일해서 버시는 한달수입 () 만원을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가장 많이 쓰는 곳 한가지를 말씀해주세요.

- _① 생활비 _② 병원비, 약값 _③ (손)자녀를 위해 사용
 _④ 문화활동 _⑤ 저축 _⑥ 기타()

8. 어르신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번 질문에 ①, ②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8-1.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 ① 돈을 벌 수 있다 _ ② 일을 통해 보람을 얻는다
 _ ③ 친구를 사귄다 _ ④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_ 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부심을 느낀다 _ ⑥ 세월(시간) 보내기가 좋다
 _ ⑦ 기타(자세하게:)

(8번 질문에 ③, ④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8-2. 지금 하시는 일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입이 적다 ② 육체적으로 힘들다
③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④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 ⑥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
⑦ 기타 (자세하게:)

9.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그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 | | |
|--|---|
| ☐ ① 나이가 많아서 | ☐ ② 여자(남자)라서 |
| ☐ ③ 기술(능력)이 없어서 | ☐ ④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
| ☐ ⑤ 교통이 불편해서 | ☐ ⑥ 구직자들이 경쟁이 심해서 |
| ☐ ⑦ 어려운 점이 없었다 | ☐ ⑧ 기타(자세하게: _____) |

10. 어르신께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여자(남자)라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십니까?

- | | |
|-------------------------------|-------------------------------|
| ☐ ① 있다 | ☐ ② 없다 |
|-------------------------------|-------------------------------|

10-1. 만약 특별히 여자(남자)라서 어려웠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_____)

다음은 일과 가족생활에 대한 어르신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언제까지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__① 이번 일을 끝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 __②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만 일하고 싶다
 __③ 내년까지만 일하고 싶다 __④ 죽기 전까지는 일하고 싶다
 __⑤ 잘 모르겠다
2. 노인은 일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적어서 __② 노인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__③ 노인들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않아서 __④ 나이가 많다고 노인을 차별하기 때문에
 __⑤ 일하는 능력이 젊은이보다 부족하므로 __⑥ 기타(자세하게:)
3. 어르신께서는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 __②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 창출
 __③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 __④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__⑤ 특별히 정부가 할 일은 없다 __⑥ 기타(자세하게:)
4. 다음 질문을 들으시고 어르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문항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일은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2)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3) 비록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정살림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4)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아내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족을 위해 바람직하다				
5) 아내가 직업이 있더라도 가족부양은 남편의 책임이다				
6)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7) 직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				
8)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능력이 뛰어나다				
9)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10) 여자의 최고의 미덕은 직장일이 아니라, 남편을 잘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이다.				

5. 어르신께서는 다음의 집안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① 항상 한다	② 종종 한다	③ 어쩌다 한다	④ 전혀 하지 않는다
1) 밥하기				
2) 반찬만들기				
3) 설거지				
4) 빨래(세탁기 포함)				
5) 장보기				
6) 집안청소				
7) 집안수리(못치기 등)				
8) 마당(베란다) 청소				

다음은 어르신의 가족과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성별 __① 남 __② 여 ※조사원이 기입
- 어르신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_① 무학 __② 초등학교(소학교)(중퇴 포함)
__③ 고등학교(중퇴포함) __④ 2년제 대학(중퇴포함)
__⑤ 4년제 대학 이상(중퇴포함) 총 수학년수 ()년 ※조사원이 기입
- 어르신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__① 기혼(사실혼 포함) __② 사별 __③ 이혼 __④ 별거 __⑤ 미혼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 상태는 어떻습니까?
__① 자가 __② 전세 __③ 월세 __④ 기타(자세하게:)

5-1. (5번 문항에 ①이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누구 명의입니까?

- __① 본인 __② 배우자 __③ 동거중인 자녀 __④ 비동거자녀
__⑤ 손자녀 __⑥ 그 외의 친척 기타(자세하게:)

6.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이십니까?

- __① 매우 나쁨 __② 나쁜 편 __③ 보통 __④ 좋은 편 __⑤ 매우 좋음

7. 어르신과 어르신의 배우자께서 가장 오래 동안 종사한 직업을 말해주세요.

1) 응답자 (번호기입:) 2) 배우자 (번호기입:)

〈보기〉

*전문직

- 01)변호사 판사 검사 02)대학교수, 강사 03)교사, 학원강사 04)의사
05)약사, 간호사 06)언론인, 방송인 07)종교인 체육인 예술인 08)기술자
09)항공기/선박 승무원 10)기타 전문직

*관리직

- 11)기업체 경영주(5인 이상 고용) 12)기업체(부장 이상) 13)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 장 이상) 14)고급
공무원(중앙관서 과장, 지방관서 국장 이상)

*사무직

- 21)회사원, 은행원 22)일반공무원(사무관 이하) 23)사회단체 간부
24)전화교환수 집배원 25)군인(하사관, 위관급), 경찰(경감 이하)

*판매직 서비스직

- 31)소규모가게주인(5인 미만 고용) 32)음식점, 여관의 주인 33)복덕방, 부동산 중개인
34)판매직 피고용인 35)서비스직 피고용인 36)수위 청소원
37)외판원 38)행사 노점상 파출부 39)기타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 41)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42)숙련공 43)반숙련공, 견습공, 미숙련공
44)자동차, 중장비 운전사 45)막노동, 단순노동자 46)기타생산직

*농어민

- 51)부농(2정보, 6천평 이상) 52)중농(1~2정보, 3~6천평) 53)소농(1500~2999평)
54)빈농(1500평 미만, 소작) 55)농업노동자, 품일꾼 56)축산, 낙농
57)선주 58)선원, 어부

*기타

- 61)학생 62)전업주부 63)무직 64)정년퇴직, 연금생활자 65)군인(사병), 전경

7. 어르신 댁의 한달 총 수입(들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만원

8. 어르신과 함께 사시는 분들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응답자는 제외함)
()

<보기>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외)손자녀, 아버지, 어머니,
여자형제, 남자형제, 기타친척

8-1. 조사원이 기입 : 가구형태 번호 ()

<보기> ① 단독가구 ② 노부부가구 ③ 조손가구 ④ 2세대가구 ⑤ 3세대 이상가구 ⑥ 기타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D				
----	--	--	--	--

경기도 농업인력육성정책 수혜자 조사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분야 -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경기도 지역 실정을 고려한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책개발 전문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현재 수행중인 『경기도 농업인력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위하여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하나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내용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담당자 : 유정미(031-220-3943), 이은아(031-220-3952)

이메일 : femieye@empal.com

I.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등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영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 ② 농업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
- ③ 다른 농업인들과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 ④ 정책자금 신청시에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 ⑤ 기타 _____

2. 귀하께서 등록하신 대학의 전공에 ○표 해주십시오.

환경대학	⑦ 인삼 ⑧ 낙농 ⑨ 한우 ⑩ 양봉 ⑪ 관광농업 ⑫ 농산물유통 ⑬ 기타_____
성균관대	⑭ 대가축·양돈위생 ⑮ 농업정보화 ⑯ 기타_____
한국농전	⑰ 버섯 ⑱ 인삼·약특장 ⑲ 화훼 ⑳ 농산가공 ㉑ 과수 ㉒ 조경·농촌관광 ㉓ 기타_____

3. 귀하께서 해당 전공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주로 농사짓는 작목이기 때문에
- ② 앞으로 해보고 싶은 영농 작목이어서
- ③ 과정을 이수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 ④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학을 고려하다보니
- ⑤ 기타 _____

4. 귀하께서는 이 과정의 지원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교육안내를 통해
- ② 팸플렛, 안내문을 통해
- ③ 신문, 방송을 통해
- ④ 가족을 통해서
- ⑤ 마을 이장의 안내로
- ⑥ 작목반, 조합의 동료를 통해
- ⑦ 단체의 임원, 회원을 통해
- ⑧ 시,군청 공무원 및 농업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담당자의 안내로
- ⑨ 대학 담당자의 안내로
- ⑩ 기타 _____

5. 귀하께서 이 과정에 신청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응시원서 작성이 복잡해서
- ② 신청 시기와 방법을 잘 몰라서
- ③ 내 관심에 맞는 과정이 없어서
- ④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
- ⑤ 어려웠던 점이 없었다
- ⑥ 기타 _____

6. 최고농업경영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표시해주십시오.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농사일과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사일(가사노동, 육아, 노인부양 등)과 병행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들은 내가 이 과정을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동급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내용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6) 교통이 불편해서 다니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표시해주십시오.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수(강사)들은 강의내용을 알기쉽게 전달하려고 대부분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컴퓨터 등 실습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이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육생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반영하려고 교육기관이 성의껏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께서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9. 귀하께서는 이 과정을 수료한 후, 어떤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 ② 영농 정보의 제공
- ③ 정책자금 관련 정보 제공
- ④ 동기생 모임의 지속
- ⑤ 기타_____

10.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에서 개선 또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14. 귀하께서는 위와같은 여성지원자 우대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거의	보통	조금	매우
필요없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14-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5. 여성만 응답 여성우대조항이 이 과정 합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도움이	거의 도움이	보통	조금 도움이	매우 도움이
안되었다	안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16. 여성만 응답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을 다니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써주십시오.

IV.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 ① 여자 ② 남자

2. 출생년도 19_____년

3.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졸업 이하(중퇴/재학 포함) ② 중학교졸(중퇴/재학 포함)
 ③ 고등학교졸(중퇴/재학 포함) ④ 전문대졸(중퇴/재학 포함)
 ⑤ 4년제대학졸(중퇴/재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중퇴/재학 포함)

4. 귀하의 혼인상태는?

- ① 결혼(사실혼 포함) ② 이혼 ③ 사별 ④ 미혼 ⑤ 기타_____

5.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6번으로)

5-1) 귀하의 막내자녀는 몇 살입니까? 만_____세

6. 귀 닥의 주요 농사품목은 무엇입니까?

- ① 수도작 ② 복합 ③ 원예 ④ 과수
 ⑤ 특용작물 ⑥ 채소 ⑦ 축산 ⑧ 기타_____

7. 귀 닥의 연간 소득액은 얼마입니까? _____원

8. 귀하의 영농경력? _____년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D			
----	--	--	--

경기도 농업인력육성정책 수혜자조사

－ 후계농업경영인력 육성사업 분야 －

〈조사원 멘트〉

안녕하세요? ○○○씨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가 후계농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몇 가지 여쭙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편안하게 말씀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담당자 : 유정미(031-220-3943), 이은아(031-220-3952)

이메일 : femieye@empal.com

조사원 기입사항	
1. ____ ① 여자	____ ② 남자
2. ____ ① 창업농	____ ② 신규후계농
3. 후계자 선정년도	____ ① 2002년 ____ ② 2003년 ____ ③ 2004년 ____ ④ 2005년
4. 대출자금 규모	_____ 원
5. 조사대상 연락처	_____

※ 조사원은 질문지에 적힌 질문을 가감없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오픈형 질문의 경우 조사표를 읽지 마시고 질문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후계자 선정시 사업 작목은 무엇입니까?

- ① 수도작 ② 복합 ③ 원예 ④ 과수 ⑤ 특작
 ⑥ 한옥우 ⑦ 낙농 ⑧ 양돈 ⑨ 양계 ⑩ 기타

2~4. 다음은 후계농 선정 절차 각각에서 어려웠던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2. 후계자 신청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보기를 읽어주지 마시고 응답을 분류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영농기반 확보가 어려워서	⑥ 가족들이 반대해서
② 평가점수를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⑦ 연령제한 때문에
③ 지역 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⑧ 어려운 점이 없었다
④ 신청시기와 방법을 알기 어려워서	⑨ 기타_____
⑤ 영농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워서	

3. 교육받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보기를 읽어주지 마시고 응답을 분류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교육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 ④ 교육내용이 어려워서 |
| ② 농사일과 병행하기 어려워서 | ⑤ 교육내용이 농사에 별 도움이 안되어서 |
| ③ 가사일(가사노동, 육아, 노인부양)과 병행하
기 어려워서 | ⑥ 어려운 점이 없었다 |
| | ⑦ 기타 _____ |

4. 자금 대출받을 때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보기를 읽어주지 마시고 응답을 분류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절차가 복잡해서 | ④ 담당자가 권위적이어서 |
| ②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 ⑤ 담보물 설정이 어려워서 |
| ③ 신청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 ⑥ 기타 _____ |

5. 후계농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 시설, 가축 등에서 나오는 수익의 지출 권한은 주로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이 결정합니까?

- ① 본인 ② 남편 또는 부인 ③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협의를 통해 ⑥ 기타

6. 결혼하셨다면 배우자도 농사를 전업으로 짓고 있습니까?

- ① 배우자가 없다(→7번으로) ② 그렇다 ③ 아니다(→7번으로) ④ 기타 _____

6-1. (그렇다면) 배우자도 후계자 입니까?

- ① 그렇다(→7번으로) ② 아니다

6-2. (아니라면) 배우자는 후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를 읽어주지 마시고 응답을 분류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서 | ⑤ 내가 평가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
| ② 배우자도 농사를 짓지만 내가 농업경영주이므로 | ⑥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했다 |
| ③ 배우자는 연령 제한에 걸려서 | ⑦ 기타 _____ |
| ④ 농사 품목이 같아서 신청할 수 없었다 | |

7. 후계농에 지원하는 여성신청자에게 20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계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여성은 10번으로 / 남성은 다음 페이지로)

8. (그렇다면) 어디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예를 들면, 어디에선가 홍보물을 봤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알려줬다거나)

보기를 읽어주지 마시고, 응답을 분류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팜플렛 또는 안내문 | ⑦ 시,군청 공무원 및 농업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담당자의 안내 |
| ② 신문이나 방송 | ⑧ 인터넷 |
| ③ 가족을 통해 | ⑨ 잘 모르겠다 |
| ④ 마을 이장의 안내 | ⑩ 기타 _____ |
| ⑤ 작목반, 조합의 동료의 소개 | |
| ⑥ 농업인 단체의 임원, 회원의 소개 | |

※ 9~10번은 여성들에게만 질문하십시오.

9. 선생님이 후계농이 되시는데 20점 가산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 거의 도움이
안되었다 | 보통 |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10. 후계농 선정자 중 여성들의 비율이 적습니다. 여성들이 후계농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기를 읽어주지 마시고, 응답을 분류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농사를 계속 짓고자하는 의지가 없어서 | ⑥ 신청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
| ② 남편이 이미 후계농을 받았기 때문에 | ⑦ 영농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워서 |
| ③ 영농기반 확보가 어려워서 | ⑧ 연령제한 때문에 |
| ④ 평가점수를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 ⑨ 가족들이 반대해서 |
| ⑤ 지역 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 ⑩ 기타 _____ |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출생년도 19_____년

2. 귀하의 학력은?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재학/중퇴 포함) |
| ③ 고등학교 졸업(재학/중퇴 포함) | ④ 전문대학 졸업(재학/중퇴 포함) |
| ⑤ 대학교 졸업(재학/중퇴 포함) | ⑥ 대학원 이상 |

3. 농업 전문 학교 졸업자 또는 전공자인지? 그렇다면 어디에 포함되는지?

- | | |
|--------------|-----------------|
| ① 아니다 | ② 농업고등학교 졸업 |
| ③ 농업전문대학교 졸업 | ④ 일반대학교 농업계열 전공 |
| ⑤ 기타_____ | |

4. 귀 닥의 연간 소득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_____원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D			
----	--	--	--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수혜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경기도 지역 실정을 고려한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책개발 전문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현재 수행 중인 『경기도 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공공근로” 참여자 여러분의 참여내용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적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제동 1129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담당자 : 이은아(연구 책임자), 이해진

연락처 : 031- 220- 3952, 3946

이메일 : ediotcom@hanmail.net

I. 다음은 공공근로 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수원시	① 재활용품 선별사업 ② 국토공원화사업 ③ 주민숙원사업 ④ 문화유적지 관리 및 순라군 운영 ⑤ 깨끗한 하천 만들기 ⑥ 새주소 개선정비 ⑦ 깨끗한 도로 만들기 ⑧ D/B건축 사업 ⑨ 전산화사업 ⑩ 취업정보센터 운영보조 ⑪ 공공근로추진 요원 ⑫ 도우미업무(사회복지시설, 가정) ⑬ 쉼터운영(노숙자, 외국인근로자) ⑭ 푸드뱅크 사업 ⑮ 농수산물도매시장환경정비 ⑯ 원천유원지 환경정비 ⑰ 환경사업소 환경정비 ⑱ 화성관광 상품판매 ⑲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 ⑳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㉑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의정부시	① 사랑의 보금자리 ② 도우미 ③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④ 시설물 및 환경정비사업 ⑤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 ⑥ 숲 가꾸기 사업 ⑦ 도로정비사업 ⑧ 농업시험 포장 운영사업 ⑨ 전산화사업 ⑩ 주민자치센터운영 ⑪ D/B건축사업 ⑫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사업 ⑬ 행정업무보조 ⑭ 생활민원기동지원사업

2. 귀하께서는 이번을 포함하여 공공근로에 총 몇 번 참여하셨습니까?

총 _____ 회

3. 귀하는 공공근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① 신문이나 방송 등을 보고 ② 주변 사람의 소개로
- ③ 인터넷을 통하여 ④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복지관 등)를 통해서
- ⑤ 기타

4. 귀하께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마땅히 취업이 안돼서 ② 사업 실패로
- ③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④ 임시직(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 ⑤ 다른 일을 하기 힘들어서 ⑥ 생계가 어려워서
- ⑦ 일하는 것이 좋아서 ⑧ 기타

5. 귀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이전에 직업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5-1, 2 번으로) ② 없다 (→ 6번으로)

5-1. (있었다면)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전에 귀하께서 일한 직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전문직·관리직 ② 사무직
- ③ 판매 및 서비스직 ④ 생산직
- ⑤ 일용직 ⑥ 기타 _____

5-2. 귀하께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전 실직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6. 공공근로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께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②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 ③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되어서 좋다 ④ 소일거리가 되어서 좋다
- ⑤ 기타

7. 귀하께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거리가 너무 멀다
- ② 집안에 돌봐야 할 노약자, 장애인, 병자, 어린아이 등이 있다
- ③ 가사 일과 병행하기 힘들다
- ④ 일이 힘들다
- 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 ⑥ 기타

8. 귀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V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임금(급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하시는 일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현 단계 공공근로 사업 종료 이후 구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9. 현 단계 공공근로 참여 이후 계속해서 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9-1번으로)
- ② 없다 (→ 10번으로)

9-1. (있다면) 귀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입니까?

- ① 공공근로에 계속 참가하고 싶다
- ②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
- ③ 창업을 희망한다
- ④ 기타 _____

10. 귀하께서는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10-1, 2번으로)

② 없다 (→ 10-3번으로)

10-1. **(있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① 창업을 위한 교육

② 재취업을 위한 교육

③ 경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

④ 기타 _____

10-2.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3.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④ 나이가 많아서

⑤ 수업료 때문에

⑥ 적당한 교육이 없어서

⑦ 기타 _____

Ⅲ. 다음은 일반사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1. 귀하의 출생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19 _____ 년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_____ ② 여 _____

1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재학·중퇴 포함) |
| ③ 고등학교 졸업(재학·중퇴 포함) | ④ 전문대 졸업(재학·중퇴 포함) |
| ⑤ 4년제 대학 졸업(재학·중퇴 포함) | ⑥ 대학원 이상 |

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미혼 ② 결혼(사실혼 포함)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1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15-1. (있다면) 귀하의 막내 자녀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16. 귀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보기의 해당 번호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보기>

- | | | | |
|------------|------------|--------|---------|
| ① 본인 | ② 배우자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 ⑤ 배우자의 아버지 | ⑥ 배우자의 어머니 | ⑦ 형제자매 | ⑧ 자녀 |
| ⑨ 자녀의 배우자 | ⑩ 손자녀 | ⑪ 조부모 | ⑫ 기타 친척 |
| ⑬ 비혈연 | | | |

17. 현재 귀하의 주거상태는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18. 현재 공공근로를 통해서 받는 임금은 얼마입니까? 한 달 _____ 만원

19. 본인 외 가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19-1. (있다면) 현재 공공근로 수입을 포함하여 귀 닥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약 _____ 만원 정도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ID			
----	--	--	--

경기청년뉴딜사업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경기도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도 출연기관입니다. 본 개발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경기도 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고용정책의 하나인 “청년뉴딜” 참여자 여러분의 참여내용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제동 1129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담당자 : 이은아(연구책임자), 이해진(031-220-3946)

이메일 : euna@gfwdi.or.kr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몇 기 참여자입니까?

- ① 1기 ② 2기 ③ 3기 ④ 4기

2. 귀하가 속한 권역은 어디입니까?

- ① 수원권 ② 평택권 ③ 용인권 ④ 의정부권
⑤ 성남권 ⑥ 안산권 ⑦ 고양권

3. 귀하는 뉴딜사업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신문, TV 등 언론매체 ② 포스터, 플랜카드 등 홍보물
③ 주변사람 소개 ④ 경기도 홈페이지
⑤ 취업정보업체 홈페이지 ⑥ 기타

4.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 ① 구직자 밀착상담 ② 직장체험
③ 교육훈련 ④ 직장집중알선

5. 청년뉴딜사업 참가가 귀하께 어떤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2개까지 복수 응답)

- ① 취업이 되었다
②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③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④ 취업에 필요한 기술(자기소개서 쓰기, 이력서 작성 등) 습득
⑤ 직업훈련
⑥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소속감
⑦ 기타

6. 경기뉴딜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		-----		-----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7. 청년뉴딜사업 참가 이전 취업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7-1번으로 이동 ② 없다 ➡ 8번으로 이동

7-1. (있다면) 귀하께서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 ② 임금이 너무 낮아서 |
| ③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④ 계약이 만료되어서 |
| ⑤ 직장의 휴·폐업으로 | ⑥ 성차별 때문에(성희롱 포함) |
| ⑦ 기타 _____ | |

8. 귀하께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 | | | | |
|-----------|-----------|-------------|------|
| ① 전공 | ② 자격증 | ③ 학력 | ④ 임금 |
| ⑤ 건강 | ⑥ 업무내용 | ⑦ 근로시간 | ⑧ 성별 |
| ⑨ 직장과의 거리 | ⑩ 부모님의 반대 | ⑪ 가사 및 육아부담 | |
| ⑩ 기타 | | | |

9. 귀하는 현재 취업 중이거나 직장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14번으로 이동

10. (그렇다면) 귀하는 현재 어떤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 ① 사무·행정 ② 전산 ③ 영업·판매·마케팅 ④ 연구 ⑤ 서비스
⑥ 생산 ⑦ 사무보조 ⑧ 비서 ⑨ 홍보 ⑩ 기획 ⑪ 개발
⑫ 의료 ⑬ 교육 ⑭ 물류관리 ⑮ 기타

11. 귀하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귀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만족정도를 세분화한 것입니다.

12-1. 근무시간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2-2. 임금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2-3. 업무내용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3. (취업중인 경우만 응답해주시오) 취업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파견직 ④ 임시직 ⑤ 파트타임

※ 14-15번까지는 여성만 응답해주시오

14. 여성이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 편견(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등) 때문에
- ②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 ③ 가사 및 육아부담 때문에 기피해서
- ④ 근무환경 및 조건이 남성중심적이어서
- ⑤ 어학능력
- ⑥ 나이
- ⑦ 기타

16. 다음 문장을 읽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남편이 되어야 한다	1	2	3	4
2) 일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	2	3	4
4) 남자와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따로 있다	1	2	3	4
5) 여자는 같은 능력의 남자에 비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6)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는 시집 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2	3	4
7) 여자는 직장생활을 해도 남자만큼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1	2	3	4
8) 여자는 결혼 후를 생각하여 직업적 성취 가능성이 있는 일보다는 직장과 가정 일을 같이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	2	3	4
9) 남자는 여자보다 더 이성적이다	1	2	3	4
10) 여자는 남자보다 독립심이 약하다	1	2	3	4

17.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

18. 출생년도는? 19_____ 년도

19.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재학·중퇴 포함) ② 전문대 졸업(재학·중퇴 포함)
③ 4년제 대학 졸업(재학·중퇴 포함) ④ 대학원 이상

20.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전공학과와 계열을 표기해 주십시오.

_____ 과

- | | |
|---------|-----------|
| ① 인문계열 | ② 사회계열 |
| ③ 교육계열 | ④ 공학계열 |
| ⑤ 자연계열 | ⑥ 의학계열 |
| ⑦ 예체능계열 | ⑧ 해당사항 없음 |

♠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책보고서 2005-01

경기도 주요 5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2005년 12월 일 인쇄

2005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박 숙 자

발행처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제동 1129

전화 031)220-3900(대) www.gfwdi.or.kr

인쇄처 경인인쇄사

전화 031) 221-4123~4

ISBN 89-957446-0-X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있습니다.